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2010. 12

최준욱 · 송헌재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19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5명 수준이었으며,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1983년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문제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이다. 2001년과 2002년에 합계출산율이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여 1.17명 수준에 이르러서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본격화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논의 및 도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 및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초연구는 취약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 관련 논의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기초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으며 기존 연구들 또한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출산력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변화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자료의 해석에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실제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그러한 해석의 문제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와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출산율 하락 요인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출산을 제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물론 출산을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정책들이 아직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도입된 후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출산장려정책이 실제로 출산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역시 제한적이다. 그 중 하나가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아직도 확대 과정에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교적 좁은 틀의 저출산 대응정책 범위를 넘어 좀 더 광범위한 가족정책의 일부로 확대되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저출산 대응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그로 인한 재분배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책의 영향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혹은 그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 혹은 설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형성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책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하락이 워낙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도 비교적 최근이다. 그로 인해 출산을 결정 혹은 하락 요인을 이해하고, 또 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몇 개의 결론 및 시각은 향후 저출산 관련 정책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최준욱 박사, 송헌재 박사에 의해 집필되었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특히 세미나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 준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 및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 본 연구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류인경 전문연구원, 김현숙 연구원, 변경숙 주임연구행정원, 김민주 연구행정원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최근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 및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초연구는 취약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 등에 대해 이해하여 저출산 대응에서의 재정 정책수단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수단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소득재분배 효과 등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영향 및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산 대응정책도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와 영향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출산력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동안 출산관련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던 출산력 자료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변수들이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가구를 추적조사하지 않고 매년 조사 대상자가 달라지는 횡단면자료(repeated cross-section data)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가구 고유의 특성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취지와 관련하여 특히 소득이 출산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다양한 재정 정책수단이 가지는 1차적인 효과는 출산가구의 소득을 변화(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재정정책의 효과를 직접 분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출산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간접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장의 실증분석에서는 가구 소득 및 자산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러한 결과는 자녀 순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소득이 첫째아의 출산에 미치는 확률에 대해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며, 두 자료에서 추정된 추정계수의 부호 자체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는 경우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가구 소득이 둘째아 이상의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이 둘째아 이상의 출산에 미치는 확률과 관련하여, 추정계수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인 자녀수당 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동패널자료의 분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구 소득의 증가가 둘째아 이상의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출산율을 의미 있는 정도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출산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의 규모는 실현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대규모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조세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지원액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작아지게 되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 등에 대해 이해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변화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자료의 해석에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실제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향후 완결출산율이 적어도 최근의 합계출산율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다행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 행태를 살펴보면 세대별로 출산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1970년생을 전후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추세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출생연도별 결혼 및 출산 행태의 변화에서 불연속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혼 연령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기는 하지만, 결혼을 늦게 하지 않는 여성들의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71~1975년생의 경우 30~34세 기혼인 여성들의 평균자녀 수는 최종적으로는 약 1.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하락의 큰 부분은 미혼의 증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혼의 증가 혹은 늦게 결혼하는 여성들의 출산 감소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에서 경제적 요인보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크다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소득을 보전하는 등의 재정적인 정책수단보다는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담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접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수단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출산을 제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물론 출산을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정책들이 아직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도입된 후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응정책인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출산장려금 사업은 출산을 저하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지급수준이 지자체별로 차별화되어 있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산장려금과 출산에 대한 결정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가임여성의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 계획(의향)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첫째,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의 출산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가 출산장려금과는 상관없이 출산의 선호에 대한 해당 지역의 고유의 효과(local fixed effect)를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포함된 모든 설명변수간에 내생성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출산장려금의 추정결과에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앞으로의 자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실제로 출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금이 출산을 제고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분석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가구 소득과 가구 순자산은 자녀 계획 단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왜 소득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추가적인 소득지원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한 몇 가지 가능성으로 인해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과다하게 추정된 것이 아니라면, 출산장려금이 단순한 소득지원 외의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제 V 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재분배 효과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정책논의와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책의 영향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거나, 정책의 형성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재분배 효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경로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분배가 출산율 제고 효과를 초래하는 경로로 작용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소득불평등이 존재하며, 추가적인 소득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소득계층별로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도인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제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공제를 통한 지원은 그 혜택이 주로 중산층 이상에 귀속되는 성격을 갖는다. 소득 대비 비율로 본 혜택이 가장 큰 집단은 중상위 정도의 소득계층이며, 정확하게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기타 저출산 대응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그 혜택이 중간 이하의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강하게 역

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전체적인 혜택도 대체적으로 역진적, 즉 저소득층에서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출산을 제고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면, 우선지원 대상의 선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제공할 것인가 혹은 이전지출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해외사례와 국제비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족지원을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혹은 그러한 재원을 다른 형태로 지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조세와 이전지출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두 수단의 재분배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좀 더 강한 재분배라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출산을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 평가하더라도, 소득공제의 확대보다는 저출산 대책 지출의 확대가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조세제도에서의 어떠한 소득공제 제도의 타당성은 단순히 저출산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무엇보다도 조세 본연의 기능에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 제고 정책으로서의 조세정책 활용의 효과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출 관련 정책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조세제도와 통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면, 저출산 대책으로서 소득공제를 무리하게 활용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I. 서 론	19
II. 출산결정 요인 분석	23
1. 서 론	23
2. 출산결정 요인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24
3. 자료 설명 및 기초통계 분석	37
4. 노동패널을 이용한 출산결정 요인 분석	48
5.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68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77
III. 출산율 하락의 원인 분석	79
1. 서 론	79
2. 출산율 추이의 분석	79
3. 세대별 여성 행태의 변화	91
4. 출산자녀 수 및 혼인 행태의 변화	95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102
IV.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 분석	105
1. 서 론	105
2.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한 기존 논의	106
3. 분석 자료 설명	108
4. 실증분석	118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130

V. 재분배 효과 분석 및 정책논의	133
1. 서론	133
2. 재분배 효과의 중요성 및 개념	136
3. 현행 제도의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	142
4. 조세정책과 지출정책 간의 선택	162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170
VI. 요약 및 정책시사점	173
참고문헌	179
〈참고자료 1〉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현황	183
〈참고자료 2〉 가족지원제도의 해외사례	191
〈참고자료 3〉 조세와 혜택의 국제비교 관련 자료	193

〈표 IV-5〉 출생 순위를 고려한 출산장려금 가중평균 기초 통계 ..	118
〈표 IV-6〉 출산 계획 여부에 따른 기초통계	121
〈표 IV-7〉 출산 계획에 관한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123
〈표 IV-8〉 출산 계획에 관한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자녀 수 ≥ 1) ..	125
〈표 IV-9〉 출산 순위에 따른 출산 계획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	128
〈표 IV-10〉 이상자녀 수(ideal number of children) OLS 추정 결과	129
〈표 V-1〉 광역자치단체 출산장려금 현황('10년 6월말 기준) ...	143
〈표 V-2〉 가구 소득 수준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	145
〈표 V-3〉 보육지원	147
〈표 V-4〉 보육료 종류별 지원 금액	148
〈표 V-5〉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	149
〈표 V-6〉 산전휴가와 육아휴직	154
〈표 V-7〉 모성보호사업 실적(2002~2009)	154
〈표 V-8〉 모성보호사업 1인당 수급액 추이	155
〈표 V-9〉 근로소득자 중 다자녀 추가공제	159
〈표 V-10〉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160
〈표 V-11〉 재분배 효과 요약	162
〈표 V-12〉 국가별 조세정책의 활용 여부	164
〈표 참고-1〉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현황('10년 6월말 기준) ..	183

그림차례

[그림 Ⅲ-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80
[그림 Ⅲ-2] 모의 출산연령별 출생아 수	85
[그림 Ⅲ-3] 세대별 완결출산율	86
[그림 Ⅲ-4] 모의 평균 초혼 연령 및 첫째아 출산연령	88
[그림 Ⅲ-5]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91
[그림 Ⅲ-6] 30~34세 대졸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비율	93
[그림 Ⅲ-7] 소득구간별 여성근로자 비중	93
[그림 Ⅲ-8] 전체 출산 중 출산순위별 비중	97
[그림 V-1] 영아 소득수준별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률	151
[그림 V-2] 소득세 공제 혜택의 소득 대비 비율	158
[그림 V-3] 소득구간별 공제 혜택인원	160
[그림 참고-1] OECD 국가 중산층의 국민부담 개인기여분	193
[그림 참고-2] OECD 국가 중산층의 국민부담 개인기여분	194
[그림 참고-3] OECD 국가 중산층의 조세부담	195
[그림 참고-4] OECD 국가 중산층의 순국민부담률 (고용주 기여분 포함)	196
[그림 참고-5] OECD 국가 중산층의 사회보장기여금	197

I. 서론

19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5명 수준이었으며,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1983년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문제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이다. 2001년과 2002년에 합계출산율이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여 1.17명 수준까지 떨어지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본격화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논의 및 도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의 대응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 및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초연구는 취약한 편이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정책 논의를 위한 기초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국가별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정도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본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한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으며 기존 연구들이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출산력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변화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을 이

해하는 것은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자료의 해석에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실제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와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출산율 하락 요인을 모색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물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정책들이 아직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도입된 후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응정책인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율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역시 제한적이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도 다양하다. 이러한 모든 측면과 모든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중요한 몇 개의 이슈에 대해 검토한다. 그 중 하나가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이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거의 없다. 물론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아직 그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아직도 확대 과정에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교적 좁은 틀의 저출산 대응정책 범위를 넘어 좀 더 광범위한 가족정책의 일부로 확대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저출산 대응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그로 인한 재분배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수당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매우 큰 재분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책의 영향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혹은 그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 혹은 설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형성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책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출산에 결정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출산 대응정책도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다. 그러한 다양한 정책수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단을 재정 정책수단과 재정 외의 정책수단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에 중점을 두어 논의한다. 여기서 재정 정책수단이라 함은 출산에 대해 재정을 통한 보조금, 혹은 조세제도를 통한 암묵적인 보조금, 그리고 재정지출이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기타 정책수단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반면, 규제의 변화 혹은 가치관의 변화 등을 유도하는 정책 등은 재정지출이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이러한 정책들은 비재정 정책수단이라고 한다¹⁾.

논의의 범위를 재정 정책수단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역시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다.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문제의 식에서 출발한 정책은 물론이고 제도 도입의 우선적인 목표가 출산을 제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출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가 저출산 대응이라는 목표로 도입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재정 정책수단에는 개인의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1) 물론 여기서 비재정 정책수단으로 간주한 정책들의 경우에도 재정지출을 수반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교육, 혹은 출산장려를 위한 국민적 차원에서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 등에도 일정한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재정지출이 활용될 뿐, 재정지출이 직접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비재정 정책수단으로 간주한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모든 정책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출산 주체에게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고자 하면서도, 정부 재정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 다른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용주에게 출산에 대한 암묵적 혹은 명시적 지원을 하게 하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정부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 정책수단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저출산에 대응하는 주요 재정 정책수단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세제지원 :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육아 및 교육비용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육아 관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 공적 보육의 제공 또는 보육 관련 수당의 지급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 출산에 대한 보조금 및 현물 지원
- 자녀수당 및 기타 가족수당
- 출산관련 의료비 지원 등 기타 다양한 지원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저출산 대응에서의 재정 정책수단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수단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한다. 제V장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의 영향, 그리고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II. 출산결정 요인 분석

1. 서론

출산의 결정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저출산 관련 정책논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어떠한 경제사회적 변수들이 가구의 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취지와 관련하여 특히 소득이 출산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다양한 재정 정책수단이 가지는 1차적인 효과는 출산가구의 소득을 변화(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재정정책의 효과를 직접 분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간접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출산관련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던 출산력 자료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변수들이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하지 않고 매년 조사 대상자가 달라지는 횡단면자료(repeated cross-section data)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가구 고유의 특성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출산결정 요인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출산 의향을 질문하는 설문조사 자료의 경우, 조사 시점의 출산 의향이 실제로 출산으로 이어졌는지 추적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결과물을 놓고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에서 관찰되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이하 출산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이하 비출산 가구)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경제사회적 변수들이 가구의 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한다.

본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절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출산 결정 요인 분석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2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첫 번째 자료인 노동패널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출산 가구의 신생아와 산모의 인적 특성에 대한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제3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토론한다. 제4절에서는 강건성(robustness) 검증을 위해 다른 자료인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비교한다. 제5절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해석 및 정책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2. 출산결정 요인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기존 연구에서는 출산의 결정요인에 대해 크게 인구·사회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문화적 접근의 세 가지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접근에서는 여성의 초혼 연령, 결혼 상대,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학적 접근은 출산에 따른 효용(utility)과 비용(cost)의 관점에서 출산행위를 설명한다. 문화적 접근방법에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 예를 들어 사회 전반의 출산에 대한 의식, 아들 선호사상의 영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세 가지 접근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각 접근방법의 관점에서 본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인구·사회학적 접근

출산결정 요인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인구·사회학적 결정

요인을 다루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취업률이 증가하고, 교육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연령 또한 상승하게 됨으로써 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의 상승으로 시장임금이 높아지므로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은 높은 기회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성의 출산의지를 약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류기철·박영화(2009)의 최근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과 연령별 누적 출산율을 결혼연령을 5개의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보고 위험도 모형을 적용하여 결혼연령 및 결혼 이후 첫 번째 출산까지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위험도 모형 분석결과 여성의 출생시기가 늦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교육수준 역시 결혼연령을 늦추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결혼 이후 첫 자녀의 출산 위험도의 경우에는 결혼연령이 출산시기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출산 위험도는 25세 즈음에 결혼하는 경우 가장 높으며 이로부터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혼연령과 첫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민희철(2008)은 결혼연령이 첫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은기수(2001)는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첫 출산이 빨라진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삼식 외(2005)와 조병구 외(2007) 등의 연구에서는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출산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물학적 가임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연령과 결혼시점에서 첫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은 여성의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서 다양한 결론이 도출된 이유는 미혼 여성의 결혼으로의 이행과정 및 첫 출산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가구 경제적 환경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과 출산에 관한 회고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혹은 조사 시점에서 결혼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미혼 시점의 가구 경제적 상황이 여성 개인의 결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결혼 이후 첫 출산 시점을 선택하는 결정에 있어서도 당시의 가구 경제적 상황이 개인의 취업 결정 및 이에 따른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

나. 경제학적 접근

출산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출산으로부터 얻는 효용과 이에 따르는 비용에 관심을 두어 출산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임금수준 또한 상승하게 되고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올라가 출산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는 출산비용 측면에서 인구·사회학적 접근방법과 연결된다. 즉,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연령, 교육수준 같은 인적·사회적 요인이 출산결정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적 접근만의 중요한 차이점은 자녀를 가구의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Becker(1960, 1973)는 가구의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자녀의 수(Quantity)와 자녀의 질(Quality)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Quantity Quality Tradeoff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Becker의 모형은 여전히 출산결정모형의 기초로 활용되어 각 나라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Becker(1960)는 Quantity Quality Tradeoff 모형을 처음으로 소개한 논문으로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상재인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데 자

녀 수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소득탄력성보다 크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 수가 감소한다는 명제를 도출하였다. Becker and Lewis(1973)에서는 자녀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의 소득탄력성 크기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을 두지 않고 초기 부존자원을 고려하여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이 클수록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수가 감소하고 자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가구지출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²⁾. Quantity Quality Tradeoff 모형의 핵심은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잠재가격이 상승하고,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가구의 투자가 증가하면 자녀 수에 대한 잠재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여 가구에서 자녀의 수와 질에 대한 결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에 있어서 새로운 자녀의 출산에 기존 자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가구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 유지에 대한 투자지출 간의 관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국내 연구로는 차경욱(2005)이 있다. 차경욱(2005)은 자녀가 1인이며,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기혼여성이 있는 핵가족 가계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인 자녀 가구 중에 앞으로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

2) Becker and Lewis(1973)의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접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여성의 교육수준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어머니 교육수준의 증가는 자녀의 질적 수준의 잠재가격을 감소시켜 자녀의 질적 수준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자녀 수에 대한 잠재가격을 상승시켜 자녀 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교육수준 상승에 따른 시장임금의 상승은 다른 재화의 잠재가격을 감소시켜 자녀 수와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지출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데 이 때 자녀의 수에 대한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Lam and Duryea(1999)에서는 Quantity Quality Tradeoff 모형을 적용하여 어머니의 교육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자세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한 가구들과 더 이상의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들의 가구 경제구조를 비교하였다. 이 중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저출산 가구로 정의하고 두 집단 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구 소득·가구 자산 및 자녀 교육비를 포함한 가구 소비 지출 행태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발견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출산 계획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집단을 구분하고 가구의 기존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지출이 앞으로 새로운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국내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보다 저출산을 결정한 가구에서 자녀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추정해서 비교해 본 결과 저출산 가구의 소득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차경욱(2005)은 이 같은 결과를 저출산 가구가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에 비해 기존 자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지출의 욕구가 더 강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아내가 취업중인 경우 저출산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발견하여 취업주부의 경우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자녀 양육비 및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앞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취업주부들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한 명의 자녀에게 과거 두세 명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양상이 확대된다면 단순히 양육비나 교육비 절감과 같은 경제적 보상으로서는 저출산 지속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차경욱(2005)의 연구는 앞으로의 출산 계획이 현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기기입식 설문 응답률이 70% 정도에 머물러 표본의 대표성과 선택편의(selection bias)에 대한 의구심이 들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만으로 정부의 교육비 지출부담 감소정책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의지를 가진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교육비 지출행태를 명시적으로 비교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³⁾.

신윤정(2008)은 차경옥(2005)의 연구를 발전시킨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이 자녀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2008년 3월에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약 70~80%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가구경제에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자녀의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출산 의향과 현재 보육·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정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비·교육비가 응답자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교육단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약 22% 정도 되었다. 이들이 희망하는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비율은 현재 지출금액의 5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현재는 지출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자녀의 진학 등으로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예상

3) 차경옥(2005)의 연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201가구 중에 남편만 더 출산하기를 원하는 비율(34.33%)이 아내만 더 출산하기를 원하는 비율(16.92%)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편과 아내의 자녀 출산에 대한 선호차이, 혹은 남편과 아내가 가구원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구 소득과 지출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하는 데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Collective Model을 적용하면 남편과 아내의 선호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분석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향후 시도할 만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교육비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 정도 되었다⁴⁾.

분석결과 중에 출산 의향과 현재 보육·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가구 경제에 부담이 되더라도 기꺼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에 새로운 자녀 출산에 대한 사전적인 선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언급하면 출산 의향이 없는 가구에서 자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 지출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 예를 들어 교육비 시장 가격의 차이가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산 의향에 따라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느껴지는 임계(threshold) 금액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윤정(2008)은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causal effect)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첫 번째 모형으로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보육·교육비 지출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윤정(2008)은 이러한 결과를 부모가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용뿐 아니라 미래에 지출할 교육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출산 의향이 현재의 기존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에 기초한 것으로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인과적 영

4) 이 수치는 신윤정(2008)의 <표 8>에서 보육비 예상 지출을 제외하고 각 교육단계별 응답자의 수를 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필자가 재계산한 결과이다.

향을 측정했다고 볼 수 없다⁵⁾.

두 번째 모형에서는 보육·교육비 지출의 외생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될 때 자녀 출산 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즉, 두 번째 모형의 주된 분석 목적은 보육·교육비 지출이 외생적으로 감소되면 출산 의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의 절감비율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비와 초등학교 교육비 수준이 적정수준으로 감소하면 자녀의 추가 출산 의향이 없는 가구의 출산 의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의 경우 두 번째 모형에서 적정수준의 교육비 지출 감소 금액을 추가하면 현재의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은 첫 번째 모형에서와 달리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교육비 지출과 출산 의향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된다⁶⁾.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에서는 향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할 때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하였다. 신윤정(2008)은 향후 지출한 보육·교육비는 현재 자녀의 교육단계에서 2단계 높은 교육단계까지 고려하였는데 미래에 실제로 보육·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

-
- 5) 모형의 구조상 모든 가격 및 기타 변수들이 항구적으로 현재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에 논거가 전개되었으나 기존 자녀의 미래에 지출할 교육비용은 새로운 자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 특히 초등학생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의 상당부분이 사교육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어린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추가 자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공교육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교육비 지출과 출산 간의 관계 분석에 주목하고자 한다.

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비율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의 절감비율을 구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세 번째 모형을 분석한 결과 향후에 지출할 비용의 절감이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결과는 독립변수인 예상 지출감소가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에서 적정수준의 비용으로 정의되지 않고 전국 평균값에서 적정수준 비용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윤정(2008)은 보육·교육비 지출의 절감이 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임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아쉬운 점과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에 대하여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조사하고 이를 분석에 적극 활용하였으나, 본문에 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현재의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과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한 지출 수준이 얼마인지 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문의 <표 III-4>의 Chi-square 검정 결과만으로는 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에 기존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test)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명시적으로 지출한 보육·교육비 수준과 적정 수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인 검증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출산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출산 의향이 없다고 간주하였는데,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이를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식하고 분석에서 제외하는 편이 바람직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면 multinomial logistic 회귀분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두 번째 모형의 분석에

서 핵심 변수로 사용되는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의 절감비율을 계산할 때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는 보육·교육비 지출의 외생적 변화라고 볼 수 없다.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수준 역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생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교육비 지출의 절감이 여성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이 10% 줄어든다면 출산 의향에 변화가 올 수 있을지 물어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순차적으로 20%, 30%, 40% 등으로 증가시키면 출산 의향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비율의 감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경옥(2005)과 신윤정(2008)은 Quantity Quality Tradeoff 모형을 실증분석에 적용하여 출산을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로서 설문조사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하여 자녀 양육비·교육비와 출산 의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와 공헌도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두 연구에서 모두 출산 의향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출산 의향 또는 계획이 미래의 출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는 하겠지만, 이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실제로 출산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무시하고 출산 의지가 출산 시점까지 불변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비 혹은 보육비 지출은 출산을 한 가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자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선택에 의한 지출 행태를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교육비 지출에서 공교육비 지출의 경우에도 다른 자녀와의 차별적인 지출행태를 관찰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노동패널에서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사교육을 받는 가구주의 자녀가 누구인지,

어떠한 종류의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교육에 대한 월평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추적할 수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가 원하는 수준만큼 자녀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 여부 및 총지출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선호를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출산력자료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과 실제 출산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과 실제로 발생한 출산력자료를 이용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 문화적 접근

출산에 관한 문화적 접근방법은 일상생활과 태도, 의식 차이 같은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적 접근에서 출산 의도는 실제 출산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기보다 이상적인 가족상에 대한 사회규범적인 고정관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문화적 접근방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로서 가족내 부부의 역할과 아들 선호사상을 들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과거에 성 역할에 따라 규정지어진 가족내 부부의 역할이 출산결정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이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권수정(2008)은 2007년 9월에 부산시에 거주하는 기입기 여성(25~45세) 중 미취학 아동을 둔 171명의 취업중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출산 의향이 있는지 묻고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자녀의 경제적 가치, 일과 가정의 이중 부담, 가족내 부부 역할, 보육시설의 만족도)들에 대하여 구조화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 의도가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에

가족내 부부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⁷⁾의 차이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value: 0.042). 권수정(2008)은 이러한 결과를 취업중인 기혼여성의 출산 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내 부부의 역할이라고 해석하고 가족내 가사분담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가족내 부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가구원 지위에 따른 성 역할을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출산에 대한 결정과 가구원 간의 시장 노동 공급(market labor supply) 및 가구 내 생산(household production)을 위한 노동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은 가구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므로 가구 효용함수의 극대화(maximization)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적 접근방법은 가족 내부에서 가족 구성원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된 가치관과 전반적인 사회규범에 영향을 받은 가치관이 출산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가구내 부부 역할 이외에도 기존 자녀 수와 자녀의 성별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들고 있다. 김정석(2007)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이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35세 이하 기혼여성들을 추출하여 현재의 출산아 수별로 출산계획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아 계획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들

7) 권수정(2008)은 가족내 부부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의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각각의 척도에 따라 5, 4, 3, 2, 1점을 배정하였다. 권수정(2008)이 사용한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벌이 부부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 ② 육아 휴직은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상황이 허락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 ③ 아내는 가정을 돌보고 남편은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 ④ 아버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⑤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⑥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어머니가 책임지는 게 좋다.

째아 계획에는 가구경제의 안정성, 양육보조자의 존재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한편 셋째아 계획은 남아의 존재 여부와 이상자녀의 성 구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아들 선호사상이 여전히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정석(2007)은 현존 출산아 수에 따라 추가자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출산장려 정책 역시 기존 자녀의 수와 성별에 따라 달라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성용(2003) 또한 전통사회에서 아들 선호를 야기했던 아들의 가치, 즉 노후보장과 가계 계승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아들 선호사상이 관념적으로 남아 있어 출산력 변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으로 고려한 기존 자녀의 수와 성별을 고려하고자 한다. 노동패널에서 구축한 출산력자료는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의 기존 자녀의 수와 성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들 선호사상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2절의 <표 III-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출생아의 성별에서 불균형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출산 결과만을 놓고 아들 선호사상이라는 문화적 요인의 인과적 요인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아들 선호에 따른 선택적 유산(selective abortion)이 발생하고 있다면 추정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한다⁸⁾.

8) 또한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였듯이 가족내 가사분담의 정도와 출산 간의 관계를 살펴는 것도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동패널에서는 오직 7차년도 부가조사에서만 가사노동시간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한 결정과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결정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는다.

3. 자료 설명⁹⁾ 및 기초통계 분석

가. 자료 설명

출산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시도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회 조사가 이루어졌다.

노동패널은 크게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직업력 자료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에서 가구용 자료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출생연도,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적 특성에 대한 문항 및 가구 소득, 가구 소비, 가구 자산 및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의 인적 특성을 묻는 항목에서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를 이용하면 각 가구원의 가구 내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단면 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가구원의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추적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변동 가구원이 발생할 경우 변동 원인(출생, 결혼, 분가, 합가, 사망 등)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이 설계되어 있다. 또한 출생연도 자료를 이용하면 특정 연도에 출생한 새로운 가구원을 파악할 수 있고,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를 이용하여 출생한 자녀와 엄마와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가구원의 출산력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¹⁰⁾.

9) 본절은 남재량 외 (2008)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10) 1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 조사에 모두 성공한 여성의 경우 총 11년간의 출산력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중간에 패널에서 이탈한

노동패널 가구용 자료에서는 또한 3차년도 자료부터 고등학생(재수생 포함)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보육 및 교육 관련 사교육비 지출 관련 사항을 매우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¹¹⁾. 자녀가 받고 있는 사교육 종류뿐 아니라 각각의 사교육에 대한 월평균 비용을 조사하였다¹²⁾. 이 자료를 통해 가구주 각각의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Becker and Lewis(1973) 이후 자녀의 수(quantity)와 자녀의 자질(Quality) 간의 대체적 관계(tradeoff)¹³⁾에 주목하여 왔다. 사교육비 지출은 자녀의 자질(Quality)을 위한 부모의 투자 결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자녀에 대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결정과 새로운 자녀 출생 결정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가구 구성원 현황, 가구 소득 및 가구 자산 등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기존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출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면 기존의 출산관련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던 출산력자료의 한계점을 고려한 출산결정 요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녀를 출생하는 시점에서 가구의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고 출산 전후의 상황까지 추적할 수 있으므로 보다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패널 분석을 통해 가구 고유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는다. 그러나 노동패널을 이용한 출산의 결정요인 분석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노동패널이 여성의 출산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패널의 조사 기간 동안 출생한 자

표본 혹은 중간에 패널에 합류한 표본의 경우 패널조사에 참여한 기간 동안의 출산력자료 구축이 가능하다.

- 11) 1차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보육 및 교육비 지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2차년도에는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2) 6차년도에는 사교육 종류에 관한 조사를 생략하였다.
- 13) “Quantity Quality Tradeoff”는 부모가 자녀의 수(Quantity) 자녀의 자질(Quality)을 대체제로 간주하고 각 재화의 가구 소득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최적의 자녀의 수(Quantity) 자녀의 자질(Quality)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녀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가구의 현재 상황에 따른 앞으로의 출산 계획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간 구축된 자료를 통해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였으므로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나. 출생아의 인적 특성 분석

노동패널의 총 11년간의 조사 기간 동안 1,463개의 패널가구에서 1,989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¹⁵⁾. 이 중에서 1,840명의 아이는 가구주의 자녀이고 149명의 아이는 가구주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로부터 태어났다. 이 중 가구주¹⁶⁾의 자녀만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913명의 아이가 첫째 자녀이고, 둘째 자녀 787명, 셋째 자녀 123명, 넷째 자녀 13명, 다섯째 자녀 3명, 여섯째 자녀 1명의 순으로 태어났다.

〈표 II-1〉은 연도별 가구주 자녀들의 출생순위별 신생아 수를 보여주고 있다. 1999년과 2000년도를 제외하고는 출산 가구에서 셋째 이상의 출생비율이 10%가 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저출산 현상이 2001년 이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도별 총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를 겪고 난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 출생아 수가 1997년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2000년 이후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의 출산결정에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충격(shock)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14) 다음 장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자녀 출산계획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5) 총 1,989명의 신생아 중에는 36쌍의 쌍생아 자녀가 포함되었다.

16) 노동패널에서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대표의 의미를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원으로 해석하여 가구주 중심의 출산결정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3세대 이상 같이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단순히 가구내의 연장자를 가구주로 보고한 가구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의 제외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고 할 수 있다¹⁷⁾.

〈표 II-1〉 가구주 출생아 출생 순위별 현황

(단위: 명, %)

출생연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합계
1997	117 (50.87)	99 (43.04)	14 (6.09)	-	230 (100)
1998	55 (35.95)	85 (55.56)	11 (7.19)	2 (1.31)	153 (100)
1999	53 (42.40)	59 (47.20)	11 (8.80)	2 (1.60)	125 (100)
2000	72 (45.86)	67 (42.68)	17 (10.83)	1 (0.64)	157 (100)
2001	92 (57.50)	57 (35.63)	9 (5.63)	2 (1.26)	160 (100)
2002	77 (53.47)	57 (39.58)	9 (6.25)	1 (0.69)	144 (100)
2003	94 (52.22)	72 (40.00)	12 (6.67)	2 (1.22)	180 (100)
2004	88 (56.05)	57 (35.63)	9 (5.63)	2 (1.26)	160 (100)
2005	92 (57.50)	63 (40.13)	5 (3.18)	1 (0.64)	157 (100)
2006	102 (50.50)	83 (41.09)	14 (6.93)	3 (1.49)	202 (100)
2007	90 (49.45)	77 (42.31)	12 (6.59)	3 (1.65)	182 (100)
합계	913 (49.62)	787 (42.77)	123 (6.68)	17 (0.92)	1,840 (100)

주: ()는 비율을 의미

자료: 노동패널 1차년도~11차년도

- 17) 이러한 해석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초기의 2차, 3차 조사에서 매우 높은 표본이탈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가구의 이탈로 인해 표본 유지가구 중 신생아 출생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IMF 경제위기가 출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가구의 표본이탈로 인한 출생률 감소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의 분석을 하지 않고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표 II-2〉 가구주 출생아 성별 현황

(단위: 명, %)

출생연도	남자 아이	여자 아이	합계
1997	139 (60.43)	91 (39.57)	230 (100)
1998	86 (56.21)	67 (43.79)	153 (100)
1999	53 (42.40)	72 (57.60)	125 (100)
2000	76 (48.41)	81 (51.59)	157 (100)
2001	81 (50.63)	79 (49.38)	160 (100)
2002	77 (53.47)	67 (46.38)	144 (100)
2003	93 (51.67)	87 (48.33)	180 (100)
2004	91 (57.96)	66 (42.04)	160 (100)
2005	73 (48.67)	77 (51.33)	157 (100)
2006	108 (53.47)	94 (46.53)	202 (100)
2007	95 (52.20)	87 (47.80)	182 (100)
합계	972 (52.83)	868 (47.17)	1,840 (100)

주: ()는 비율을 의미

자료: 노동패널 1차년도~11차년도

총 1,989명의 신생아 중 아들이 1,050명이고 딸이 939명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의 자녀만으로 한정하여 보면 아들이 972명, 딸이 868명 출생하였는데 남자 아이의 출생 수가 여자 아이 출생 수보다 100명이 상 높게 나타났으며 출생아의 성비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 수준에서 기각하였다(P -value=0.0153). 〈표 II-2〉는 연도별 가구주 출

생아의 성별 현황을 보여준다. 1999년, 2000년, 2005년을 제외하고는 남자 아이의 출생아 수가 많았다. 만일 부모가 태아의 성별에 따른 선택적 유산을 하고 있다면 이는 여전히 출생단계에서의 아들 선호사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¹⁸⁾. 그러나 패널에서 표본가구의 이탈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¹⁹⁾.

다. 산모의 인적 특성 분석

다음으로 산모에 대한 기초 통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산모 가운데 가구원의 지위가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만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먼저 <표 II-3>에서는 산모의 연령별 구성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30세 이상 산모의 출산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입여성의 나이도 증가하는 패널자료의 특성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관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산모의 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신생아의 출생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가구에서 관찰될 확률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혼여성의 출산 연령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

18)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34만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합법적인 수술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 중 미혼은 42%, 기혼은 58%였으며, 15~44세 여성의 연간 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당 평균 29.8명(기혼여성 28.6명, 미혼여성 31.6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미국(1,000명당 21.1명), 영국(17.8명) 등 OECD 주요 회원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19) 이에 대하여 익명의 심사자는 산모의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성별에 따른 선택적인 출산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출산결정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모의 연령을 통제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본장 4절에서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다.

다고 해석할 수 있다²⁰⁾.

〈표 II-3〉 산모의 연령별 구성 현황

(단위: 명, %)

연도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5세	합계
1997	23 (10.00)	128 (55.65)	71 (30.87)	8 (3.48)	-	230 (100)
1998	12 (8.05)	73 (48.99)	50 (33.56)	13 (8.72)	1 (0.67)	150 (100)
1999	8 (6.45)	69 (55.65)	36 (29.03)	10 (8.06)	1 (0.81)	124 (100)
2000	15 (9.68)	84 (54.19)	43 (27.74)	12 (7.74)	1 (0.65)	155 (100)
2001	23 (14.56)	86 (54.43)	41 (25.95)	6 (3.80)	2 (1.27)	158 (100)
2002	14 (9.86)	60 (42.25)	62 (43.66)	6 (4.23)	-	142 (100)
2003	10 (5.59)	90 (50.28)	67 (37.43)	11 (6.15)	1 (0.56)	179 (100)
2004	11 (7.01)	70 (44.59)	64 (40.76)	11 (7.01)	1 (0.64)	157 (100)
2005	5 (3.36)	62 (41.61)	67 (44.97)	14 (9.40)	1 (0.67)	149 (100)
2006	4 (2.02)	84 (42.42)	82 (41.41)	27 (13.64)	1 (0.51)	198 (100)
2007	1 (0.56)	75 (41.67)	79 (43.89)	23 (12.78)	2 (1.11)	180 (100)
합계	126 (6.92)	881 (48.35)	662 (36.33)	141 (7.74)	12 (0.66)	1,822 (100)

주: ()는 비율을 의미

자료: 노동패널 1차년도~11차년도

20) 또한 산모의 연령이 증가하는 현상은 통계청의 출생통계 결과와도 일치한다. 통계청의 2009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1999년 이후로 20대 이하 산모의 출생이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30대 이후 산모의 출생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에는 동일한 여성을 추적조사하기 때문에 <표 II-3>에서는 두 번 이상 출산을 경험한 산모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기간 동안 관찰된 총 1,822건의 출생건수²¹⁾를 살펴보면 한 번 이상의 출산을 경험한 산모가 모두 1,352명에 이른다. 이 중 906명의 산모는 한 번의 출산만을 경험하였고 423명의 산모는 두 번, 22명의 산모는 세 번, 그리고 1명의 산모는 모두 네 번의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노동패널 조사기간 중에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는 모두 949명에 이른다. 즉, 총 1,352명의 산모 중에 403명의 산모는 노동패널 진입 이전 시점에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949명의 산모는 노동패널 1차년도 조사에서는 자녀 출산의 경험이 없었던 원가구원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첫 번째 출산을 경험하였거나 혹은 차후 조사연도에 결혼을 통해 분가한 원가구원이 새롭게 출산을 경험한 경우, 아니면 원가구원과 결혼한 신규 가구원이 새롭게 출산을 경험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노동패널에서 산모의 첫 번째 출산부터의 출산력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949명의 산모를 편의상 신규 산모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표 II-4>에서는 신규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수 경험별 산모의 첫 번째 출산시점에서의 연령별 구성 현황을 조사하였다. 총 949명의 신규 산모 중 529명의 산모는 한 번의 출산만을 경험하였고, 두 번의 출산을 경험한 산모가 모두 398명, 세 번의 출산을 경험한 산모가 21명, 그리고 1명의 신규 산모는 총 네 번의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임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첫 번째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총 출생아 수가 적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두 번 이상의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20대에 첫 출산을 경험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번의 출산만을 경험한 신규 산모의 경우 20대에 첫 출산을 경험한 비율이 63.14%

21) 1,822건의 출생건수는 18건의 쌍생아 출생건수를 포함한 수치이다. 따라서 총 출생아 수는 1,840명에 이른다.

에 머무는 반면 두 번의 출산을 경험한 산모들의 경우 이 수치가 77.69%에 이르러 14.55% 높게 나타났다. 세 번 이상의 출산을 경험한 산모의 경우 해당 비율이 81.82%에 다다르고 있다. 즉, 첫 번째 출산시점의 연령이 낮을수록 두 번 이상의 출산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첫 번째 출산시점의 평균 연령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 번의 출산만을 경험한 산모의 경우 초산시점의 평균 연령은 28.93세로 나타나 두 번 이상의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평균 초산연령보다 1.37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출산 수 경험별 첫 번째 출산 시점 연령 구성 현황

(단위: 명, %)

출산 수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5세	평균	합계
한 번	39 (7.37)	295 (55.77)	159 (30.06)	32 (6.0)	4 (0.76)	28.93 (3.53)	529 (100)
두 번	55 (13.82)	253 (63.57)	84 (21.11)	6 (1.51)	-	27.58 (2.93)	398 (100)
세 번 이상	4 (18.18)	14 (63.64)	2 (9.09)	2 (9.09)	-	27.27 (3.55)	22 (100)

주: ()는 비율을 의미

자료: 노동패널 1차년도~11차년도

첫 번째 출산시점의 연령은 결혼연령 및 결혼시점부터 첫 번째 출산까지의 소요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음의 〈표 II-5〉에서는 이 두 가지 점을 살펴보았다. 〈표 II-5〉는 신규 산모의 출산 수 경험별 결혼연령 및 결혼 후 출산순위별 출산소요기간을 보여준다. 노동패널 조사기간 중에 첫째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949명의 산모들 가운데 결혼 시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898명을 대상으로 결혼연령 및 출산 순위별 평균 출산소요기간을 구해보았다²²⁾. 오직 한 번의 출

22) 결혼연령은 초혼을 기준으로 취합하였다. 재혼한 산모의 경우 초혼연령

산을 경험한 산모들의 평균 결혼연령이 두 번 이상의 출산을 경험한 산모들에 비하여 0.76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소요기간을 살펴 보면 한 번의 출산을 경험한 산모의 경우 결혼에서부터 첫째아를 출산하기까지 평균 24개월이 소요되었으나 두 번의 출산을 경험한 산모들의 경우 결혼부터 첫째아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17개월로 조사되어 약 7개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두 집단의 산모들 간의 첫째아 출산 소요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²³⁾. 세 번 이상 출산을 경험한 산모의 경우 또한 첫째아 출산 시점부터 둘째아 출산 시점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이 두 번의 출산만을 경험한 산모보다 8.9개월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음을 알 수 있었다²⁴⁾. <표 II-5>의 결과로부터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경험 수가 적고, 또한 첫째아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아부터 셋째아 출산까지의 소요기간도 늘어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²⁵⁾.

지금까지 노동패널에서 출산을 경험한 산모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II-3>, <표 II-4>, <표 II-5>의 결과를 종합하면 30세 이상에서 출산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이는 결혼연령과 첫 번째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추세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혼연령의 증가에 따른 첫 번째 출산시기의 지연은 결과적으로 총 출

이 결측치로 보고되었다.

- 23) 두 집단 간에 결혼시점부터 첫째아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이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1%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P-value=0.0000)
- 24) 두 집단 간에 첫째아 출산시점부터 둘째아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이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1%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P-value=0.0095)
- 25) 세 번 이상 출산을 경험한 신규 산모들의 경우 둘째아 출산시점에서 셋째아 출산시점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이 3.68년으로 나타나 결혼 시점부터 첫째아 출산소요기간 및 첫째아 출산시점부터 둘째아 출산소요기간보다 길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셋째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데 걸리는 소요기간이 그 이전 순위의 자녀 출산까지의 소요기간보다 길어진다고 추측하여 볼 수 있으나 표본의 수가 충분히 많지 않아 이에 대해 결론지어 언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II. 출산결정 요인 분석 47

생아 수의 감소의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오직 한 번의 출산만을 경험한 산모들 중에는 아직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젊은 가임여성이 표본에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노동패널 조사 기간 중 표본에서 이탈한 가임여성 중에 새로운 출산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의 결과만을 보고 여성의 첫 번째 출산 연령 상승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에서 나타난 현상은 여성의 결혼연령 상승과 저출산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표 II-5〉 출산 수 경험별 · 출산순위별 출산소요기간

(단위: 개월)

출산 수1	결혼연령	결혼~ 첫째아 출산	첫째아 출산~ 둘째아 출산	둘째아 출산~ 셋째아 출산
한 번	26.53 (3.29)	24.08 (22.14)		
두 번	25.79 (2.76)	17.11 (13.97)	32.66 (15.95)	
세 번 이상	25.41 (3.26)	17.32 (13.96)	23.73 (8.10)	44.18 (21.94)

주: 1. 결혼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산모 중에 결혼 후 한 번의 출산을 경험한 산모의 수는 496명, 두 번의 출산을 경험한 산모의 수는 380명, 세 번이상의 출산을 경험한 산모의 수는 22명이다.

2. ()는 표준편차를 의미

자료: 노동패널 1차년도~11차년도

26)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결혼 후 첫 번째 출산까지의 간격(duration)을 분석하는 기간모형(duration analysis)을 설정하고 다른 변수들이 출산(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통제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김현숙 외(2006), 조병구 외(2007)에서 2003년도 “전국 출산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간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최근에 류기철·박영화(2009)는 여성가족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간모형분석을 하였다. 기간모형(duration analysi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4. 노동패널을 이용한 출산결정 요인 분석

본절에서는 노동패널에서 출산을 경험한 출산 가구와 그렇지 않은 비출산 가구를 비교하여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두 집단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출산 결정 요인 분석을 위한 프로빗(Probit)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기초통계에서 예측하는 효과가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았다.

가.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의 기초통계를 이용한 비교 분석

노동패널에서 출산을 경험한 출산 가구와 그렇지 않은 비출산 가구를 비교하여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출산 가구에 대한 적절한 비교집단을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적절한 비교집단으로는 아직 여성의 생애에서 출산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출산 가능한 산모이면서 당해 연도에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비교집단을 선정하면 두 집단 간의 어떠한 차이가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 지표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일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때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를 15세부터 49세까지로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40세 이상의 여성 중에서 출산을 경험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생물학적 가임여성이 있는 모든 비출산 가구를 비교집단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미 생애에 걸친 출산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어 더 이상 출산의 의사가 없는 가구들이 다수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가구들의 경우 당해 연도 출산은 더 이상 가구 효용 극대화 문제

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 연도별로 출산을 경험한 산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즉, 매년 패널의 조사차수에서 전년도에 출산을 경험한 산모를 기준으로 최고령 산모의 나이를 구하고 가임여성 가구원²⁷⁾의 연령이 이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같은 해에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정의하였다. 2007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노동패널 11차년도 자료의 경우 2008년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설문에 응답한 가구 중에 먼저 2007년에 출산을 경험한 가구가 출산 가구로 정의된다. 다음으로 비교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표 II-6>에서 최고령 산모의 나이를 확인한 결과 41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41세 이하의 해당 여성 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에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를 비출산 가구로 정의하였다. 노동패널의 매년 조사차수별로 이와 같은 방식을 거쳐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를 정의하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이전 차수 조사시점에서 출산이 완료된 비출산 가구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비교집단인 비출산 가구를 선정한 후에는 기초통계분석에 어떠한 변수들을 고려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비교를 위한 기초통계분석에는 대부분의 출산결정요인 분석에서 고려되는 모(母)의 연령 및 학력, 부(父)의 연령 및 학력, 출산시점 이전 연도까지의 자녀 수, 기존 자녀의 성별 구조, 출산년도의 연간 가구 소득, 월평균 소비지출 및 순자산, 여성 가구주 비율,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 그리고 가구주 자영업자 비율 등을 포함하였다. 연간 가구 소득·월평균 소비지출·순자산 등의 항목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모두 2005년의 실질 가치로 변환하였다.

27)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서 새로운 출산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가정이 출산결정 요인 분석의 핵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II-6〉 산모의 연령 기초통계

(단위: 세)

연도	평균	표준편차	최저 연령	최고 연령
1997	28.47	3.32	21	39
1998	29.48	3.77	21	41
1999	29.05	3.66	20	45
2000	28.95	3.98	19	45
2001	28.45	3.68	21	42
2002	29.20	3.38	20	37
2003	29.35	3.25	20	40
2004	29.44	3.43	22	41
2005	30.05	3.39	22	42
2006	30.50	3.61	19	40
2007	30.69	3.40	23	41

자료: 노동패널 1차년도~11차년도

분석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노동패널에서 관찰되는 변수들 간의 시점 불일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노동패널은 매년 4월부터 10월에 걸쳐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취합한다. 이 때 가구 소득과 월평균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 및 소비지출에 대하여 조사한다. 그러나 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조사시점의 시기에 관하여 질문한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에 대한 자료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유량(flow)의 개념인 소득·소비와 저장(stock)의 개념인 자산·부채 간에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결정에 가구 소

득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 시점에서 총 가구 소득이 조사되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출산 결과를 기준으로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를 정의하였다. 따라서 출산이 발생한 시점의 순자산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난해 조사 시점에서 가구에서 보고한 자산과 부채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 순자산 변수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패널조사에서 표본이탈이 발생하거나 신규 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순자산 변수를 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석에서 순자산은 상당수의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노동패널에서는 가구원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변수들도 조사 시점 당해 연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라든가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 주당 근로시간 등의 자료는 모두 조사 시점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묻고 있다. 따라서 출산 시점과 가구원(특히 출생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활동에 관한 변수도 모두 지난해 조사에서 보고한 사항을 이용하였다. 또한 노동패널에서는 자녀의 질적 수준(Quality) 향상을 위해 가구에서 지출한 사교육비에 대한 정보도 당해 연도 조사 시점의 지출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자녀의 출산과 기존 자녀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정보도 지난 조사 시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패널자료를 재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내용은 노동패널 1차년도 자료의 특수성에 관한 것으로 1998년 노동패널이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가구 전체 소득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2차년도 이후의 가구 소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11년 동안 축적된 노동패널에서 출산을 경험한 표본의 수가 충분히 관찰되었다고 판단하여 통계분석 및 회귀분석에서 1차년도 출산 결과 자료는 생략하기로 하였다²⁸⁾.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패널 총 11차년도 자료 중에 10개

28) 가구 자산 및 부채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 계수가 크다고 가정하면 시점 일치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차수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도

년도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래의 <표 II-7>은 이렇게 주요 변수에 관한 시점 불일치 문제를 고려한 후의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 간의 기본적인 인적 특성 및 경제적 상황에 관한 기초통계(평균과 표준오차)를 비교하였다.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에는 당해 연도 이전까지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무자녀 가구도 포함되었다. 단순한 기초통계 비교를 위하여 노동패널 10개년도 자료를 모두 합쳐서 통합횡단면자료(pooled cross-section data)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일한 가구라 할지라도 조사차수가 달라짐에 따라 다른 가구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²⁹⁾. 분석에 포함된 출산 가구의 수는 1,592가구이고 비출산 가구의 수는 14,678가구에 이른다³⁰⁾.

먼저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의 인적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출산 가구 산모의 연령이 평균 4.76세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해석하면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모의 연령과 출산 간에 부(-)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비출산 가구 중에는 비교적 이른 연령에 생애 출산결정을 완료한 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의 연령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추정(over-estimate)할 가능성에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산모의 학력을 나타내는 교육 연수의 경우 출산 가구에서 1년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또한 산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 확률이 높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출산 가구에 젊은 여성의 분포가 많은 것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³¹⁾.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표본의 손실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1차년도 자료를 포함하고 시점 불일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초 통계 결과에도 차이는 없었다.

29) 아래에서는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하는 패널가구의 특성을 이용하는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30) 이는 기초통계분석에 포함된 최대 가구의 수를 나타낸다. 본문에서 지적한대로 변수들 간에 시점 불일치문제로 인해 각 항목별로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수의 가구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출산 가능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의 경우에도 출산 가구의 남성들이 평균 5.26세 어리고 교육 연수도 평균 0.8년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또한 출산 가구 산모의 평균 연령이 낮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출산연도 직전연도까지의 자녀 수를 살펴보면 출산 가구에서 평균 0.58의 자녀를 두고 있고, 비출산 가구에서는 평균 1.6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가구 중에는 직전연도까지 자녀가 없다가 결혼 후 처음으로 자녀를 출산 한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³²⁾.

다음으로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의 가구 경제에 대한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출산 가구의 연간 가구 소득이 비출산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273만원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순자산을 비교하면 비출산 가구의 순자산의 규모가 2,045만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월평균 소비지출 역시 출산 가구에서 약 21만원 정도 작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종합하여 보면 출산 가구에 출산이 이루어졌던 해의 가구 총소득, 월평균 소비지출 및 가구 순자산의 규모가 모두 비출산 가구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중요한 이유는 가구주의 연령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출산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비출산 가구에 비교하여 5세 정도 어린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출산 가구 중에 첫째아를 출산한 비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젊은 가구가 다수 포함된 반면 비출산 가구에서는 이미 출산결정이 완료된 가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동질적인 비교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1)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교육 연수는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5세 여성인구 중에 1990년 8.3%에 불과하였던 대졸 이상 여성비율이 2005년에는 25.4%까지 증가하였다.

32) <표 III-7>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출산 가구 중에는 직전연도에 자녀가 없었던 비율이 50%를 나타냈고 비출산 가구에는 12.5%의 가구가 직전연도에도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14,678가구 중에 12.5%의 가구는 노동패널 조사에 포함된 기간 동안 자녀 출산의 경험이 전무하였다.

저출산 문제를 언급할 때 여성의 일과 양육의 양립에 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어 왔다. 이번에는 여성의 근로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출산결정과 경제활동 참여와의 관계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II-7>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작성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당해 연도 출산을 경험한 여성 중에서는 오직 24.1%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비출산 가구에서는 두 배 가까운 39.8%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의 근로소득이 0이라고 간주하고 해당 여성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을 계산해본 결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출산 가구에서 평균적으로 229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역시 실제로 출산을 경험하는 시기에 일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비출산 가구에서는 이미 출산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표의 결과만 보고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 참여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으나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특성을 따로 살펴보면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 사이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된다. 출산 가구에서 임금근로자인 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비출산 가구에서는 자영업을 영위중인 가구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는데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산모가 느끼는 미래의 안정성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가구주의 연령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젊은 시절 임금 근로자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구 자산을 축적한 후에 자영업으로 전환한 가구주가 포함되었을 경우 단순히 가구주의 현재 종사상 지위뿐 아니라 과거의 종사상 지위 또한 영향을 미칠 수

II. 출산결정 요인 분석 55

있으므로 아래에서 비교집단의 범위를 좁혔을 때 여전히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7〉 무자녀 가구를 포함한 기초통계

(단위: 만원)

	출산 가구	비출산 가구
모(母)의 연령(세)	29.57 (0.10)	34.33 (0.08)
모(母)의 교육 연수(년)	13.52 (0.06)	12.47 (0.05)
부(父)의 연령(세)	32.26 (0.11)	37.52 (0.09)
부(父)의 교육 연수(년)	13.96 (0.07)	13.16 (0.05)
기존 자녀 수(명)	0.585 (0.02)	1.616 (0.01)
가구 소득	3,094 (65.16)	3,367 (24.08)
가구 순자산(자산-부채)	8,122 (342.0)	10,167 (281.6)
월평균 소비지출	155.0 (2.05)	176.2 (1.38)
모(母)의 경제활동 참여율(%)	24.1 (1.21)	39.8 (0.75)
모(母)의 근로소득	437.6 (28.04)	667.7 (31.62)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	74.2 (1.32)	64.4 (0.85)
가구주 자영업자 비율(%)	16.2 (1.12)	26.8 (0.81)
표본 수(N)	1,592	14,678

주: ()안은 표준오차. 동일한 산모가 여러 번 관측된 점을 고려하여 산모의 id로 clustering 하였음.
자료: 노동패널 2차년도~11차년도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첫 번째 자녀 출산에 대한 결정과 이미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에서 두 번째 이상의 자녀 출산에 대한 결정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표 II-8>에서는 이미 한 명의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가구만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자녀의 출산 유인을 제거하고 출산 시점에서 기존의 자녀가 새로운 자녀의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아직까지 결혼을 하고 나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출산 문제에서 핵심은 한 명의 자녀를 낳은 가구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분석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상의 자녀 출산으로 한정하여 본 결과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 사이에 모(母)의 연령 차이는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 연수와 부(父)의 연령에서는 무자녀 가구를 포함한 경우에 비해 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차이의 크기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기존 자녀의 수는 비출산 가구에서 0.6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녀의 수가 새로운 자녀의 출산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어 기존 자녀의 평균 연령에서도 비출산 가구의 자녀들이 4.3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 가구는 비출산 가구에 비해 자녀의 수가 작고 상대적으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연령이 더 높아지기 전에 출산 과정을 마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볼 수 있다.

한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가구들에서 기존 자녀의 성별 구조를 살펴보면 출산 가구에서 아들이 없었던 가구의 비율이 49% 이상을 보이는 반면 비출산 가구에서의 해당 비율은 22.8% 수준에 머물렀다. 딸이 없었던 가구의 비율도 출산 가구에서 45.5%, 비출산 가구에서 33.9%를 보여서 부모들이 같은 성별의 자녀를 둔 경우 다른 성별의 아이를 얻기 위해 새로운 자녀의 출산 의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존에 한 자녀만을 두고 있었던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녀의 수가 두 명 이상인 가구로 한정하여 동일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보유하고 있던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세 번째 이상 자녀 출생이 관찰된 총 119가구 중에서 아들이 없었던 가구의 비율이 47.9%로 강하게 나타났으나 딸이 없었던 가구의 비율은 17.6%에 머물러 더 이상 이러한 행태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아들이 없었던 가구에서 새로운 자녀의 출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여전히 아들 선호사상이 출산결정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가구 소득, 가구 순자산, 월평균 소비지출은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났다. 이는 역시 가구주의 연령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母)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경우 비출산 가구에서는 무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나 출산 가구에서는 6.6%의 참여율 하락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점은 이미 예측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두 명 이상의 자녀 출산 간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구주의 임금근로자 비율에서는 출산 가구에서 소폭의 하락이 관찰되었고 가구주 자영업자의 비율에서는 이와 반대로 출산 가구에서 3.9%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 이상의 자녀 출생과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와의 관계는 첫 번째 자녀의 출생 결정에서보다 줄어들었다. 따라서 다자녀 출산에 있어서 미래의 소득 안정성에 대한 가구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종사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가구주 연령의 차이에 기인한 효과가 큰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결정과 기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서로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 간에 사교육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표 II-8〉 한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가구에 대한 기초통계

(단위: 만원)

	출산 가구	비출산 가구
모(母)의 연령(세)	30.74 (0.12)	35.13 (0.04)
모(母)의 교육 연수(년)	13.22 (0.07)	12.29 (0.02)
부(父)의 연령(세)	33.56 (0.14)	38.41 (0.05)
부(父)의 교육 연수(년)	13.79 (0.09)	13.02 (0.02)
기존 자녀 수(명)	1.18 (0.02)	1.85 (0.01)
기존 자녀 평균 연령(세)	4.04 (0.11)	8.35 (0.05)
아들이 없었던 가구 비율(%)	49.3 (1.86)	22.8 (0.84)
딸이 없었던 가구 비율(%)	45.5 (1.83)	33.9 (0.99)
기존 자녀 사교육 이용률(%)	33.5 (2.26)	68.6 (0.55)
기존 자녀 연간 사교육비	59.36 (5.94)	247.1 (3.57)
기존 자녀 1인당 사교육비	45.11 (4.22)	134.7 (2.00)
가구 소득	3,191 (96.33)	3,411 (25.98)
가구 순자산(자산-부채)	9,146 (508.6)	10,355 (167.5)
월평균 소비지출	164.2 (2.93)	181.8 (0.84)
모(母)의 경제활동 참여율(%)	17.5 (1.41)	37.2 (0.80)
모(母)의 근로소득	344.7 (33.51)	627.1 (35.02)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	70.8 (1.73)	63.5 (0.89)
가구주 자영업자 비율(%)	20.1 (1.56)	27.7 (0.85)
표본 수(N)	793	12,847

주: ()안은 표준오차. 동일한 산모가 여러 번 관측된 점을 고려하여 산모의 id로 clustering 하였음.

자료: 노동패널 2차년도~11차년도

비교 결과 Quantity Quality Tradeoff 모형이 예측한 바와 같이 비출산 가구에서 연간 기존 자녀의 사교육 이용비율이 두 배 이상 높고 지출금액은 네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 자녀 수 차이를 감안하여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을 비교하여 보아도 그 차이가 세 배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³³⁾. 사교육 이용비율과 지출액을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존 자녀 평균 연령의 차이가 상당부분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 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학습지에 지출한 금액을 순수한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출산 가구의 속한 자녀들의 연령이 출산 가구에 속한 자녀들보다 평균 4.3세 많은 것이 이러한 지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에서 세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모두 다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음에는 오직 한 명의 자녀만 두고 있었던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II-9〉에서는 출산 가구의 출산 시점 이전에 오직 한 자녀만을 두고 있었던 가구만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여 위의 〈표 II-8〉을 재구성하여 보았다. 부모의 연령 및 학력에 관한 변수에서 나타나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자녀의 연령 차이도 1.7년 정도 차이가 좁혀져서 두 집단에서 기존 자녀의 연령 차이는 2.58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의 부모 연령

33) 사교육 이용 비율은 기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의 평균을 구하였다. 예를 들어 세 명의 자녀 중에 두 명에게만 사교육비 지출을 하고 있다면 67%의 비율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사교육비 금액은 0을 포함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가구 소득과 가구 순자산, 월평균 소비지출에서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분석 대상을 한정된 결과 가구주 종사상 지위에서의 차이도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사교육 이용률에서 20%의 차이로 비출산 가구에서 사교육 이용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연간 사교육비 지출금액에서도 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 이용률의 차이와 사교육비 지출금액의 차이가 자녀의 연령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의 정도가 여전히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교육비의 지출형태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비출산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두 집단 간의 연간 가구 소득 수준은 매우 유사한 수준이며 가구 자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가구의 경제상황에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사교육비를 포함한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두 집단 간에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사교육비의 차이는 사교육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의 차이, 즉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또는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선호의 차이는 없으나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 사이에서 사교육비 단위가격의 차이가 나서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새로운 자녀의 출산에 대한 결정과 기존 자녀에게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 간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표 II-9〉 한 자녀 가구 기초통계

(단위: 만원)

	출산 가구	비출산 가구
모(母)의 연령(세)	30.27 (0.12)	32.47 (0.08)
모(母)의 교육 연수(년)	13.32 (0.07)	13.06 (0.04)
부(父)의 연령(세)	33.02 (0.14)	35.35 (0.09)
부(父)의 교육 연수(년)	13.88 (0.09)	13.56 (0.05)
기존 자녀 연령(세)	3.56 (0.09)	6.14 (0.11)
사교육 이용률(%)	27.2 (2.33)	47.1 (1.28)
기존 자녀 연간 사교육비	36.45 (4.32)	115.3 (5.24)
가구 소득	3,119 (94.38)	3,244 (42.63)
가구 순자산(자산-부채)	8,606 (480.7)	9,464 (334.9)
월평균 소비지출	160.3 (3.12)	161.8 (1.37)
모(母) 경제활동 참여율(%)	17.5 (1.48)	36.6 (1.46)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	72.5 (1.81)	68.7 (1.47)
가구주 자영업자 비율(%)	17.2 (1.53)	19.9 (1.37)
표본 수(N)	674	3,348

주: ()안은 표준오차. 동일한 산모가 여러 번 관측된 점을 고려하여 산모의 id로 clustering 하였음.

자료: 노동패널 2차년도~11차년도

나. 출산결정에 관한 프로빗(Probit) 모형 분석

위의 <표 II-8>과 <표 II-9>에서부터 기존 자녀에게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새로운 자녀의 출산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확인하였다. 그러나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 간에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기존 자녀의 연령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사교육비와 출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는지 알아보고자 프로빗(Probit)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프로빗 모형 분석은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변수들이 가구의 출산에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가구가 반복되어 관찰되는 패널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료의 특성을 이용한 통합 프로빗 모형(pool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³⁴⁾.

다음의 <표 II-10>은 통합 프로빗 모형을 적용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³⁵⁾ <표 II-10>의 첫 번째 열은 자녀가 없었던 가구를 대상

34) 다수의 횡단면자료를 포함하는 패널에서 종속변수가 이항선택인 모형을 분석하는 경우 개별 패널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확률오차항(μ_i)이 정규분포를 갖는다는 확률 효과 프로빗 모형(random effect probit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확률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오차항의 총분산($\sigma_\mu^2 + \sigma_\epsilon^2$) 대비 패널 수준의 분산을 ρ 로 정의하고 $\left(\rho = \frac{\sigma_\mu^2}{(\sigma_\mu^2 + \sigma_\epsilon^2)}\right)$, ρ 가 0인지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가능하다. 만일 ρ 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통합 프로빗 모형(pooled probit model)이 적절하다. 본 연구를 위해 확률 효과 프로빗 모형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대부분의 실증분석 모형에서 ρ 가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합 프로빗 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참고로 확률 효과 프로빗 모형(random effect probit model) 추정결과 또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35) 익명의 심사자 중 한 분이 패널자료의 속성상 생애주기효과가 워낙 많은 패턴을 설명하므로, 단순히 연령 변수만을 이용하여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여 주셨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에 의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으로 첫째아 출산결정에 대한 프로빗 모형(1)의 추정 결과를 나타내고, 두 번째 열에서는 기존에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결정 프로빗 모형(2)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출산결정 요인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에서 예측하는 대로 모(母)의 연령이 출산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임여성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출산확률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모(母)의 교육수준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는 않지만 모형 (2)에서부터 여성의 교육 연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둘째아 이상의 출산확률이 0.13% 증가하는 경향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래의 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 사이에 상당히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에 대한 결정과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정 결과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확률에 미치는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추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효과들에 비해 그 영향력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추정 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출산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도 상쇄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표 II-10>의 추정 결과는 그동안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여성의 일과 양육의 양립의 어려움이 추정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구 소득은 첫째아 출산결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둘째아 이상의 출산에 있어서는 가구 소득이 100만원 상승하면 출산확률이 0.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

변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심사자의 제안에 따라 연령의 cubic term(4차항)까지 모두 통제하여 추정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추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저자들은 심사자의 지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구 순자산 및 가구주의 임금 근로자 지위가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구 자산과 가구주의 임금 근로자 지위 더미 변수의 효과를 미래의 소득흐름에 대한 상대적 안정성이라고 해석하여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출산결정에 있어서 미래의 예상되는 소득흐름보다는 당해 연도 소득 수준이 한계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 둘째아 이상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결정에 유효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하여 볼 수 있다³⁶⁾.

기존에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던 가구에서 두 번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출산결정 모형을 분석한 모형(2)의 추정 결과는 기존 자녀의 수와 성별, 그리고 기존 자녀에게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추가 자녀의 출산확률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기존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기존 자녀들의 평균 연령이 올라갈수록 새롭게 출산할 확률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들 간의 터울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부모의 선호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주목할 내용은 기존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과 출산과의 관계이다. 모형(2)의 추정 결과는 <표 II-8>과 <표 II-9>에서 발견된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 사이의 기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현황의 차이가 자녀의 연령효과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자녀의 평균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사교육비 지출은 출산확률의 감소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추정 결과만을 가지고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면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가구 효용함수에서 자녀 수보다 자녀의 질적 수준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있는 가구의 선호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교육비와 출산 사이의 음(-)의 관계가 특히 몇 번째 아이의 출산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 II-11>에

36) 다음 장에서는 본절의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서는 기존 자녀의 수를 고정시킨 후 프로빗 분석을 실행하여 보았다. 추정 결과 사교육비는 특히 둘째아 출산결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에서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자녀를 위해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에 느끼는 부담의 정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³⁷⁾.

모형(2)에서는 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아들 선호사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들이 없었던 가구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가구에서 유의하게 출산확률이 높아지는지 추정하여 본 결과 아들이 없었던 가구에서 추가 자녀의 출산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향이 자녀 성별의 다양성을 선호하는 부모의 선호를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딸이 없었던 가구 더미 변수도 동시에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추정하였다. 딸이 없었던 가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출산확률 증가의 효과를 보여서 부모의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정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 아들이 없었던 가구의 추정계수가 40% 정도 높게 나타나서³⁸⁾ 아들 선호의 효과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문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가구만으로 한정하여 동일한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여 본 결과 아들이 없었던 가구에서의 출산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딸이 없었던 가구에서는 어떤 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따

37) 사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지출에는 영향을 미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선호(preferenc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러한 변수를 찾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의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사교육비와 출산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개개의 가구에서 직면하는 사교육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도구변수로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38) 두 변수의 추정계수가 같다는 귀무가설은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P-value=0.0195)

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아들 선호사상이라는 문화적 요인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10〉 출산결정에 관한 통합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첫째아	둘째아 이상
	출산모형(1) (기존 자녀 수=0)	출산모형(2) (기존 자녀 수≥ 1)
모(母)의 연령	-0.0563*** (0.0117)	-0.0591*** (0.0111)
모(母)의 교육 연수	0.0351* (0.0210)	0.0323* (0.0181)
모(母) 경제활동 참여 더미 변수	-0.691*** (0.0837)	-0.448*** (0.0707)
기존 자녀 수	-	-0.784*** (0.0822)
기존 자녀 평균 연령	-	-0.0269* (0.0158)
자녀 1인당 연간 사교육비(백만원)	-	-0.120*** (0.0335)
아들이 없었던 가구 더미 변수	-	0.520*** (0.1010)
딸이 없었던 가구 더미 변수	-	0.375*** (0.0982)
연간 가구 총소득(백만원)	0.00038 (0.0019)	0.00327*** (0.0008)
가구 순자산(천만원)	-0.000077 (0.0036)	-0.000055 (0.0019)
가구주 임금근로자 더미 변수	0.106 (0.0953)	-0.0171 (0.0659)
상수항	0.854* (0.4540)	1.226*** (0.4140)
표본 수(N)	1,353	7,186
가구 수	728	2,268
Log pseudolikelihood	-833.729	-1,142.832

주: 1. *** p<0.01, ** p<0.05, * p<0.1

2. ()안은 표준오차. 산모의 id로 clustering 하였음.

3. 설명변수에 연도 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 과정에서 생략하였음.

자료: 노동패널 2차년도~11차년도

II. 출산결정 요인 분석 67

<표 II-11> 출산 순위에 따른 출산결정 통합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둘째아 출산모형 (기존 자녀 수=1)	셋째아 출산모형 (기존 자녀 수=2)	넷째아 출산모형 (기존 자녀 수=3)
모(母)의 연령	-0.0522*** (0.0125)	-0.0438* (0.0237)	-0.173** (0.0713)
모(母)의 교육 연수	0.0214 (0.0205)	0.0257 (0.0344)	0.0662 (0.1020)
모(母)의 경제활동 참여 더미 변수	-0.527*** (0.0841)	-0.311** (0.1240)	0.181 (0.4590)
기존 자녀 평균 연령	-0.0761*** (0.0177)	-0.0181 (0.0240)	0.0807 (0.0770)
자녀 1인당 연간 사교육비(백만원)	-0.0949*** (0.0365)	-0.054 (0.0476)	-0.343 (0.2520)
아들이 없었던 가구 더미 변수		0.592*** (0.1250)	0.0143 (0.5770)
딸이 없었던 가구 더미 변수		0.086 (0.1420)	0.813 (0.5230)
연간 가구 총소득(백만원)	0.00444*** (0.0017)	0.00172 (0.0017)	0.0118*** (0.0042)
가구 순자산(천만원)	-0.0022 (0.0027)	2.62E-03 (0.0027)	-0.012 (0.0151)
가구주 임금근로자 더미 변수	0.0359 (0.0844)	-0.149 (0.1140)	0.760** (0.2990)
상수항	0.951** (0.4440)	-1.011 (0.7440)	1.521 (2.5020)
표본 수(N)	1,802	4,669	319
가구 수	839	1,561	177
Log pseudolikelihood	-780.039	-276.936	-21.934

주: 1. *** p<0.01, ** p<0.05, * p<0.1

2. ()안은 표준오차. 산모의 id로 clustering 하였음.

3. 설명변수에 연도 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 과정에서 생략하였음.

자료: 노동패널 2차년도~11차년도

출산결정에 관한 프로빗(Probit) 모형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의 연령의 상승은 출산확률은 감소시키고 학력의 증가는 이와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새로운 출산결정 사이에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력의 효과는 상쇄될 여지가 큰 점을 발견하였다. 가구 소득은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으나 가구 자산과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기존 자녀 수와 기존 자녀 평균 연령의 증가는 출산확률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기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추가자녀 출산의 감소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둘째아 출산결정에 있어서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아들 선호사상은 여전히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세 번째 이상의 아이 출산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5.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앞 절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출산결정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회의 조사 자료를 혼합(pooling)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표본의 이탈이 발생하였고 출산을 경험한 가구 중에는 원가구에서 분가한 신규 가구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노동패널에서 관찰된 현상이 다른 자료에서도 관찰되는지 확인하여 보는 것이 분석결과의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강건성 검증을 위해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여 보았다. 재정패널에는 노동패널에서 관찰되는 가구 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자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출산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가구의 사교육비 지

출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패널은 2009년 자료(재정패널 2차년도)가 가용하여 2008년 출산한 가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본절에서는 재정패널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재정패널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 출산가구와 비출산 가구를 비교하여 노동패널에서 관찰되었던 현상이 동일하게 관찰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재정패널자료 개요 설명

2007년 1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세금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와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국세청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즉,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의 불합리성과 국민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기획된 재정패널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국가와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패널자료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조세 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조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재정패널 조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패널자료가 구축되면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개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 평가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연 단위분석에서 패널자료로 인해 연간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조세와 재정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관련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조세, 재정관련 통계의 경우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 주기가 단기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국가통계에 준하는 패널자료가 중단면적으로 다양하게 생산됨으로써 조세, 재정관련 통계 인프라가 재편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연구 활성화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조세, 재정분야의 경우 연구의 특성상 상당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필수적인데 재정패널을 통해 자료의 부재로 그동안 연구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학문과 정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재정패널에는 기존의 패널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역을 모든 응답자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소득공제 내역은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해내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래서

소득공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는 것도 조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연간 소득내역과 공제내역, 결정세액 등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본 조사에서는 매년 1~2월경에 근무처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수집 대상이 되었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모든 서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명세서] 2가지 서류를 수집하고 있다. 매년 작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가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수집 대상이 되었다. 단, 방문판매나 보험모집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집 서류에 포함시켰다. 이렇듯 재정패널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세모의실험모형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납세자들의 납세정보 및 각종 인적 특성과 자산·소득·소비지출 등의 경제상황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 소득 증빙서류를 수집한 것이다. 소득세 및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수집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점은 재정패널만의 우수성이라 할 수 있다.

나. 출산결정 모형 분석에 사용된 자료

재정패널자료는 유사한 패널자료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구원의 출생연월, 성별, 각 연도 말 기준으로 혼인상태·가구주와의 관계·교육수준·경제활동 상태 및 가구 동거기간(개월 수)을 조사한다. 이러한 가구원의 인적 현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2차년도(2008) 조사에서는 1차년도(2007) 조사 이후 가구 구성원의 변동 사항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였다. 즉, 2차년도 자료 조사 시점(2009년 5월~9월)에서 1차년도

(2007) 가구원에게 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구원의 변동 사유를 조사하였다. 매년 조사 시점에서 가구원 현황이 변동함에 따라 패널자료의 가구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2008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이나 친척을 가구원으로 정의한다³⁹⁾.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조사 시점에서 새롭게 분가하거나 사망하여 더 이상 원가구의 가구원이 아닌 경우, 혹은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새롭게 원가구에 합류한 신규 가구원이 발생한 경우 재정패널 2차년도 기준으로 가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2008년 6월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2차년도(2008) 가구원에 포함되지만 2008년 7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같은 해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자료의 가구원 정의를 따르지 않고 2008년 중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정의한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신생아를 출산하지 않은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정의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신생아 출산가구와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집단은 엄마의 연령이 43세 이하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이는 재정패널 2차년도 표본에 포함된 신생아 출산가구 산모의 최고 연령이 43세이기 때문이다⁴⁰⁾.

재정패널에는 또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008년 가구 소득 및 2008년도 말 시점에서의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을 포함하여 2008년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9) 단, 학업만을 목적으로 분가한 초·중·고등학생과 미혼인 대학생은 6개월 이상 같이 생활하지 않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며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가구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0) 비교집단을 어떻게 구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임의적(arbitrary) 판단이 작용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분석결과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비교집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비교분석을 시도한 후 분석결과가 강건한(robust)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2008년 말을 기준으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조사한다. 따라서 재정패널에서는 노동패널에서와 달리 설명변수 간의 시점간 차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2007년도 말 시점까지의 가구 내 자녀 구성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2008년 출산이 첫 번째 자녀의 출산인지, 그 이전에 몇 명의 자녀가 있었는지, 자녀의 성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산가구 고유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가구의 인적구성 및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다.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의 기초통계를 이용한 비교 분석

재정패널 2차년도 자료에서 2008년에 신생아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수는 154가구에 이른다⁴¹⁾. 본절에서는 한 자녀만을 두고 있었던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7년까지 한 자녀만을 두고 있었던 가구는 총 444가구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에서 64가구가 2008년도에 신생아의 출산을 경험하였다.

아래의 <표 II-12>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4절의 <표 II-9>를 재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인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노동패널에서보다 두 집단 모두 연령과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의 관계는 노동패널에서 관찰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기존 자녀의 연령은 1~1.5세 낮게 관찰되었으나 사교육 이용률과 연간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재정패널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41) 3세대 이상 같이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손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모두 10가구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산모가 가구주의 배우자이거나 가구주인 경우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손자녀 출산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II-12〉 재정패널에서 한 자녀 가구 기초통계

(단위: 만원)

	출산 가구	비출산 가구
모(母)의 연령(세)	33.09 (0.47)	34.53 (0.25)
모(母)의 교육 연수(년)	14.41 (0.27)	14.01 (0.11)
부(父)의 연령(세)	35.39 (0.48)	37.12 (0.30)
부(父)의 교육 연수(년)	14.78 (0.25)	14.39 (0.12)
기존 자녀 연령(세)	2.594 (0.29)	4.404 (0.23)
사교육 이용률(%)	43.8 (6.25)	59.1 (2.56)
기존 자녀 연간 사교육비	58.27 (15.12)	206.4 (17.93)
가구 소득	3,987 (308.0)	4,177 (135.6)
가구 순자산(자산-부채)	16,749 (4210)	16,928 (1372)
월평균 소비지출	206.1 (9.88)	210.4 (4.75)
모(母) 경제활동 참여율(%)	21.9 (5.21)	30.8 (2.37)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	75 (5.5)	75 (2.2)
가구주 자영업자 비율(%)	18.8 (4.92)	22.6 (2.15)
표본 수(N)	64	380

주: ()안은 표준오차
자료: 재정패널 2차년도

이러한 이유는 재정패널에서는 노동패널과는 달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를 자세히 질문하지 않고 학원비나 과외비로 지출

한 금액의 합만을 조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노동패널자료에서는 사교육비 금액을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005년 기준 실질가치로 전환하였으나 재정패널에서는 물가지수 조정 없이 2008년 명목가치로 보고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액 수준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 사이에서 세 배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관찰되는 양상은 노동패널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 그 밖의 다른 변수들은 노동패널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표 II-12>에서부터 재정패널에서도 기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둘째 자녀의 출산결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출산결정에 관한 프로빗(Probit) 모형 분석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출산결정에 관한 프로빗(Pr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재정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추정을 시도하였다. 아래의 <표 II-13>은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4절의 <표 II-10>에 대응하는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표 II-10>과 <표 II-13>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역시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는 자녀의 평균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출산율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 즉,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2008년의 출산결과를 놓고 분석을 시도하였음에도 기존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과 새로운 자녀 출산 간의 역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의 다른 설명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차이 나는 것은 재정패널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한 추가 분석은 앞에서 발견한 출산결정 요인 분석결과를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I-13〉 재정패널을 이용한 출산결정에 관한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첫째아 출산모형(1) 둘째아 이상 출산모형(2)	
	(기존 자녀 수=0)	(기존 자녀 수≥ 1)
모(母)의 연령	-0.0421** (0.0198)	-0.0263 (0.0194)
모(母)의 교육 연수	0.0950** (0.0442)	-0.0195 (0.0333)
모(母)의 경제활동 참여 더미 변수	-1.111*** (0.2490)	-0.463*** (0.1550)
기존 자녀 수		-0.589*** (0.1420)
기존 자녀 평균 연령		0.00409 (0.0236)
자녀 1인당 연간 사교육비(백만원)		-0.200*** (0.0497)
아들이 없었던 가구 더미 변수		0.544*** (0.2110)
딸이 없었던 가구 더미 변수		0.413* (0.2140)
연간 가구 총소득(백만원)	-0.00493 (0.0051)	0.00411 (0.0029)
가구 순자산(천만원)	0.002450 (0.0063)	0.000845 (0.0028)
가구주 임금근로자 더미 변수	-0.580** (0.2510)	-0.0472 (0.1430)
상수항	0.484 (0.8880)	0.427 (0.7420)
표본 수(N)	187	1,456
Log likelihood	-100.074	-255.853

주: 1. *** p<0.01, ** p<0.05, * p<0.1

2. ()안은 임의이 이분산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white type의 robust standard error임.

자료: 재정패널 2차년도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장의 실증분석에서는 가구 소득 및 자산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러한 결과는 자녀 순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소득이 첫째아의 출산에 미치는 확률에 대해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며, 두 자료에서 추정된 추정계수의 부호 자체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패널자료를 통한 분석에서는, 비록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의미가 없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가구 소득이 첫째아 출산확률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가구소득이 첫째아 출산확률을 높이는 하지만, 그러한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추정계수의 크기도 매우 작다.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는 경우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가구 소득이 둘째아 이상의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나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둘째아 이상의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가구 소득이 둘째아 이상의 출산에 미치는 확률과 관련하여, 추정계수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100만원 상승하면, 둘째아 이상의 출산확률은 0.32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는 해석이지만, 둘째아 출산의 확률을 10% 높이고자 한다면, 가구당 약 3천만원 이상의 소득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보편적인 자녀수당 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동패널 자료의 분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구 소득의 증가가 둘째 이상의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출산율을 의미 있는 정도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출산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의 규모는 실현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크다.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대규모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조세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지원액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작아지게 되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증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특정한 집단 별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소득 계층별, 혹은 기타 특성을 반영하는 집단별로 소득 증가가 추가적인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경우에는 자녀수당 등의 출산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이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에서는 소득증가가 출산율을 높일 확률이 없거나 낮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는 확률이 큰 경우에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재분배를 하는 성격을 가지는 자녀수당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재정 정책수단이 재분배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 V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증가가 추가적인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Ⅲ. 출산율 하락의 원인 분석

1. 서론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출산율의 변화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자료의 해석에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실제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와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출산율 하락 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출산율 추이의 분석

가. 합계출산율

출산율 지표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계출산율이다. 이는 통계청(2006)에 따르면 이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각 연도별 합계출산율은 당해 연도 총출생아 수를 가임연령여성(15~49세)의 수로 나누어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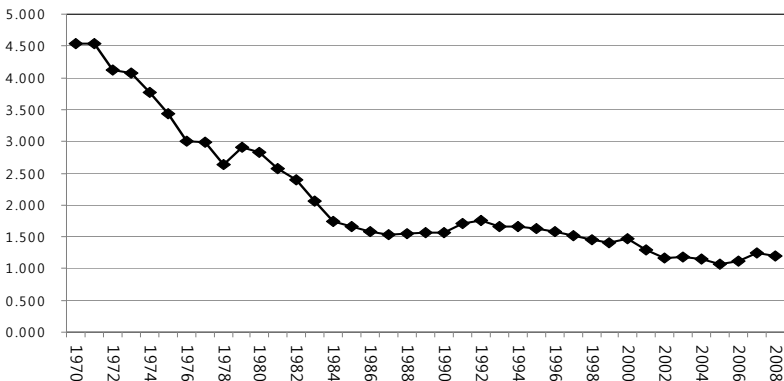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초반에는 4~5명 정도였으며,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⁴²⁾. 합계출산율은 1983년

에는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하였으며⁴³⁾, 1986년에 1.5명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1990년까지는 1.5명대로 유지되다가, 1991년 및 1992년에는 일시적으로 1.7명대로 상승하였으나, 1993년부터 다시 하락하여 1996년 및 1997년에는 다시 1.5명대가 되었다. 1998년에는 추가적으로 소폭 하락하여⁴⁴⁾ 2000년까지 1.4명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1년과 2002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 1.17명이 되었다. 이후 추이를 보면, 가장 낮았던 시점인 2005년에는 1.08명, 가장 높았던 시점인 2007년에도 1.25명으로 다소의 등락은 있지만, 평균치는 1.16명으로 2002년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Ⅲ-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자료 (KOSIS 자료)

42) 1979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부분적인 예외는 있다.

43) 향후 인구 수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출산율을 인구대체율 수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2.1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수준이라 하더라도,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측면은 예외로 한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인구규모가 감소하게 된다.

44) 외환위기로 인해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다는 인식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

합계출산율은 출산율 변화를 관찰함에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지만, 그것이 실제 출산행태의 구조적인 변화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평균이 1.16명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자녀를 1.16명만 출산하는 추세로 고착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혹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합계출산율이라는 지표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이미 2.1명 이하로 하락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로 굳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의 위험성이 이미 1983년부터 가시화된 것이라면, 정부가 왜 좀 더 일찍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기도 한다.

나. 완결출산율

우선 각 시점에서 산출되는 합계출산율이 실제 출산 행태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출산 행태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유용한 지표는 각 세대의 완결출산율인데, 완결출산율은 어떤 세대의 여성이 최종적으로 출생한 자녀의 수를 그 세대 여성의 수로 나누어 산출된다. 그러나 완결출산율은 출산행태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표이지만, 어떤 세대의 출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수치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라는 지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합계출산율 지표는 출산에서의 일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때로 합계출산율은 완결출산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완결출산율은 일정하게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완결출산율보다 크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장 전형적인 상황은 모의 출산연령이 상승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의 출산연령이 원래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을 보자. 이 상황에서는 합계출산율은 완결출산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특정연도에 갑자기 기준에 주로 출산을 하던 연령대의 여성들 중 10%가 출산을 1년 연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당해 연도 출산이 10%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기존의 수준 및 완결출산율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다. 모의 출산 연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이 완결출산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합계출산율만을 토대로 출산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큰 한계가 있다. 완결출산율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계출산율이 가지는 한계를 부분적으로라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의 평균출산연령 등의 지표를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이미 2.1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1980년대 말까지도 외형적으로 관찰되는 합계출산율의 하락이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1986~1989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1.5명대 정도였지만, 이 시기에 출산이 왕성한 연령대인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출생자들의 완결출산율은 2.0명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1.5명대로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기에 이미 모의 출산연령이 크게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시 모의 평균연령은 매년 약 0.2세 정도 상승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합계출산율은 완결출산율보다 약 20%, 즉 약 0.4명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 외에 추가적으로 셋째아 출산의 감소로 인한 영향도 있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큰 부분이 모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III. 출산율 하락의 원인 분석 83

라는 것이다. 이처럼 모의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출산연령의 상승이 멈추게 되면 출산율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1년과 1992년에 출산율이 1.7명대로 다소 높아진 것도 상당 부분 출산연령의 상승세가 둔화된 것에서 비롯된다⁴⁵⁾. 물론 모의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영구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한다.

실제로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출산율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출산율이 다소 낮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일단 여기서는 그러한 논의는 접어두고, 출산율이 영구적으로 대체출산율 이하가 되는 추세가 고착되는 것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로 해석하기로 한다.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언제 최종적으로 고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표 III-1〉 가정별 출생코호트별 완결출산율

(단위: 명)

	1955년생	1960년생	1970년생	1975년생	1980년생	1985년생	1990년생
중 위	2.26	2.08	1.74	1.43	1.32	1.31	1.28
고 위	2.26	2.08	1.74	1.55	1.64	1.61	1.58
저 위	2.26	2.08	1.74	1.42	1.19	1.05	0.97

주: 출생코호트별 완결출산율이란 특정연도에 태어난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실제로 낳은 평균 출생아 수입.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2006)

45) 물론 그 외에도 이 시기에 셋째아의 출산이 다소 증가한 요인도 있다. 물론 이처럼 출산연령의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일시적인 추세였으며, 1993년부터는 모의 첫째아 출산연령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좀 더 정확한 고찰을 위해서는 세대별 완결출산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대별 완결출산율 통계 및 전망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2006)에서는 각 세대별 완결출산율에 대한 가정치(추정치) 중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960년생의 출산율은 대략 인구대체율 수준이다. 1970년생의 완결출산율은 1.74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이하로 하락하는 문제는 1970년생 혹은 그 이전의 어떤 세대부터 시작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는 세대별 완결출산율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다. 세대별 출산율 차이

이하에서는 통계청의 연령별 출산율 통계를 이용하여 세대별 출산행태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III-2]에 1960년대 중후반 출생자부터 시작하여 3년씩 차이가 나는 몇 세대,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64년생, 1967년생, 1970년생, 1973년생, 1976년생의 출산연령별 출생아 수를 제시하였다. [그림 III-2]의 분포만으로는 세대별 완결출산율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 III-3]에 세대별 완결출산율 및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완결출산율 전망치(가정치)는 통계청 인구전망(2006)의 중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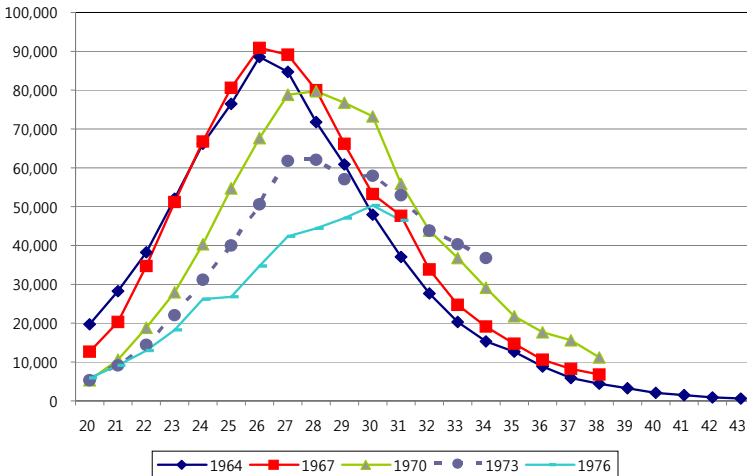
먼저 [그림 III-2]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가지적인 특징은 연령대가 늦어질수록, 모의 평균 출산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점이다. 1967년생을 1964년생과 비교하면, 20대 초반에서의 출산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20대 후반 이후의 출산율은 높다. 1970년생을 1967년생과 비교하면, 그러한 차이는 1964년과 1967년생의 차이보다 더욱 현격하다. 1967년생의

III. 출산율 하락의 원인 분석 85

경우에는 출산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연령대가 1964년생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생에서는 출산이 가장 집중되는 연령대가 1~2살 정도 늦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추세는 이후 세대에서 더욱 가속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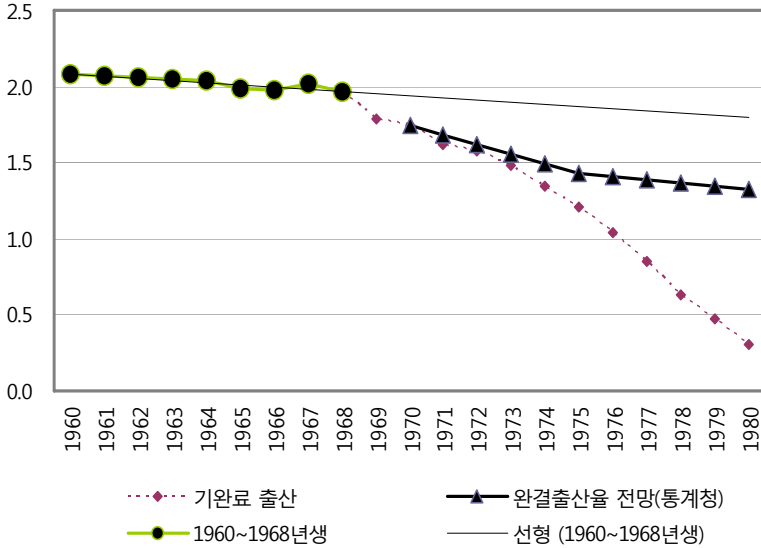
대략적으로 볼 때, 1970년생을 전후로 하여 출산연령 및 출산율 등에서 큰 변화가 발생한다. 좀 더 정확한 추세를 세대별 완결출산율을 나타낸 [그림 III-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1968년생까지의 완결출산율에 기초한 추세선을 포함하였다. 1968년 이전의 세대에서는 세대별 완결출산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69년생 및 1970년생의 경우에는 그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1969년생 및 1970년생의 출산율은 그러한 추세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969년생이나 1970년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출산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 세대의 추가적인 출산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므로, 오차의 범위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림 III-2] 모의 출산연령별 출생아 수



자료 : 통계청 (KOSIS 자료) 인구동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그림 Ⅲ-3] 세대별 완결출산율



자료 : 통계청 인구전망(2006), 통계청 (KOSIS 자료) 인구동향조사 자료 토대로 저자 계산

비록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1973년생의 경우에도 이미 출산이 크게 하락세를 보이는 연령대에 들어선 점을 감안하면, 완결출산율에 대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2008년까지 이들의 출산율은 약 1.57명 정도이며, 완결출산율은 약 1.6명 정도로 추정되어, 1970년생의 완결출산율이 1.75명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는 0.15명이나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생을 전후로 하여 출생연도가 1년 늦어질 때마다 출산율 하락 정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생을 전후로 하여 출산연령도 현저하게 늦어지기 시작한다. 1973년생의 경우에는 출산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연령이 26~27세 정도로 1970년생과 유사하지만, 이 시기의 출산율은 1970년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반면 31세 이후의 출산은 1970년생에 비해서는 더 높다.

이후 세대로 갈수록 출산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III. 출산율 하락의 원인 분석 87

있다. 1976년생 정도가 되면, 출산율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 자체가 30~31세로 이전의 세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늦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전 세대에서 출산이 가장 집중되던 연령대인 26~27세에서의 출산은 이전 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1976년생의 완결출산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2008년에 이미 피크를 지나고 는 있지만, 피크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은 정도로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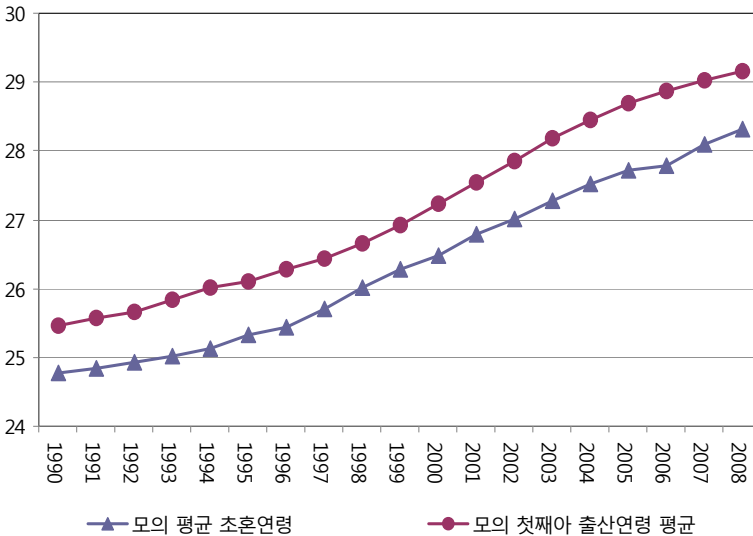
통계청 중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1976년생의 완결출산율은 1.4명 내외로 3년 전의 세대인 1973년생에 비해 0.2명이나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대별로 출산율이 일정 폭씩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출생연도가 1년 늦을 세대일수록 출산율이 0.07명 정도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1980년생까지에서는 출생연도가 1년 늦어질 때마다 출산율이 대략 0.02명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출생연도가 늦어짐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정도는 작아진다. 그 이유는 1975년생에서는 이미 출산율이 상당히 하락한 정도로라고 믿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8년생까지 합계출산율이 거의 2명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출생연도가 늦어질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는 발견되었지만, 그 정도는 작았다. 1969년~1970년생을 전후로 하여 출산율이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 출생연도가 늦을수록 출산연령도 크게 늦어지기 시작한다. 그러한 변화는 주로 1969년~1976년생의 세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후 세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1970년대 중반 출생자에서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한 후에는 출산율의 하락과 출산연령의 상승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1969~1976년생은 출산과 관련하여 일종의 전환기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세대별 완결출산율에 대한 고찰은 앞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답함

에 있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명대로 하락하였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1.1명 정도의 자녀를 출산하는 추세로 고착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의 출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978~1980년생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완결출산율은 약 1.3~1.4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이처럼 낮게 유지되는 것은 모의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⁶⁾([그림 Ⅲ-3] 참조). 이처럼 결혼 연령 및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완결출산율은 1.3명대 정도로 보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림 Ⅲ-4] 모의 평균 초혼 연령 및 첫째아 출산연령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 (KOSIS 자료)

46) 모의 둘째아 출산 평균연령은 첫째아 출산 평균연령보다 약 2세 정도 늦으며, 대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III. 출산율 하락의 원인 분석 89

물론 이러한 점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낙관적인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이 보여주는 1.1명대가 아닌 1.3명 내외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및 그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등 저출산의 부작용을 다룬 연구들은 통계청 인구전망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인구전망치는 합계출산율이 아니라 완결출산율 전망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점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기존에 비해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출산율 전망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현재의 20대 여성들의 출산율은 전망치보다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들 세대에서의 출산율은 향후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 및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진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좀 더 어렵다.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이미 2.1명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1980년대 말에는 1.5명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그 시점에서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주로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시점에서 실제로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출산율이 거의 항구적으로 하락하는 위험성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생을 전후한 세대에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의 조짐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그러한 추세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출산율 하락이 외환위기 및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구조 변화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본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세대부터 출산율 하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록 외적으로 그러한 추세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인 1990년대 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요인이 더 오래 전부터 잠재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주로 형성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상당 부분이 이미 10대 혹은 그 이전에 형성되어 있다면, 실제로 이들 세대에서의 출산율 하락의 근원은 외환위기 발생 시점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한 2002년을 전후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의 영구적인 하락을 초래할 위험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 1998년 전후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하락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그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비교적 빨리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및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완결출산율 전망치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 지표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오히려 긴 시차 없이 출산율 하락의 심각성이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은 향후 연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산율이 세대별로 크게 다르다는 것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치관이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가치관이 세대별로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 및 정책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대별로 가치관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통합한 자료를 토대로 출산율 결정요인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급적이면 세대별로 차별화하여 출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 세대의 행태를 분석한 자료를 미래 세대에서의 행태 예측의 근거로서 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대별 행태의 차이, 그리고 최근 출산율이 하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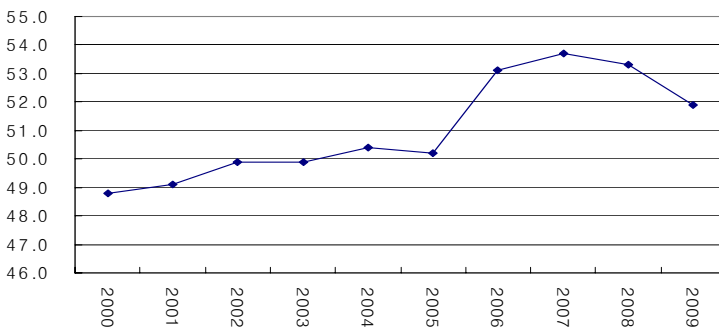
고 있는 세대의 출산 행태, 특히 출산결정 요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하는 최근의 자료 분석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세대별로 왜 이렇게 출산율이 하락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연구에서 이 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3. 세대별 여성 행태의 변화

앞에서는 1970년을 전후한 세대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지만, 일단 관찰되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세대별 행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여성들의 행태 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 중 하나가 경제활동참가율, 특히 30~34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판단하여, 이 지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0~34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0년에 50% 내외가 된 후 2000년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에 갑자기 53%대로 상승하였다.

[그림 III-5]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자료 : 통계청 KOSIS 자료

2006년에 30~34세에 해당되는 집단은 1970~1976년생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세대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세대다. 이들 집단은 이전 5년 정도 전의 세대에 비해 30~34세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p 이상 높다. 이들 세대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30~34세에서의 미혼율이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결혼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이전 세대에 비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들 세대에서는 20대 후반에서의 출산이 줄고, 30대 초반에서 출산이 증가하면서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이 중 세 번째 요인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처음의 두 요인에 의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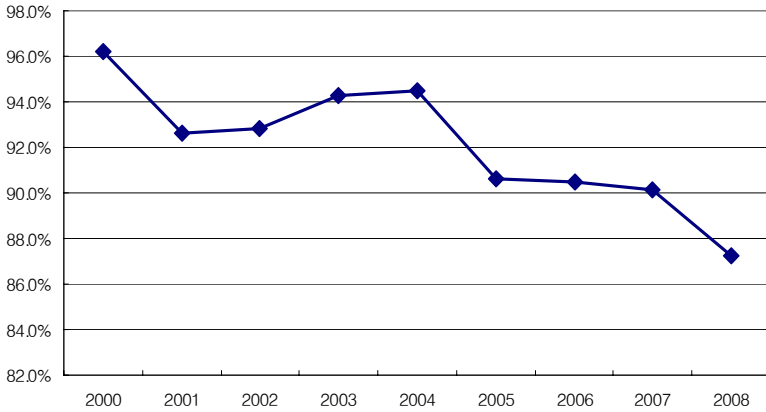
이들 세대 여성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표로 이들 세대의 임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30~34세 대졸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34세 대졸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은 1998년에는 100%에 달하였다. 1990년대까지 이 연령대 대졸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과 거의 격차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연령대에서 대졸자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주로 안정된 직장(decent job)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연령대 대졸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비율이 2005년을 전후로 급격히 하락하여 2008년에는 87%가 되었다.

남성 대비 임금 비율의 하락만으로는 여성 노동시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임금분포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과 2008년의 임금 분포를 비교하였다.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근로자 수는 2005년과 2008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상대적으로 중하위 임금구간에 속하는 100만~130만원대 임금구간에서의 여성근로자의 수가 2005년에 비해 2008년에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Ⅲ. 출산을 하락의 원인 분석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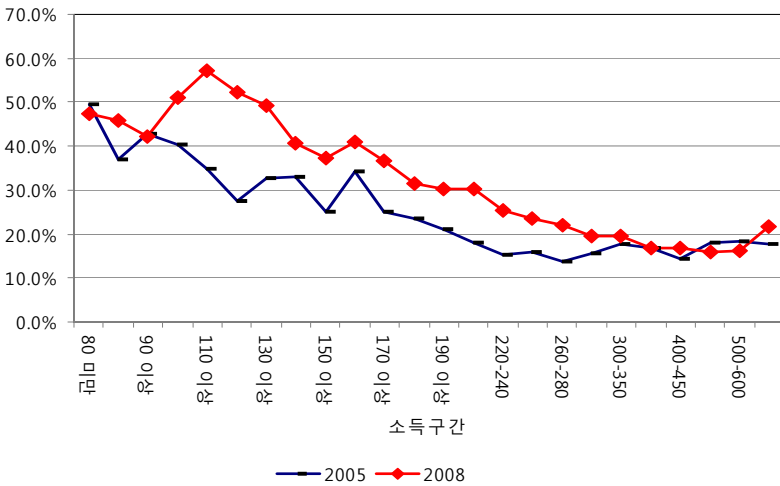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Ⅲ-6] 30~34세 대졸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비율



자료 : 통계청 KOSIS 자료

[그림 Ⅲ-7] 소득구간별 여성근로자 비중



자료 : 통계청 KOSIS 자료

정확하게 어떤 요인에 의해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2008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계열적인 추이는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이 하락하는 추세는 이미 수년 전에 시작하였던 점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결혼 후에도 비록 임금수준은 낮지만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30대 초반에서 미혼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다.

최근의 출산율 하락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직업을 포기하고 출산 및 양육을 전담할 경우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회비용의 상승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만으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임금 상승은 전체 중 일부에 해당되는 최고소득 구간에서만 발견된다. 여성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이론은 좀 더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는 잘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⁴⁷⁾,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세대인 1970년대 초반 출생자들의 행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970년대 초반 세대에서의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의 원인은 여성의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 등의 경제적 동기보다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⁴⁸⁾.

47) 1970년대 초반 출생자에서는 학업성취도 측면 등에서 남녀 격차가 존재하였다. 남성 대비 여성의 학업성취도 등이 격차가 감소한 것은 좀 더 이후의 세대다.

4. 출산자녀 수 및 혼인 행태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혼율 증가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 내 출산자녀 수가 감소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전체 출산 중 혼외출산의 비중이 높은 프랑스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혼외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예전에 비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2% 미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함에 있어 대체적으로 유용하다. 전자의 원인, 즉 결혼 내 출산자녀 수 감소는 좀 더 세분하면, 결혼은 하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는 것과 자녀를 출산하기는 하되 이상자녀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48)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관련하여 1998년 외환위기가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외환위기가 일시적인 충격으로 작용하였다면, 초혼연령이 일정기간 낮아졌다가 이후에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나 결혼연령의 상승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이후에는 낮아지는 현상은 아니었다. 여성 초혼연령의 상승은 이미 외환위기 전부터 시작되어 온 추세이며, 외환위기 이후 그 폭이 약간 더 커지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외환위기라는 것이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초혼연령의 상승은 1998년 외환위기 후 1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 후에 새로운 안정점(stady state)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진행과정으로 보는 것보다는 세대별로 가치관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의 간단한 고찰이 왜 1970년생을 전후한 세대에서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그렇다면 왜 그 세대에서 급격하게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가. 출산순위별 비중

일부 문헌에서는 사람들이 한 자녀만을 갖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로 최근 수년 동안의 출생아의 순위별 구성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즉 최근의 출생아를 보면, 전체 출산 중 첫째아의 비중은 늘고, 둘째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근거로 제시되는 수치에 오류는 없다. 실제로 전체 출산 중 첫째아의 비중은 2000년에는 47.2%에서 2008년에는 52.3%로 증가하였으며, 둘째아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출산 중 첫째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자녀를 하나만 갖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전체 출산 중 첫째아의 비중이 하락한 것은 2000년 이후의 추세이며, 그 이전에는 그러한 추세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말에는 전체 출산 중 첫째아의 비중은 최근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54% 내외였으며⁴⁹⁾, 이후 2000년에는 47.2%가 될 때까지 하락하고 있었다. 전체 출산 중 첫째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위에서의 논리를 반대로 적용한다면, 전체 출산 중 첫째아의 비중이 하락하던 시기인 198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오히려 상승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상승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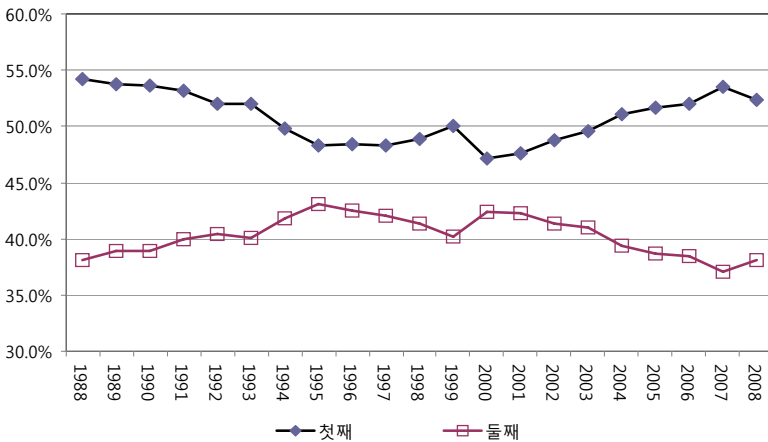
이처럼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한 출생아 중 출산순위의 비중에 대한 자료만으로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체 출산 중 첫째아의 비중이라는 지표는 각 세대별 산모의 수가 비교적 일정한 경우에는 출산율 하락 등의 추세를

49) 둘째의 비중 역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심지어는 셋째 이상의 비중은 7% 내외로 최근의 9.5% 내외에 비해 더 낮았다.

III. 출산을 하락의 원인 분석 97

이해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대별 인구의 수, 특히 첫째아를 집중적으로 출산하는 연령대의 인구나 둘째아를 집중적으로 출산하는 연령대의 인구 수가 다르다면, 이 지표는 충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음의 간단한 예를 보자. 모든 사람이 30살에 첫째를, 32살에 둘째를 출산한다고 가정하자. A라는 시점에서 30살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인구가 32살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인구의 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첫째아의 비중은 50%가 된다. B라는 시점에서는 30살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인구가 32살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인구보다 10% 많다고 가정하자. B라는 시점에서 전체 출산 중 첫째아의 출산은 둘째아의 수보다 10% 많아지며, 전체 출산 중 첫째아의 비중은 약 55%가 된다. 모든 여성이 2명을 출산하는 행태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인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출산 중 첫째아의 비중 등이 변화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출산 중 첫째아의 비중이라는 지표는 평균 출산연령이 변화되거나 자녀의 터울이 변화되는 것에도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림 III-8] 전체 출산 중 출산순위별 비중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 조사 자료

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한 고찰

좀 더 정확한 고찰을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나누어 기혼자의 이상 자녀 수, 미혼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아직 진행중이므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확인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대부분의 출산의 전제조건이 되는데, 혼인과 관련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이해함에 있어 유용할 것이다. 통계청의 연령별 결혼동향 자료에서 재혼과 초혼을 구분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연령별로 정확한 미혼율을 산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5세별로 구분된 여성의 연령대별 결혼 및 출산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05년에 35~39세인 기혼여성(1966~1970년생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평균자녀 수는 1.87명으로 2000년에 35~39세인 기혼여성의 평균자녀 수인 1.92명에 비해 0.05명 낮은 정도의 차이만을 보일 뿐이다. 그리고 2005년에 1966~1970년생 세대의 출산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며, 특히 30대 중반 이후의 둘째 자녀 출산이 이전 세대에 비해 많아진 추세를 감안하면, 이들 연령대 기혼여성들의 최종적인 평균자녀 수가 1961~1965년생 세대 기혼여성들의 최종적인 평균자녀 수와 차이를 보이는 정도는 0.05명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 따라서 1966~1970년생 세대 중 적어도 30대 초중반 이전에 결혼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면, 1961~1965년생 세대와 비교하여 평균자녀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적어도 이들 집단에서는 한 자녀만을 가지려는 성향이 출산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추세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6~1970년생 세대 전체로서의 완결출산율은 1961~1965년생 세대에서의 출산율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2005년에 35~39세에서의 기출산자녀 수를 해당 연령대 여성 전체 수로 나누면 1.73명으로, 2000년에 35~39세에서의 기출산자녀 수를 해

Ⅲ. 출산율 하락의 원인 분석 99

당 연령대 여성 전체 수로 나눈 수치인 1.84명보다 약 0.11명 낮다. 물론 35~39세의 여성 중에는 추가적인 출산이 있을 것이므로, 1966~1970년생 세대의 완결출산율이 1961~1965년생 세대와 차이를 보이는 정도는 35~39세까지의 출생아 수만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인 0.11명보다는 다소 작아질 것이다. 최근까지의 출생아 수 등을 추가로 활용하여 추정한다면, 그 차이는 0.1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35~39세 기혼자의 평균자녀 수는 이전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세대 전체로서의 출산율이 그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혼 및 만혼의 증가에서 비롯된다. 즉 일단 35~39세에서의 미혼율을 보면, 1966~1970년생 세대에서는 4.2%였으나, 1961~1965년생 세대에서는 7.4%로 크게 증가하였다. 물론 이후에도 추가적인 결혼이 있을 것이며, 최종적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이전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이 세대에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일찍 결혼하는 연령대의 여성들이 한자녀만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유보다는, 다소 늦게 결혼을 하는 여성들에서의 평균자녀 수가 감소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출생연도가 늦어지더라도, 결혼을 늦게 하는 집단이 아닌 한 첫째아 출산 후 둘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생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1969년생의 경우보다 낮다. 그러나 전체 출산 중 둘째아의 비중은 1969년생과 1970년생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1970년생에서 출산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둘째의 출산이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미혼 또는 무자녀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에 30~34세인 집단, 1971~1975년생들에서는 30~34세에서의 미혼율은 19%로 1966~1970년생 세대의 30~34세에서의 미혼율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기혼자의 평균자녀 수도 1.52명으로 이전의 세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0.18명 하락하였다.

그러나 30~34세는 아직까지 출산이 진행중인 세대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최종적인 평균자녀 수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출산연령이 대폭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 추가적으로 둘째를 출산하는 비율도 클 것이다. 이들 세대가 전 세대에 비해 결혼을 늦게 함으로 인해 함께 출산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실제로 이들 세대의 기혼자의 평균자녀 수가 감소할 것인지는 기출산자녀 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이들 세대 중 30~34세에서 기혼자인 여성들의 추가자녀 등에 대해 추정하여 보기로 한다. 30~34세 기혼여성들 중 추가자녀계획이 있는 비중은 약 25.6% 정도다. 이들 집단에서의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실제 출산으로 연결된다면, 이 세대에서 30~34세 기혼자의 평균자녀 수는 사후적으로 0.255명 정도 상승하여 거의 1.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⁵⁰⁾.

이 세대의 완결출산율은 1.5~1.6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1966~1970년생 세대의 완결출산율 추정치인 1.9명 내외에 비하면 0.3~0.4명 정도 적은 것이다. 이 세대 중 30~34세에 기혼자인 여성들에 대해 예상되는 최종적인 평균자녀 수는 약 1.8명 정도로, 1966~1970년생 세대의 평균자녀 수 추정치에 비해 약 0.18명 정도 낮다. 대체적으로 보면, 1971~1975년생 중에서 2005년에 이미 결혼을 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 내 자녀 수의 감소가 그 세대의 출산율이 이전 세대인 1966~1970년 세대의 출산율에 비해 하락한 원인 중 절반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세대 출산율이 이전 세대에 비해 하락한 원인의 나머지는 결혼을 비교적 늦게 하는 여성들의 이상자녀 수 감소 및 최종적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비율의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

50) 둘 이상의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여 추정한 것이다. 물론 추가적인 자녀계획이 반드시 실제 출산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실제 평균자녀 수는 그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다. 반면, 계획 이상으로 출산이 늘어나는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으로 볼 수 있다⁵¹⁾).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출산율 하락이 시작되는 첫 세대인 1970년 혹은 그 이전 출생 여성들에서의 출산율 하락은 미혼 및 만혼 여성들의 증가로 인한 부분이 크다. 이들 세대에서 결혼이 늦지 않은 여성들의 평균자녀 수는 적지 않다. 1971년생 이후에서의 출산율의 추가적인 하락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물론이고, 일찍 결혼을 한 여성들의 평균자녀 수 감소도 출산율 하락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1971~1975년생을 기준으로 보면, 결혼을 일찍 하는 집단과 늦게 하는 집단에서의 평균 출생아 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0~34세에 이미 기혼인 여성들의 평균 출생아 수는 1.8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결혼이 늦은 여성들의 출산율은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구가 진행된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대부분이 5세 구간 자료로 공개되고 있어, 더 늦은 세대에서의 행태 고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행태 변화의 분석대상을 주로 1975년생 이전의 세대에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사용하게 되면, 1980년생까지를 포함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공개되는 5세별 자료 외에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엄격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의 큰 부분은 비혼자의 증가, 혹은 결혼을 늦게 하는 여성들의 출산자녀 수 감소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러한 정도의 분석만으로 정책제안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시사점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할 수 있

51) 1971~1975년생 세대 중 2005년에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자녀 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통계청 인구전망치 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수치는 1.0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을 것이다. 출산율 하락의 큰 부분이 만혼 및 비혼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크며, 따라서 경제적인 접근만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출산율 제고 효과를 높은 부분에 집중하기 위하여, 혜택을 둘째에 집중하더라도 그로 인한 출산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결혼을 일찍 하는 집단에서는 정부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둘째를 출산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둘째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한 자녀 혹은 무자녀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집단, 즉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집단에서는 둘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이들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둘째아에 대해서 첫째아와 차별화되는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출산제고 효과 외에도 형평성 등 다른 측면도 감안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것이 주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혹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청년실업, 혹은 주택 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들이 단지 결혼연령만을 다소 높이되 출산율에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닌 것인지, 혹은 출산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장에서는 합계출산율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향후 완결출산율이 적어도 최근의 합계출산율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다행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낙관

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등 저출산의 부작용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통계청 인구전망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인구전망치는 합계출산율이 아니라 완결출산율 전망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완결출산율이 현재 통계청 전망치의 중위치보다 더 낮아지고, 그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의 부작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 행태를 살펴보면 세대별로 출산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1970년생을 전후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추세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출생연도별 결혼 및 출산 행태의 변화에서 불연속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⁵²⁾.

결혼 연령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기는 하지만, 결혼을 늦게 하지 않는 여성들의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71~1975년생의 경우 30~34세 기혼인 여성들의 평균자녀 수는 최종적으로는 약 1.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하락의 큰 부분은 미혼의 증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혼의 증가 혹은 늦게 결혼하는 여성들의 출산 감소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에서 경제적 요인보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크다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소

52) 외환위기 혹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구조의 변화는 미래에 대한 기대 및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닐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결혼을 늦추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득을 보전하는 등의 재정적인 정책수단보다는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변화되는 가치관과 기존의 사회제도가 충돌을 하는 부분에서의 제도개선은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담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접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IV.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 분석

1. 서론

본장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수단인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출산장려금 사업은 출산율 저하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지급수준이 지자체별로 차별화되어 있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산장려금과 출산에 대한 결정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가임여성의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아직 출산장려금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출산 결과 자체보다 출산 의향(계획)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본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절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제2절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인 여성가족패널자료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출산장려금 사업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분석하여 재정 정책수단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 분석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2.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한 기존 논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을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다. UCLA 공공정책 대학원 부원장인 노년학자 토레스 길 교수는 강연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도입했지만 출산율이 역전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2010.10). 시·군의 출산장려금도 2006년 37억원, 2007년 69.6억원, 2008년 95.2억원, 지난해 97.7억원, 2010년 8월 말까지 37.9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체적인 사업 재검토 및 정책 방향의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⁵³⁾.

서울의 경우에도 일부 자치구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장려금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지역 신생아 9만 2,641명 가운데 출산장려금이 지원된 영아는 3만 2,511명으로 전체의 33.7%에 불과했다. 서울 인구 대비 출산율(0.92%)에 비해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구로구(1.08%)의 경우 2008년 9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이 부족해 1건의 출산장려금도 지급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홍보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실적 자체도 미미하지만 장려금 액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각 자치구 출산장려금 집행 액수를 보면 총 76억 2,416만 2,000원으로 신생아 1명당 약 23만원씩 지원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구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마포구(1.18%)는 출산장려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2007년부터 아예 제도를 없애버렸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와 기준 금액 자체가 비현실적인 측면도 지적되었다. 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 20만원을 지원하는 강서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비율이 3.3%에 그쳤다⁵⁴⁾. 만혼과 비혼현상이 두

53) 연합뉴스, 2010.10.15

54) 세계일보, 2009.07.15

드러지고 개인의 경력 추구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서울시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자녀가구를 '포상'하는 방식의 저출산대책으로는 출산을 제고의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시적이고 자치구마다 다른 수준으로 실시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제도 역시 출산에 대한 상징적인 '포상' 이외에 자녀양육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선자, 2009)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둘째아의 출산 지원금을 늘리는 게 현실적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치구의 경우 자녀 2명을 낳을 경우 10만~20만원에 불과한 장려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축하금 및 양육비)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 7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지급금액은 충북(82억원), 경북(65억원), 전남(57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 수로는 경기(21,245명), 서울(18,294명), 전남(16,315명) 순이었다.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148배의 차이가 나고 지급 요건에 일관성도 없어 지역 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지급요건에 있어서 거주기간이 0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데다, 출산장려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자 수의 일관성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⁵⁵⁾.

55) 정미경 의원 보도자료, 2009.9.7

3. 분석 자료 설명

가. 여성가족패널자료 개요 설명⁵⁶⁾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여성가족패널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가족생활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가족과 관련한 가치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과정과 이벤트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를 횡단면뿐만 아니라 종단면적으로도 추적할 수 있는 DB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은 표집단계에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26만개의 조사구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26,000개의 일반 조사구(시설단위 조사구 및 섬 지역 조사구 제외)를 표본틀로 사용하여 다단계 층화확률추출을 하였다. 1단계에서는 도시화의 정도,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 주거형태별 가구비율을 층화기준으로 하여 일반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다음 2단계에서는 가구분포와 가구주연령·성별에 따른 적격가구와 적격가구원을 추출했다. 이렇게 추출된 가구에서 총 9,048가구가 조사되었고, 가구 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10,013명을 매년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여성 집단의 생활세계를 분석하기 위해 여성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영역을 크게 일, 가족, 일상생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조사의 주요 설문항목의 구조는 여성과 일, 여성과 가족, 여성과 일상 및 여가의 대분류 아래 여러 하위 설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여성가족패널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서 해당되는 모든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결혼과 출산, 취업에 대한 생애주기별 회고적

56) 본절은 박수미 외 (2008) 『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 1차 기초분석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조사를 포함하였다. 2차 조사 이후로는 신규 가구원이면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회고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와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자료와의 차이점은 첫 번째,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하기 쉬운 출산 의향 및 희망자녀 수를 조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출산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희망 출산율은 변동 가능한 미래의 출산에 대해 잠재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망 출산율의 변화, 희망 출산율과 실제 출산율 간 차이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가족내적·가치관적 요인들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가구 내 19~64세의 넓은 연령대를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특정 대상들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세대의 다양한 변화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세대간 비교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매년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하는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가구 내적인 변화까지 포착해낼 수 있어 기존의 출산력 조사 자료에서 간과한 가구경제구조의 변화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8년부터 여성가족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을 발표하는 자리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두 번에 걸친 학술대회에서 이미 기존 자료의 단점을 보완한 여성가족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⁵⁷⁾. 앞으로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풍부해지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57) 여성가족패널자료를 활용한 출산관련 연구로서 류기철·박영화(2009)의 연구가 있다. 또한 이명진(2009)은 동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출산 계획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나. 출산장려금 효과성 분석에 사용된 자료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2차년도 자료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1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 시점 이후로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기초자치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출산장려금 사업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다⁵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가 응답 시점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고 아직 시행 전이더라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⁵⁹⁾.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패널자료에서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시점에 앞으로의 출산 의향 및 희망자녀 수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된 종속변수는 2차년도 조사시점에서 파악된 결혼한 여성의 출산 의향 변수와 희망자녀 수 변수이다.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타의 다른 패널 조사와는 달리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에서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가구 총소득을 조사한다. 또한 가구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

58) 2차년도 조사에서는 원가구 9,068가구 중에서 총 7,704가구가 조사되어 85.0%의 패널유지율을 보였다. 분가가구 100가구 중 46가구가 조사되었고, 원가구와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된 가구는 7,750가구로 총 조사 대상 9,168 가구 중에 84.5%가 조사되었다.

59)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 소속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현황」에 따르면, 2008년 10월 기준으로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41개, 제도 시행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91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개의 패널 응답자의 응답시점과 응답자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도입 시기를 일일이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언급하면 이와 같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실증분석에 적용하는 가구 소득에 대한 정보는 동 기간의 가구 총소득을 의미하고 가구 순자산(자산-부채) 금액은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가구 소비 항목에 대한 설문도 가구 소득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월평균 금액을 조사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혹은 사교육 종류 및 시간과 비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노동패널 조사와는 달리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 주된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 및 아이 돌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가구 소비지출 항목과는 달리 자녀 보육·교육에 대한 지출 정보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지출 중에서 사교육비만을 따로 분리해서 추정을 위해 적용하였다. 사교육비는 학원(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과 피아노,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과 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의 포함)을 위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변수는 조사 시점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및 종사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이밖에 기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수와 자녀들의 성별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 출산장려금 자료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인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II장에서 설명한 자료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 본장의 실증분석에서는 2009년의 자료를 이용한다. 본장에서 이용하는 출산장려금 변수는 <표 IV-1>과 <IV-2>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는데, 이는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출산장려금 현황자료(2009.6)다. <표 IV-1>에서는 광역시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별 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 현황을, <표 IV-2>에

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각 도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 현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황을 이용하여 두 개의 변수를 구성하였는데 먼저 여성가족패널자료에서부터 결혼한 가임여성의 현재까지의 자녀 수를 알 수 있으므로 개별 패널 여성에 해당되는 출산장려금의 금액을 구하였다. 다음에는 앞으로의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를 구성하였다⁶⁰⁾.

〈표 IV-1〉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양육지원금 현황(광역시)

(단위: 만원)

	자녀 수					자녀 수				
	1	2	3	4	5	1	2	3	4	5
서울						대구				
종로구		50	100			중구		50	370	
중구		20	100	300	500	동구		20	270	
용산구	5	10	50	100		서구		20	270	
성동구		20	50	100		남구		20	270	
광진구		10	30			북구		20	270	
동대문구		30	50			수성구		20	270	
중랑구		50	100	200		달서구		20	270	
성북구		20	20			달성군		20	270	
강북구	20	30	50							
도봉구	20	30	50	100		인천				
노원구		5	20			중구			100	
은평구		20	30	50	100	동구			100	
서대문구	5	20	20			남구			50	
마포구						연수구			100	

60) 각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출생아의 출생 순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준 가중평균을 구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변수 구성과정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표 IV-1>의 계속

	자녀 수					자녀 수					
	1	2	3	4	5		1	2	3	4	5
양천구		10	30	50	100	서구			100		
강서구			20	30		남동구			100		
구로구		20	50	150		부평구			100		
금천구		20	50	100		계양구					
영등포구			50	70		강화군	10	10	50		
동작구		10	50	100		옹진군	50	100	300	500	1000
관악구		10	50	100		광주					
서초구	10	50	100	100		북구			370		
강남구		100	500	1000	2000	동구	10	20	420		
송파구		30	50	100		서구			375		
강동구		10	20	30		남구			370		
부산						광산구			370		
중구		80	420			대전					
동구		20	140			동구			10		
동래구		20	150			중구			10		
연제구		20	140			서구			10		
수영구		40	120	170		유성구			10		
사상구		20	120			대덕구			10		
서구		20	120			울산					
영도구		20	120			중구		10	70		
부산진구		20	120			동구		10	60		
남구		20	120			남구		10	70		
북구		20	120			북구		10	70		
해운대구		20	120			울주군		10	60		
사하구		20	120								
금정구		20	120								
강서구		20	120								
기장군		20	270								

주: 셋째까지는 전수 표시. 자녀 수가 지원 기준보다 더 많을 경우 최고 지원금 액과 동일하게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험금은 별도.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동아일보, 2009. 6. 13

〈표 IV-2〉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양육지원금 현황(도별)

(단위: 만원)

	자녀 수						자녀 수						자녀 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경기도						충북계속						전남계속									
수원시	50					옥천군	10	140	230				함평군	1100							
성남시	100					증평군			120	180				영광군	40	40	120				
고양시	20					영동군	30	120	180				장성군	50 100							
부천시	30					진천군	30	120	180				완도군	100	100	1000	1100	1200			
용인시	100	200	300			괴산군	50	200	300	400	500				진도군	70	70	70			
안산시	20					음성군	20	120	180				신안군	30	30	30					
안양시	50					단양군	20	120	180				경상북도								
남양주시	30	100				충청남도						포항시	100								
의정부시	30					천안시			50				경주시	120	240	1200					
평택시	30	50				공주시			50	80				김천시	30	150	300				
시흥시	10	20				보령시			50	80				안동시	240	288	480	1200	2400		
화성시	50	100				아산시			30	60				구미시							
광명시			50	100		서산시	30	30	100				영주시	50	50	410					
파주시	30					논산시	30	30	100				영천시	100	120	510					
군포시	50	100				계룡시			50	50				상주시	120	180	240				
광주시	250.8					금산군	30	50	100				문경시	124	248	372	572				
김포시	100					연기군	50	50	50				경산시	30	30	150					
이천시			100	200	300	부여군			50	100				군위군	100	100	220				
구리시	20	50				서천군	30	30	80				의성군	100	100	100	220	340			
양주시	20	120				청양군	30	50	100				청송군	50	100	150					
안성시	50					예산군	30	50	300				영양군	108	180	600					
포천시	20	40				홍성군	30	50	50				영덕군	60	60	180					
오산시	50	100				태안군	50	50	100				청도군	30	200	300					
하남시	50	100				당진군	20	30	100	200				고령군	30	30	120				
의왕시			50	100		전라북도						성주군	10	370	1210						
여주군	100					전주시			30				칠곡군	50	50						
동두천시	15	30				군산시			30				예천군	240	480						

IV.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 분석 115

〈표 IV-2〉의 계속

	자녀 수						자녀 수						자녀 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양평군	50	100				익산시	20	40	100	500	봉화군	470	650	1250			
과천시	50	100				정읍시	30	80			울진군	600	600				
가평군			100			남원시	100	200	400	1000	울릉군	50	50	170			
연천군				150		김제시	30	50	100		경상남도						
강원도						완주군	30	30	120		창원시	30	40				
춘천시						진안군	120	120	360		마산시	200					
원주시	10	30	50			무주군	50	120	360	480	600	진주시	20				
강릉시	30	30				장수군	50	50	200			진해시	30	80			
동해시	45	85				임실군	50	100	200	300		통영시	300				
태백시	20	20	30			순창군	50	50	510			사천시	20				
속초시	120	360				고창군	50	100				김해시	20				
삼척시	50	100				부안군	300					밀양시	20	100			
홍천군						전라남도						거제시	20				
횡성군	20	20	20			목포시	10	50	100	150	200	양산시	20	50			
영월군	30	50	100	300		여수시	300					의령군	50	100	280		
평창군						순천시	150					함안군	50	500			
정선군			100			나주시	200					창녕군	50	500			
철원군	30	50				광양시	70	70	70			고성군	20				
화천군			150			담양군	30	30	30			남해군	30	100	300		
양구군			50			곡성군	30	150				하동군	100	300			
인제군	50	50	100			구례군	30	50	300			산청군	10	30	80		
고성군	20	50	100			고흥군	30	150	510			함양군	30	50	50		
양양군	1	120	360			보성군	240	360	600			거창군	50	20			
충청북도						화순군	460	720				합천군	30	50	500		
청주시	30	170	280			장흥군	150	400				제주도					
충주시	30	120	180			강진군	120	240	720			제주시	10	50	100		
제천시	30	120	180			해남군	50	100	200			서귀포시	10	50	100		
청원군	30	120	180			영암군	50	100	200								
보은군	30	120	180			무안군	100										

주: 셋째까지는 전수 표시. 자녀 수가 지원 기준보다 더 많을 경우 최고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험금은 별도.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동아일보, 2009. 6. 1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6개⁶¹⁾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의 <표 IV-1>과 <표 IV-2>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을 시작하는 출생아의 출생 순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표 IV-3>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출생 순위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78개, 둘째 자녀부터는 93개, 셋째 자녀부터는 56개, 넷째 자녀부터는 1개로 나타나서 둘째 자녀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 출생아의 출생 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규정 현황

(단위: 개, %)

	지원 없음	첫째아부터 지원	둘째아부터 지원	셋째아부터 지원	넷째아부터 지원
지방자치단체	6	78	91	56	1
비율	2.6	33.3	39.2	24.1	0.4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동아일보, 2009. 6. 13

출산장려금을 자녀의 출생순위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IV-4>와 같은데, 첫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표 IV-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78개로 평균 53만원을 지급하고 최소 금액은 5만원, 최대 금액은 4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69개로 평균 69만원을 지급하고 최소 금액 5만원, 최대 금액 6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셋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25개로 평균 172만원, 최소 금액 10만원, 최대 금액 1,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넷째 자녀에 대해서는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196만원, 최소 금

61) 서울 마포구, 인천 계양구, 강원 춘천시, 강원 홍천군, 강원 평창, 경북 구미

액 10만원, 최대 금액 1,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26개로 평균 217만원을 지급하고 최소금액은 10만원, 최대 금액은 2,4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편차가 크게 나고 있다. <표 IV-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녀의 출생 순위가 올라갈수록 출산장려금의 평균금액 역시 증가하였다. 이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저출산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설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4> 출생 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단위: 개, 만원)

출생순위	지방자치단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 금액	최대 금액
1	78	51.7	64.4	5	470
2	169	68.5	87.3	5	650
3	225	172.1	192.6	10	1,250
4	226	195.8	224.7	10	1,250
5	226	216.5	293.6	10	2,400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동아일보, 2009. 6. 13

각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출생아의 출생 순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준 가중평균을 구해보았다. 가중치는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첫째 0.5, 둘째 0.4, 셋째 0.75, 넷째 0.15, 다섯째 0.01의 값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출생아의 출산 순위별 출생구성비⁶²⁾와 연구자가 노동패널자료를 가지고 구축한 출산력자료에서 구한 2007년 출산순위별 출생구성비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다음의 <표 IV-5>는 출생 순위를 고려한 출산장려금 가중평균의

62) 통계청 보도자료(2010. 2. 24)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서 인용.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5〉 출생 순위를 고려한 출산장려금 기증평균 기초 통계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 금액	최대 금액
46.1	65.2	0	620

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결과임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동아일보, 2009. 6. 13

4. 실증분석

실증분석을 위해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에 대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최고령 여성은 4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들 가운데 47세 이상의 여성은 가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본절에서는 출산 계획의 차이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리하고 먼저 기초 통계를 살펴본 후 이항 종속 변수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빗(probit) 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성가족패널에서는 남성 배우자에게는 자녀 계획을 설문하지 않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에서 응답한 여성의 자녀 계획이 해당 가구의 자녀 계획인 것으로 간주하고 가구단위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⁶³⁾.

63) 가구의 출산은 남편과 아내의 선호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배우자 간에 새로운 자녀 출산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면 부부간의 bargaining process가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한다.

가.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기초통계를 이용한 분석

46세 미만으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한정하여 앞으로의 출산 계획 유무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표 IV-6>에서 기초통계를 비교하여 보았다. 총 4,008명의 가구 중에 9.7%인 387가구에서 앞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⁶⁴⁾. 그러나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자녀 계획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6.59%에 불과했다. 모(母)의 연령이 높고 교육 연수가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추가 자녀 계획이 없는 가구의 경우 평균자녀 수는 2명으로 나타났으며 딸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아들이 없는 가구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아들 선호사상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출산 계획 유무에 따라 두 그룹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출산 계획 없는 가구에서 사교육 이용률이 두 배 높았으며 자녀 1인당 사교육비의 지출 금액의 경우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가구 소득과 가구 순자산 및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출산 계획이 없는 가구의 가구주와 자녀의 연령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점 현재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에 대하여 자녀가 없는 가구를 포함하였을 때 추가 자녀 출산 계획과는 통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같다는 가설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았다⁶⁵⁾. 이는 여성의

64) 해당 여성 중에 앞으로의 자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14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65) 현재 자녀가 없는 가구를 모두 포함하였을 때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3.4%,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의 해당비율은 38.2%로 나타났다. 두 그룹 간에 해당 비율이 같다는 귀무가설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출산을 경험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결과여서 흥미롭게 보였다. 왜냐하면 두 가지 관찰된 사실을 해석하여 보면 최소한 일을 하는 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이미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로 한정하여 동일한 검정(test)을 시도한 결과를 아래의 <표 IV-6>에 삽입하였다. <표 IV-6>에 따르면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에서는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나서 기초통계만으로는 출산 계획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의 관계를 예측할 수 없었다.

<표 IV-6>에 포함된 “출산장려금 1”은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게 될 경우 가구에서 수령하게 되는 출산장려금을 의미한다. 현재의 자녀 수 정보를 가지로 쌍생아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사업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출산 계획 없는 가구에서 이 금액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 자녀 수가 두 명 수준이어서 셋째 자녀 출산 지원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절에서 살펴본 대로 대부분의 출산장려금은 출생 순위가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 바로 아래 “출산장려금 2”는 출생순위에 따른 출생 구성비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수준을 평가한 변수이다. 여기에서는 두 그룹에 해당되는 출산장려금의 수준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여성가족패널에서 앞으로 더 이상의 자녀계획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상자녀 수(ideal number of children)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였다. 따라서 현재 자녀 수와 이상자녀 수가 동일하도록 구성하였다.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가구의 이상자녀 수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약 0.13명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5%의 유의 수준에서 기각되지 않았다.(P-value=0.0668)

〈표 IV-6〉 출산 계획 여부에 따른 기초통계

(단위: 만원)

	출산 계획 있는 가구	출산 계획 없는 가구
모(母)의 연령(세)	31.32 (0.21)	37.75 (0.08)
모(母)의 교육 연수(년)	15.61 (0.14)	14.52 (0.05)
부(父)의 연령(세)	33.94 (0.24)	40.77 (0.09)
부(父)의 교육 연수(년)	16.17 (0.14)	15.26 (0.05)
자녀 수(명)	0.79 (0.03)	2.00 (0.01)
자녀 평균 연령(세)	3.78 (0.20)	9.08 (0.08)
아들이 없는 가구 비율(%)	46.8 (3.16)	21.4 (0.69)
딸이 없는 가구 비율(%)	44.4 (3.14)	29.3 (0.77)
자녀 사교육 이용률**(%)	30.0 (3.31)	60.0 (0.73)
자녀 연간 사교육비**	90.60 (13.28)	392.1 (7.35)
자녀 1인당 사교육비**	74.01 (11.30)	207.4 (3.87)
가구 소득	3,490 (90.84)	3,983 (33.88)
가구 순자산(자산-부채)	10,689 (659.8)	15,488 (344.9)
월평균 소비지출	169.9 (3.34)	232.9 (1.61)
모(母)의 경제활동 참여율 ¹⁾ (%)	26.9 (2.82)	38.1 (0.82)
출산장려금 1 ²⁾	38.21 (4.14)	114.2 (2.48)
출산장려금 2 ³⁾	29.28 (2.26)	27.36 (0.69)
이상자녀 수	1.87 (0.03)	2.00 (0.01)
표본 수(N)	387	3,621

주: 1. ()안은 표준오차

1)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2) 자녀를 출생하면 받게 될 출산장려금

3) 출생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나. 출산 계획에 관한 프로빗(Probit) 모형 분석

앞으로의 자녀 계획에 대하여 응답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결과가 <표 IV-7>에 요약되어 있다. 모형(1)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가구에서 받게 될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살펴보고, 모형(2)에서는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수준의 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출산장려금 변수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 모형(1)과 모형(2) 모두 출산 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계획에 미치는 확률의 크기를 비교하면 다른 변수들의 평균 수준에서 평가했을 때 모형(1)에서는 지원 받는 출산장려금이 100만원 증가할 때 출산계획 확률을 2.12%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모형(2)에서는 출산장려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100만원 인상되면 출산계획 확률을 6%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가임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의 자녀 출산을 계획할 때 현재 자신에게 해당되는 출산장려금보다 전반적인 출산장려금의 수준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효과의 크기는 의미 있는 변화를 줄 만큼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가임여성의 연령은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 연수는 모형(2)에서만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출산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데, 이는 IV장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예상대로 현재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새로운 자녀에 대한 계획이 없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이 없는 가구에서는 앞으로 자녀를 가질 확률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딸이 없는 가구에서는 자녀 계획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게 나타나서 한국의 전통적인 아들 선호가 가구의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IV-7〉 출산 계획에 관한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출산장려금 1+(백만원)	0.0828** (0.0376)	
출산장려금 2++(백만원)		0.231*** (0.0881)
모(母)의 연령	-0.126*** (0.0103)	-0.126*** (0.0103)
모(母)의 교육 연수	0.0282 (0.0176)	0.0297* (0.0176)
모(母)의 경제활동 참여 더미 변수	0.00531 (0.102)	0.00501 (0.102)
자녀 수	-1.306*** (0.116)	-1.230*** (0.109)
아들이 없는 가구 더미 변수	0.251* (0.137)	0.238* (0.137)
딸이 없는 가구 더미 변수	0.171 (0.132)	0.160 (0.131)
연간 가구 총소득(백만원)	-0.00117 (0.0031)	-0.0012 (0.0031)
가구 순자산(천만원)	-0.00073 (0.0037)	-0.00077 (0.0037)
가구주 임금근로자 더미 변수	0.034 (0.0976)	0.0359 (0.0977)
상수항	4.378*** (0.516)	4.257*** (0.518)
표본 수(N)	3,555	3,558
Log likelihood	-521.367	-520.362

주: 1. *** p<0.01, ** p<0.05, * p<0.1

2. ()안은 임의이 이분산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white type의 robust standard error임.

3. +출산장려금 1: 출산하면 받는 지원금, ++출산장려금 2: 거주지 지자체 출산장려금 수준.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표 IV-7〉에 나타난 추정 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가구 소득과 가구 순자산은 자녀 계획 단계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산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을 외생적으로 증가시키는 출산장려금은 출산 계획 단계에서 한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혼여성 중에서 현재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이 2.1%에 불과하였다. 이와 반면 앞으로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현재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은 35.4%에 이르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라고 가정하고 자녀 수가 한 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빗 분석을 수행하였다⁶⁶⁾. 이는 또한 출산장려금 정책이 다자녀 출산 유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에 비추어 둘째 이상의 자녀 계획에 출산장려금이 미치는 효과를 분리하여 보기 위함이다.

〈표 IV-8〉에 포함된 “출산장려금 1”은 두 번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때 가구에서 수령하게 되는 출산장려금을 의미한다. “출산장려금 2” 또한 둘째 자녀 이상에게 수여되는 출산장려금의 수준을 평가하는 변수이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출산장려금이 출산 계획에 미치는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효과의 크기를 구해보면 둘째 자녀 이상의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받게 되는 출산장려금이 100만원 증가함에 따라 출산을 계획할 확률이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수준이 100만원 증가하면 그 확률이 0.65%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되어서 첫째 자녀 출산 계획을 포함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른 변수들의 추정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은 〈표 IV-7〉의 내용과 별

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남성중에 7.1%, 미혼 여성중에 9.0%는 결혼 후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결혼 후 자녀를 갖지 않는 가구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임여성의 연령이 추가 자녀의 출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활동 참여의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 소득 및 순자산의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통적인 아들 선호사상의 영향은 추가 자녀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녀 계획에 현재 자녀가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자녀 수가 많고 자녀의 평균 연령이 올라갈수록 미래에 출산을 계획할 확률이 줄어들어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자녀의 평균 연령을 통제한 후에는 비록 음의 추정계수를 추정하였으나 더 이상 출산 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IV-6>에서 관찰된 두 집단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행태의 차이는 자녀의 연령에 의한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III장에서 발견된 결과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추가 자녀의 계획 단계에서는 현재 자녀에게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출산의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출산 계획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녀 계획이 있더라도 당장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녀가 성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금액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막상 출산을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표 IV-8> 출산 계획에 관한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자녀 수 ≥ 1)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출산장려금 1+(백만원)	0.0931** (0.0375)	
출산장려금 2++(백만원)		0.327*** (0.0969)

〈표 IV-8〉의 계속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母)의 연령	-0.0773*** (0.0150)	-0.0770*** (0.0149)
모(母)의 교육 연수	0.0015 (0.0189)	0.0022 (0.0190)
모(母)의 경제활동 참여 더미 변수	0.052 (0.114)	0.0511 (0.115)
자녀 수	-1.131*** (0.124)	-1.049*** (0.116)
자녀 평균 연령	-0.0837*** (0.0227)	-0.0873*** (0.0231)
자녀 1인당 연간 사교육비(백만원)	-0.769 (3.536)	-0.256 (3.572)
아들이 없는 가구 더미 변수	0.262* (0.140)	0.248* (0.140)
딸이 없는 가구 더미 변수	0.211 (0.132)	0.201 (0.132)
연간 가구 총소득(백만원)	0.0356 (0.338)	0.0241 (0.346)
가구 순자산(천만원)	0.0953 (0.391)	0.0827 (0.391)
가구주 임금근로자 더미 변수	-0.0408 0.103	-0.0336 0.103
상수항	3.206*** (0.610)	3.065*** (0.614)
표본 수(N)	3,315	3,318
Log likelihood	-428.286	-426.202

주: 1. *** p<0.01, ** p<0.05, * p<0.1

2. ()안은 임의이 이분산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white type의 robust standard error임.

3. +출산장려금 1: 출산하면 받는 지원금, ++출산장려금 2: 거주지 지자체 출산장려금 수준.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이번에는 과연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몇 번째 자녀에 대한 출산 계획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녀 수를 고정시키고 프로빗 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603개의 가구에서 앞으로 자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수가 불과 4가구에 그쳐서 여기서는 자녀 수가 1명과 2명인 경우만을 따로 추정하였다. 아래의 <표 IV-9>에서 현재 출산을 하면 받게 될 출산장려금의 효과는 현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효과의 크기를 다른 변수들의 표본 평균 수준에서 살펴보면 출산을 계획할 확률을 6.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장려금의 액수가 거의 네 배 이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추정계수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에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눈에 띄게 감소하여서 현재의 출산장려금 사업이 2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세 번째 자녀 출산 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반면 전반적인 출산장려금 수준은 현재 자녀 수와 상관없이 앞으로의 자녀계획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가입여성 전반에 걸쳐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IV-9>에서 다른 설명변수들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수가 2명인 가구에서 아들 없는 가구의 영향이 주목할 만하다. 즉 딸만 둘 있는 가구에서 셋째 자녀의 출산 계획이 높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아직도 아들 선호사상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설계된 출산장려금 사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본절에서 프로빗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출산장려금이 가구의 추가 자녀에 대한 계획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출산장려금 사업은 전반적으로 가구의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1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둘째 자녀에 대한 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출산 순위에 따른 출산 계획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둘째아 출산계획 (자녀 수=1)		셋째아 출산계획 (자녀 수=2)	
출산장려금 1+(백만원)	0.235*		0.0792	
	(0.1330)		(0.0485)	
출산장려금 2++(백만원)		0.341**		0.270*
		(0.166)		(0.156)
모(母)의 연령	-0.0735***	-0.0738***	-0.0584***	-0.0591***
	(0.0192)	(0.0192)	(0.0225)	(0.0224)
모(母)의 교육 연수	0.0265	0.0244	-0.0151	-0.0135
	(0.0263)	(0.0262)	(0.0273)	(0.0274)
모(母)의 경제활동 참여 더미 변수	-0.00936	-0.0092	0.037	0.0591
	(0.160)	(0.161)	(0.175)	(0.176)
자녀 평균 연령	-0.0856***	-0.0868***	-0.0944**	-0.0988**
	(0.0266)	(0.0267)	(0.0451)	(0.0465)
자녀 1인당 연간 사교육비(백만원)	-0.0112	-0.00989	-0.0577	-0.0502
	(0.043)	(0.043)	(0.077)	(0.079)
아들이 없는 가구 더미 변수	-0.0541	-0.0518	0.384**	0.370**
	(0.134)	(0.134)	(0.1650)	(0.1640)
딸이 없는 가구 더미 변수	0.0026	0.00261	0.000818	0.000458
	(0.0052)	(0.0052)	(0.0046)	(0.0047)
연간 가구 총소득(백만원)	0.0029	0.00316	-0.00232	-0.00273
	(0.0057)	(0.0057)	(0.0060)	(0.0060)
가구 순자산(천만원)	-0.0899	-0.0827	0.0651	0.0618
	(0.1470)	(0.1480)	(0.1570)	(0.1570)
가구주 임금근로자 더미 변수			0.117	0.11
			(0.171)	(0.171)
상수항	1.776**	1.784**	0.557	0.619
	(0.766)	(0.766)	(0.785)	(0.791)
표본 수(N)	515	515	2,235	2,235
Log pseudolikelihood	-234.238	-233.700	-173.095	-172.915

주: 1. *** p<0.01, ** p<0.05, * p<0.1

2. ()안은 임의이 이분산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white type의 robust standard error임.

3. +출산장려금 1: 출산하면 받는 지원금, ++출산장려금 2: 거주지 지자체 출산장려금 수준.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마지막으로 여성가족패널에서 앞으로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상자녀 수를 조사한 것을 이용하여 출산장려금이 앞으로의 자녀계획에 영향을 미쳐 이상자녀 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였는지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여 보았다. <표 IV-10>에 의하면 출산하면 받게 되는 출산지원금이 이상자녀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출산장려금 수준의 영향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양(+)의 추정계수를 추정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의 결과는 출산장려금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IV-10> 이상자녀 수(ideal number of children) OLS 추정 결과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출산장려금 1+(백만원)	0.189*** (0.0514)	
출산장려금 2++(백만원)		0.147 (0.113)
모(母)의 연령	-0.0325*** (0.0082)	-0.0302*** (0.0088)
모(母)의 교육 연수	-0.0243* (0.0132)	-0.0283** (0.0136)
모(母)의 경제활동 참여 더미 변수	-0.00464 (0.082)	-0.00265 (0.088)
연간 가구 총소득(백만원)	-0.00018 (0.0022)	-0.00015 (0.0024)
가구 순자산(천만원)	0.00255 (0.003)	0.00246 (0.003)
상수항	3.179*** (0.3600)	3.201*** (0.3770)
표본 수(N)	360	360
R ²	0.105	0.057

주: 1. *** p<0.01, ** p<0.05, * p<0.1

2. ()안은 임의이 이분산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white type의 robust standard error임.

3. +출산장려금 1: 출산하면 받는 지원금, ++출산장려금 2: 거주지 지자체 출산장려금 수준.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장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 계획(의향)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의 출산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는데, 결과로 나타난 효과가 출산장려금과는 상관없이 출산의 선호에 대한 해당 지역의 고유의 효과(local fixed effect)를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거주 지역의 소득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높아져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소득효과가 출산장려금 변수 효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포함된 모든 설명변수를 외생적이라고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다시 언급하면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내생성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과 추가 자녀 출산에 대한 결정은 서로 영향을 주며 동시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생성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출산장려금의 추정결과에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구조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포함된 구조모수(structural parameter)를 추정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내생성이 의심되는 변수들의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이용한 추정 방법의 적용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⁶⁷⁾.

넷째,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앞으로의 자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실제로 출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아직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만큼 사업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조사에서 출산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산모들의 경우 그 효과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패널의 조사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의 실제 출산 결과를 추적하여 봄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가구 고정효과(household fixed effect)를 고려한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패널이 충분히 축적된 뒤에야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장의 분석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가구 소득과 가구 순자산은 자녀 계획 단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왜 소득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추가적인 소득지원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한 몇 가지 가능성으로 인해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과다하게 추정된 것이 아니라면, 출산장려금이 단순한 소득지원 외의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67)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만 영향을 주고 출산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구변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의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단지 소득지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함에 있어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받는 금전적인 혜택 외에도 향후 추가적으로 여건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등이 반영되는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는 기존에 출산장려금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그러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었으나, 정책 제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재분배 효과 분석 및 정책논의

1. 서론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은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의 본 취지인 출산을 제고를 통한 영향은 물론이고, 출산을 제고라는 경로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기로 한다. 때로 그러한 파급효과가 출산을 제고라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경로로 작용한다. 저출산 대응정책이 초래하는 다양한 영향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재분배 효과다. 저출산 대응정책은 소득계층간은 물론이고, 세대간, 남녀간, 혹은 지역간 등 다양한 집단간에 재분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그것이 출산을 제고를 위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재분배 효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며, 이러한 측면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였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의 연구도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아직도 확대 과정에 있다.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그로 인한 재분배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수당 등 새로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재분배 효과가 매우 커질 수 있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책의 영향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거나,

정책의 형성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저출산 대책의 재분배 효과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정책논의와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저출산 대책 및 그와 관련된 재분배 효과도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개의 주요 측면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재분배 효과 중 주로 소득계층간 재분배,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세대간 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다른 측면에서의 재분배 효과 및 형평성 논의, 예를 들어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계층간 재분배 측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등에 국한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도인 출산장려금, 보육지원제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이외에도 임신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⁶⁸⁾, 출산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등 다양한 지원이 있으나⁶⁹⁾, 이러한 지원제도는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바, 본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한 주요 지원제도에 국한하여 논의한다. 보육관련 지출 중에는 시

68)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기초생보 수급자에게는 기존에 27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총 한도인 300만원의 60%인 180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지원횟수는 기존에 3회에서 2011년에는 4회로 확대하되, 4회차 지원금액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69) 2010년까지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 4월부터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설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고, 보육지원금의 직접적인 재분배 효과에 국한하여 논의한다.

어떠한 제도로 인한 실제 재분배 효과의 정도는 그러한 제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은 물론이고, 제도의 실제 활용도 및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어떤 제도가 매우 강한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지도록 고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도의 활용도가 낮거나 혹은 본질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러한 제도로 인한 실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의 실제 재분배 효과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크기 및 활용 정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 중에는 소득공제 등 조세제도를 통한 지원과 명시적인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이 있다. 명시적으로 지출을 수반하는 제도가 초래하는 재분배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지출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재분배 효과다. 또 다른 측면은 그러한 지출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분배 효과다.

지출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며, 조세의 경우와는 달리 용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된 바가 없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친숙한 개념은 조세의 부담이 소득에 비례하는 것보다 더 큰가 작은가를 기준으로 하는 용어다. 즉 세금의 부담이 소득에 비례한 것보다 더 큰 경우에는 누진적, 그 반대의 경우는 역진적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한다. 즉 지출의 혜택이 소득에 비례하는 것을 비례적, 그보다 작은 것은 역진적, 그보다 큰 것을 누진적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조세의 경우와는 달리 지출의 혜택은 누진적인 것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것이며, 역진적일수록 저소득층에 유리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

하여 재분배 효과의 중요성에 대해 추가 설명하고, 재분배 효과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조세정책과 지출정책 간의 선택에 대해 논의한다. 제5절에서는 제6절에서는 전체 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2. 재분배 효과의 중요성 및 개념

가. 재분배 효과를 통한 출산제고 효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재분배 효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경로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몇 개의 예를 통해 어떤 조건 하에서 재분배 효과가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도 동질적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추가적으로 불확실성 및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이 없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출산수당을 지급하고⁷⁰⁾ 그것을 조세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를 보자. 출산수당은 조세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소득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출산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없다. 조세의 징수 및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등도 감안한다면, 출산수당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출산율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위의 간단한 모형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및 저출산 수당의 형태를 어떻게 하든 분배적인 효과는 없다. 인

70) 여기서 출산수당은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대표적인 경우로 사용하는 의미이며, 반드시 현금지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두세 혹은 정률세 등이 모두 동일해진다. 반면 소득불평등이 존재하고, 추가적인 일정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어떤 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출산율을 높이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액 증가할 때마다 출산 확률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를 보자. 그리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일정한 출산수당을 제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재분배 효과는 재원을 어떤 형태의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재원을 인두세를 통해 조달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는 없다. 재원을 비례세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한다. 고소득층에서의 출산은 감소하고, 저소득층에서의 출산이 늘어난다. 위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액 증가할 때마다 출산확률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저소득층에서의 출산 증가는 고소득층에서의 출산 감소에 의해 상쇄되어, 사회 전체로서의 출산은 변하지 않는다.

재분배가 출산율 제고 효과를 초래하는 경로로 작용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소득불평등이 존재하며, 추가적인 소득이 출산율 제고하는 효과가 소득계층별로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이 일정 비율 증가할 때마다 출산확률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이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고소득층에서의 소득이 동일한 금액만큼 감소하는 재분배 효과를 가진 제도를 도입한다면,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출산은 증가하고, 고소득층에서의 출산은 감소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고소득층에서의 출산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저소득층에서의 출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서의 출산은 증가한다.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금액의 출산수당을 지급하되, 이를 인두세보다 조금이라도 더 누진적인 어떠한 세금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출산율이 상승한다. 물론 세

금의 형태가 누진적일수록 그러한 효과는 더욱 커진다.

소득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원을 적자재정에 의존한다면,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대간 재분배가 출산율 제고의 경로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별 생애소득의 격차는 없더라도, 생애 시점별 소득이 다르고,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이 출산에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에는, 출산수당이 그러한 유동성 제약 조건을 완화시켜 출산율을 제고하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생애소득으로 보지 않고, 한 시점에서 보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재분배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혹은 위험성이 존재하는 모형에서 저출산 수당이 개인이 처하는 위험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제고하는 경로로 작용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들은 복지정책의 논리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복지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 선택에서 재분배 효과 고려의 필요성

저출산 대응정책의 설계와 관련하여 재분배 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저출산 대응정책이 실제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앞에서의 분석에서는 소득이라는 요인이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매우 작거나, 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책의 주요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선의 방법은 정책이 거둘 수 있는 다른 부수적인 효과도 감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분배 효과가 중요할 수 있다.

둘째, 저출산 대응정책과 기타 가족정책과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때로 가족정책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런데 가족정책은 반드시 출산을 제고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가족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와 관련하여 재분배 효과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셋째,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수단을 택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도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저출산 대책으로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것인가 혹은 보육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경우에 정책으로 인한 재분배효과는 크게 다르고,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도 크게 다를 수 있다.

넷째, 저출산 대응정책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재분배 효과는 중요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제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 증세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적자를 통해서라도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하여서도 역시 재분배 효과는 가장 큰 고려사항이 된다.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세대간 재분배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다. 증세를 통해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는 물론이고 세대간 재분배 효과도 중요할 수 있다.

다. 세대간 재분배 효과의 개념

재정 정책수단의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는 비교적 친숙한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중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세대간 재분배 효과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친숙하지 않은 독자도 많다. 인구학

적인 변화의 영향 등을 고려하는 재정정책 연구 등, 특히 연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세대간 재분배 문제를 다루거나 언급한 연구들이 있다. 본 절에서는 몇 개의 예시를 통해 세대간 재분배 효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어떤 시점에서 정부가 자녀수당(혹은 공적보육)이라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그 제도가 이후 계속 유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재원 조달 측면에서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재원은 모든 세대에 부담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가상적인 조세로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자녀수당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부과형(pay as you go) 연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과 반대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일정 연령 이상의 세대에 귀속되는 순혜택을 보면, 그러한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부과형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전의 세대에서는 부담보다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들 세대에서는 순혜택이 (+)가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녀수당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전의 세대에서는 편익은 누리지 못하면서 부담만 하여, 순혜택은 (-)가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⁷¹⁾. 이 경우에는 자녀수당의 수혜자가 아닌 세대로부터 자녀수당의

71) 저출산 대응정책 혹은 가족지출 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논의함에 있어, 특정한 혜택을 어떤 세대의 혜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다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녀수당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어떤 자녀에 대해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자녀 본인(세대)에 대한 혜택으로 보아야 하는가,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세대)에 대한 혜택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수당에 대한 혜택은 자녀 본인이 아닌, 부모에 대한 혜택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물론 손자 손녀 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등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는 경우에는 세대간 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리고 일단 성년이 된 자녀 혹은 손자녀에 대한 이타심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일단 성년이 되어 더 이상 자녀수당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연령대는 부모와는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세대로 인식한다. 물론 단순화를 위하여 상속 등도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수혜자인 세대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새로 도입된 자녀수당 제도가 지속되면, 자녀수당의 수혜대상이 된 세대는 자신이 수혜를 본 만큼 사후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의 평생 동안의 순혜택은 0이 된다. 순혜택이 (-)가 되는 세대는 제도가 폐지 혹은 축소되는 세대다. 그러한 제도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순혜택이 (-)가 되는 세대 역시 먼 미래의 세대가 된다.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재원조달 방안이다. 재원조달 방안에서 어떠한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을 추가적인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가 혹은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충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는 단순화를 위하여 모든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반대로 추가적인 조세의 부담 없이 모든 재원을 적자재정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모든 재원을 조세의 의해 조달하는 경우와 달리, 일정 연령 이상의 세대에서는 순혜택이 0이 된다. 이후 세대의 순혜택은 재정적자를 통한 재원조달을 얼마 동안 유지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고 모든 재원을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지가 중요하다. 위에서는 단순화를 위하여 모든 세대에 부담이 균등하게 발생하는 새로운 조세를 가정하였다. 실제의 조세 중에서 이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조세는 소비세에 해당된다. 반면, 소득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정 연령 이하의 세대에서의 부담이 더 크다. 따라서 소득세를 재원조달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세대에서의 순혜택은 소비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보다 더 커지게 된다. 그리고 향후 세대로 더 많은 세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3. 현행 제도의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

본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이 가지는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가. 출산장려금

(1) 현황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출산수당 성격의 보조금은 없으며,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현금 및 현물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거주 주민이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일회적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통상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데, 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인다.

출산장려금을 처음으로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로, 2000년부터 농어촌 지역 산모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 내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성격이 컸다. 도입 이후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던 소규모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점차 전파되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어났다.

2010년 현재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중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지급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더 큰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지급되는 부분이다. 지급수준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의 절반 이하다. 평균 지급액은 크지 않으며,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자

V. 재분배 효과 분석 및 정책논의 143

치단체는 5개에 불과하다. 둘째아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초 자치단체는 전체의 약 3/4 정도에 해당된다. 평균 지급액은 약 34만원 정도 되며,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14개에 불과하다. 셋째아에 대해서는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10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평균지급액도 첫째아나 둘째아에 비해서는 훨씬 큰 약 90만원 정도 된다.

〈표 V-1〉 광역자치단체 출산장려금 현황('10년 6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광역명	예산액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서울시						
부산광역시	2,000,000		200	200		
대구시	2,312,800		200	500		
인천시						
광주시	855,000			500	쌍둥이: 500	세쌍둥이: 1,000
대전시	725,000			500		
울산시	500,000			500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619,800			500		
전라남도	1,350,000	300	300	300		
경상북도						
경상남도	600,000			200		
제주도						
합계	8,962,600					

(2) 재분배 효과

일단 재원조달 측면에서의 재분배효과는 제외하고, 지출 측면에서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언급한다. 출산장려금의 수준은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소득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득 대비 출산장려금의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표현을 기준으로 하면 출산장려금 제도는 역진적이라 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과 같이 자녀 수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소득계층별로 자녀 수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35~44세 유배우 여성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수준별 출생아 수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고소득층일수록 자녀가 많은 경향이 있다면, 자녀수당의 역진성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계층 100만원 이하인 구간을 제외하면, 소득구간별 출산자녀 수의 차이는 대략 6% 이내로 크지 않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으며⁷²⁾ 동시에 소득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도⁷³⁾ 감안되어야 한다⁷⁴⁾.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한 시점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이 큰 집단이 출산율이 높은 효과는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함에 있어, 소득이 클수록 자녀

72) 최근에는 35세 이후의 출산도 확대되고 있다. 더 중요한 효과는 35~44세 구간에서는 연령대별로 출산성향에 차이가 있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자녀 수가 더 많다.

73) 35~44세 구간은 연령대별 임금곡선에서 볼 때 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향하는 구간에 해당된다.

74) 물론 25~44세 구간에서는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할 것이다. 특히 25~44세 구간에서는 아직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비율이 높다는 점도 중요하다.

수가 많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⁷⁵⁾.

〈표 V-2〉 가구 소득 수준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단위: 명)

구분	25~44세					35~44세				
	03~09	2003	2006	2008	2009	03~09	2003	2006	2008	2009
100만원 미만	1.57	1.62	1.54	1.50	1.47	1.72	1.71	1.65	1.66	1.79
100~200만원	1.68	1.71	1.71	1.72	1.57	1.89	1.91	1.88	1.93	1.89
200~300만원	1.75	1.73	1.72	1.73	1.77	1.95	1.95	1.89	1.94	1.97
300~400만원	1.79	1.84	1.82	1.75	1.75	2.01	2.06	2.02	1.98	1.95
400~500만원	1.80	1.85	1.79	1.78	1.76	2.00	2.06	1.96	1.96	1.97
500만원 이상	1.84	1.89	1.80	1.77	1.79	2.02	2.05	1.95	1.97	2.00

자료 : 통계청-통계개발원(2010)

그러나 출산장려금의 경우에는 지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는 미미하다. 2010년에 출산장려금 현금지급에 대한 예산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이 89억 6,260만원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579억 487만원으로, 합계는 약 668억 6,747만원이다. 전체 출생아 수 평균으로는 1인당 지급액이 15만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1인당 지급액이 작은 것은 무엇보다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자녀

75) 물론 현재의 출산장려금 제도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자녀수당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특히 제도 설계에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금액을 누진적으로 크게 하는 제도를 구상하는 것이라면, 소득계층별 혜택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소득계층별로 평균자녀 수만을 검토하는 대신, 첫째-둘째-셋째 등의 비중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수당과는 달리 일회성 지출이라는 점이다. 둘째, 그나마 혜택이 큰 경우도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경우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지만, 셋째아 이상에 해당되는 출생아 수는 크지 않다.

나. 보육

(1) 현황

차등보육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있는데,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단가의 100%, 소득 하위 50% 초과~60% 이하 가구는 60%, 60% 초과~70% 이하 가구는 30%로 차등지원되고 있다. 정부지원단가는 0세에 대해서는 383천원, 1세에 대해서는 337천원, 2세에 대해서는 278천원, 3세에 대해서는 191천원, 4세에 대해서는 172천원이다.

2011년부터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20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전액지원 대상이었으나, 2011년에는 450만원(잠정)인 가구까지 전액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액지원 대상자는 2010년에 761천명에서 2011년에는 922천명으로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2010년에 1조 6천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9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두자녀이상보육료

소득하위 50% 초과~70%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 차등보육료에서 60%를 지원 받는 아동은 40%를 추가 지원하고, 차등보육료에서 30%를 지원받는 아동은 70%를 추가 지원한다.

〈표 V-3〉 보육지원

(단위: %)

소득분위	'10년(3월부터)		
	차등보육료	둘째 이상	총지원율
	지원율	추가지원율	
하위 50%~60%	60	40	100
하위 60%~70%	30	70	100

만5세아 보육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지원단가는 월 172천원이며,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에는 100%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및 다문화가정 보육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를 지원한다. 장애아무상보육료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만5세 이하 아동은 장애진단서 제출로도 지원 가능하다. 정부지원 기준단가는 월 383천원이다.

2011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394천 원이고, 대상자는 6천명, 관련 예산은 11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맞벌이가구보육료

2010년 3월부터 보육료(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단가의 100%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을 재선정하여 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를 지원한다.

맞벌이가구 소득산정방식은 2010년까지는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두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25% 감액)만 반영하여 나머지(높은) 소득과 합산하여, 맞벌이 소득 감액 전 지원단가와 감액 후 지원단가의 차액을 추가지원(최소 52천원~172천원)하는 방식이었다. 2011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2010년에 97억원에서 2011년에는 43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V-4〉 보육료 종류별 지원 금액

구분	지원 대상	지원율 (정부지원 단가의 %)	지원 금액 (천원)				
			0세	1세	2세	3세	4세
차등보육료 (만 0~4세)	소득하위 50%이하	100%	383	337	278	191	172
	소득하위 60%이하	60%	229.8	202.2	166.8	114.6	103.2
	소득하위 70%이하	30%	114.9	101.1	83.4	57.3	51.6
만5세아 보육료	소득하위 70%이하	100%	172				
두자녀 이상 보육료	소득하위 50%초과~ 60%이하	40%	153.2	134.8	111.2	76.4	68.8
	소득하위60%초과	70%	268.1	235.9	194.6	133.7	120.4
장애아무상 보육료	만12세이하 장애아동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100%	383				

자료: 보건복지부

〈표 V-5〉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등 보육료	소득하위 50% 이하	224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89만원 이하	316만원 이하
	소득하위 60% 이하	294만원 이하	339만원 이하	380만원 이하	415만원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두자녀이상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이 하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현재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3월 1일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확대적용에 따라 관련예산은 2010년에 657억원에서 2011년에는 898억원으로 확대된다.

(2) 재분배 효과

보육지원에 대해서도 일단 재원조달 측면에서의 재분배효과는 제외

하고, 먼저 지출 측면에서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우리나라 보육 지원은 기본적으로 절대액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도록 고안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차등보육료는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서 지원액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첫째아에 대한 차등보육료는 소득수준이 하위 50%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수준이 하위 50~60%인 경우에는 70%, 소득수준이 하위 60~70%인 경우에는 3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어, 혜택의 분포는 강한 역진성을 갖는다.

둘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보육료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이면 모두 전액을 지원받는다. 만5세아 보육료 역시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에는 100% 지원받는다. 첫째아의 경우보다 다소 덜하기는 하지만, 역시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다만 장애아무상보육료 및 다문화가정 보육지원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액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역진적인 정도는 출산장려금의 경우와 유사하다. 보육료 지원제도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역진성이 약하기는 하다.

보육지원의 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재원조달 측면 외에 실제 활용도 측면도 중요할 수 있다. 보육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의 아동을 두고 있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영아 중 보육시설 이용률은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30% 내외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득수준 100만~149만원에서는 가장 높아 42.7%를 차지하며, 소득수준 99만원 이하에서도 40.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2009년에 4인 가족 기준 소득 하위 50%가 258만원 정도 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149만원 이하는 물론 소득 하위 50% 이하이며, 100% 지원대상이 된다. 이처럼 저소득층에서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보육지원의 역진적인 성격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 V-1] 영아 소득수준별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률

구 분	~99	100~ 149	150~ 199	200~ 249	250~ 299	300~ 349	350~ 399	400~ 499	500~ 599	600~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40.3	42.7	32.6	30.0	27.1	29.6	27.4	28.5	31.9	27.7	41.3
유치원	-	-	0.6	0.4	1.4	0.9	0.9	0.7	-	-	0.6
선교원	-	-	-	-	-	0.4	-	-	-	-	0.1
반일제이상 학원	-	-	-	-	-	-	-	-	-	1.7	0.1
특기 및 보습 학원	-	-	-	-	-	-	-	0.7	1.1	1.7	0.2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	-	-	-	0.5	0.9	0.9	0.7	-	0.8	0.3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	1.3	3.9	8.8	9.7	11.1	11.9	10.4	14.9	10.1	8.0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11.1	9.5	3.6	6.9	7.7	10.6	10.3	11.1	19.1	24.4	9.7
비동거 조부모	5.6	3.8	10.0	9.9	11.6	12.4	17.1	29.2	24.5	29.2	13.9
동거 친인척	-	-	-	0.7	-	-	0.9	2.1	2.1	-	0.5
비동거 친인척	2.8	2.5	1.2	1.5	1.0	1.8	0.9	2.1	3.2	4.2	1.8
동거 비혈연	-	-	-	-	-	-	0.9	-	-	3.3	0.3
육아전문과제인력	-	1.3	-	-	0.5	0.4	-	-	1.1	4.2	0.6
기타 비혈연	-	-	0.9	0.4	1.0	1.3	-	2.8	4.3	9.2	1.6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1.4	1.3	2.1	2.2	1.4	0.9	2.6	5.6	3.2	5.0	2.4
예체능 방문	-	-	0.3	-	-	-	-	0.7	-	-	0.1
과외	-	-	-	-	-	-	-	-	-	-	-
학습지(방문포함)	2.7	4.5	6.3	6.2	9.2	7.1	4.3	10.4	6.5	6.7	6.7
기타(인터넷 포함)	-	-	-	-	-	-	0.9	0.7	-	-	0.1
(수)	(72)	(158)	(331)	(274)	(207)	(226)	(117)	(143)	(94)	(119)	(1,741)

자료 :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112쪽)

다.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1) 현황

산전후 휴가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다.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출산휴가의 기간은 기존에 60일이었으나, 2002년부터 90일로 연장되었다.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자는 대상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에는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에는 100인 이하인 사업장, 그리고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으로 하되, 상한과 하한이 적용된다. 하한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상한액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제도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다. 동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생후 1년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기업의 급여지급 의무는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2010년 말까지 시행한 제도에서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2011월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정률제가 시행되어,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

한다. 단, 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월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그리고 급여 중 100분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

(2) 재분배 효과

산전후 휴가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먼저 지출 측면에서의 재분배 효과를 보기로 하자. 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과 상한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하한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제 임금에서 하한이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의 하한은 큰 의미는 없다.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상한 이하에서는 비례적인 성격을 갖지만, 전체 소득구간으로 볼 때는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전후 휴가급여의 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재원조달 측면이 특히 중요하다. 재원조달 측면과 관련된 재분배 효과는 우선지원 대상인지 혹은 대규모 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한 시점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우선지원대상인지 대규모기업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고용주가 지급을 한다는 것과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고용주가 지급을 한다는 것은 장기

적으로 그러한 부담이 임금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는 본고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르면 재정 정책수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재정 정책수단에 해당되는 부분인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부분이다.

〈표 V-6〉 산전휴가와 육아휴직

		개인의 입장에서 수령하는 금액	부담주체
산전후 휴가	우선지원	통상임금 (상하한 적용, 상한은 135만원)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 기업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육아휴직		정률제로 전환하여 적용. 임금의 40% (50만원 하한, 100만원 상한 적용)	고용보험

〈표 V-7〉 모성보호사업 실적(2002~2009)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산전후 휴가 급여	인원	22,711	32,133	38,541	41,104	49,539	60,964	72,260	75,047	
	(증가율)		41.5	19.9	6.7	20.5	23.1	18.5	3.9	
	금액	22,601	33,522	41,610	46,041	90,886	132,412	166,631	178,477	
	(증가율)		48.3	24.1	10.6	97.4	45.7	25.8	7.1	
육아 휴직 급여	계	신규	3,763	6,816	9,303	10,700	13,672	21,185	29,145	35,400
		(증가율)		81.1	36.5	15.0	27.8	55.0	37.6	21.5
		금액	3,087	10,576	20,803	28,242	34,521	60,989	98,431	139,724
		(증가율)		242.6	96.7	35.8	22.2	76.7	61.4	42.0
	남	신규	78	104	181	208	230	310	355	502
		금액	54	133	326	487	532	740	982	1503
	여	신규	3,685	6,712	9,122	10,492	13,442	20,875	28,790	34,898
		금액	3,033	10,443	20,478	27,755	33,989	60,249	97,449	138,221

출처 :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고용정보원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도 실제 활용도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제도상의 모든 혜택이 실제로 향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모성보호 사업실적을 보면, 2001년 11월 지급이 시작된 이후 계속하여 인원 및 지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제도의 변화가 없는 시기에도 적용인원 및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제도의 존재 못지않게 실제 활용도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V-8〉 모성보호사업 1인당 수급액 추이

(단위 : 천원, %)

1인당 수급액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산전후휴가 급여	995	1,043	1,080	1,120	1,835	2,172	2,306	2,378
(증가율)		(4.8)	(3.5)	(3.7)	(63.8)	(18.4)	(6.2)	(3.1)
육아휴직급여	820	1,552	2,236	2,639	2,525	2,879	3,377	3,947
(증가율)		(89.1)	(44.1)	(18.0)	(-4.3)	(14.0)	(17.3)	(16.9)

주: 1인당 평균수급액은 연간 급여총액을 전체수급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출처 :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고용정보원

송명희(2006)에 따르면, 출산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 여성 중 약 58.2%만이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 휴가를 미사용하는 집단은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규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고,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에서 높으며,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은 산전후 휴가급여가 가지는 역진적인 성격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에서도 산전후 휴가급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산전후 휴가급여가 가지는 역진적인 성격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라. 소득공제

(1) 현황⁷⁶⁾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는데, 2011년부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다자녀 추가공제 조항은 2006년 12월 30일 도입된 조항으로 도입 초기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금액이 위와 같이 확대되었다.

교육비 공제는 특별공제 항목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동 공제는 1996년에 도입 당시에는 유치원아만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

76) 소득공제 외의 제도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월 10만원 이내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2004년부터 신설된 것이다.

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뒤 1998년에는 영유아가, 1999년에는 취학전 아동이 추가되었다. 1인당 공제한도액은 1999년에 1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2003년부터는 150만원으로, 그리고 200만원,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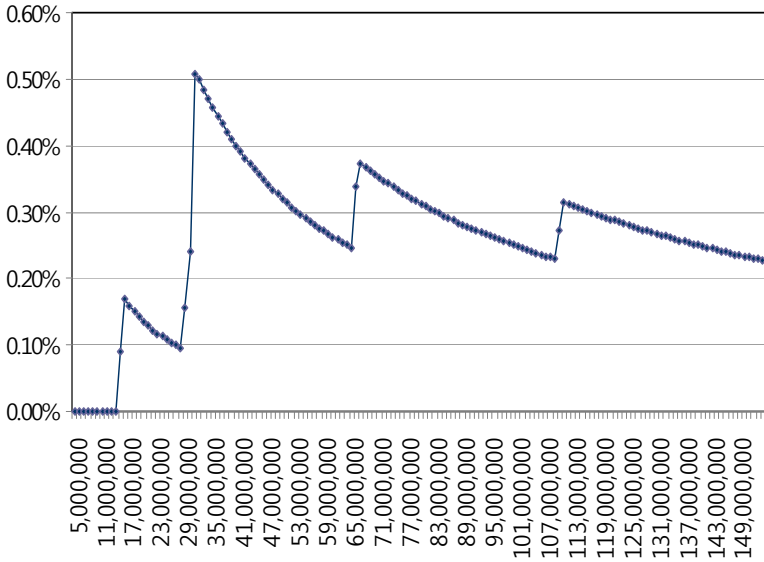
최근 수년 동안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은 신설되거나 확대되어 왔다.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신설 및 확대되었으며, 교육비 공제도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위하여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의 교육비 공제는 2003년까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없었으나, 2004년부터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는 2003년까지는 50만원이었으며, 이후 1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 재분배 효과

소득세는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른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층에서 더 커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각종 소득공제의 혜택은 그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2009년의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약 27% 정도 된다. 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미달자는 아니라도 소득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는 각종 공제 후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중산층 이하에서의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경우에 각 소득계층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를 보기로 한다. 혜택의 소득 대비 비율은 몇 개의 4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과 같은 모양을 갖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 구간이 4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단순하게 누진적 혹은 역진적이라고 단순화하기는 곤란하다.

[그림 V-2] 소득세 공제 혜택의 소득 대비 비율



소득공제의 실제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의 규모 및 실제 혜택의 분포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제금액 및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보자. 2009년에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인원은 2,065,701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약 14.5% 정도 된다. 반면 상위 10%를 기준으로 하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인원은 529,271명으로 해당 소득구간 신고자의 약 37.0%로 전체 근로자 중에서의 비율보다는 훨씬 높다. 1인당 공제액도 전체 평균은 62만원 정도인 것에 반해, 상위 10%에서는 75만원 이상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소득공제의 누진적인 성격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표 V-9〉 근로소득자 중 다자녀 추가공제

		인원	총액 (백만원)	1인당 (천원)
전체	급여	14,294,993	369,570,625	25,853,152
	다자녀 추가공제	2,065,701	1,281,099	620,176
	비율	14.45%	0.35%	2.40%
상위 10%	급여	1,429,499	121,671,749	85,114,959
	다자녀 추가공제	529,271	398,456	752,839
	(대상자 비율)	37.02%	0.33%	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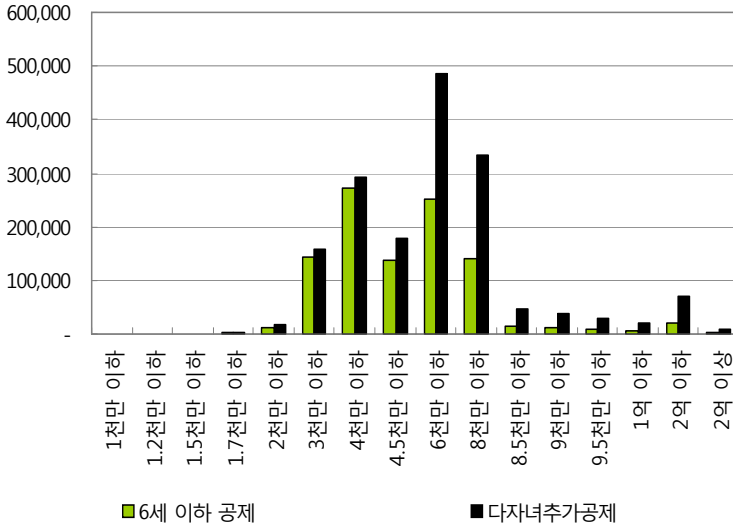
자료 : 『국세통계연보』

그러나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동일한 연령대에서도 소득이 많으면 자녀가 많아지는 효과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연령대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수가 많아지는 효과는 크지 않다. 위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가 많아지고, 다자녀 공제도 많아지는 효과 중 일부는 연령대별로 소득 및 자녀 수가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20대 및 30대에 비해서 40대는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을 뿐 아니라, 자녀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은 아직까지 출산이 완결되지 않은 이유도 있고, 또한 젊은 층에서는 출산율 자체가 하락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6세 이하 자녀공제의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공제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소득계층에서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그림 V-3] 소득구간별 공제 혜택인원

(단위 : 명)



공제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공제로 인한 잠재적인 세수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략적인 추정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0>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단위 : 백만원)

	부녀자	6세이하공제	출생입양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합계
근로소득세	103,580	269,177	64,318	232,273	669,348
종합소득세	37,398	44,778	7,909	53,810	143,895
합계	140,978	313,955	72,227	286,083	813,243

주 : 지방세 감소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이 수치는 2009년 실적으로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이며, 조세는 2011년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2배로 확대된다. 따라서 2011년부터 세수 손실 규모는 2009년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으로 커진 약 6천억원 정도 되며, 이러한 4개 항목의 공제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약 1조 2천억원 정도, 지방세 감소효과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1조 3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 전체 효과

소득공제를 통한 지원은 그 혜택이 주로 중산층 이상에 귀속되는 성격을 갖는다. 소득 대비 비율로 본 혜택이 가장 큰 집단은 중상위 정도의 소득계층이며, 정확하게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기타 저출산 대응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그 혜택이 중간 이하의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강하게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제도의 재분배 효과는 지출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 외에도,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제도의 규모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출산장려금 및 보육 관련 지출은 일반 조세에 의해 충당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에 의해 충당된다. 고용보험의 부담은 대략 비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의 경우에는 다소 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기술은 생략한다.

전체적인 효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각 프로그램의 규모다. 주요 프로그램의 예산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 지출규모가 가장 큰 부분은 보육에

대한 지원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010년 예산규모가 약 1조 6천억원 정도 된다.

〈표 V-11〉 재분배 효과 요약

(단위: 억원)

			소득재분배 효과		재원규모
			지출 측면	재원조달 측면	
지출	지자체	출산장려금	역진적	약간 누진적	669
	중앙정부	보육	강하게 역진적		16,322
		보육시설 미이동 양육지원	강하게 역진적		657
		보육시설 지원	역진적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급여	역진적	비례적	3,360
		육아휴직급여			222
		직장 보육시설 지원	약하게 역진적		396
조세 지출		소득세 공제 비과세	누진적		13,000

주 : * 기타 지출은 2011년 예산 기준이며, 조세의 경우는 제도변경이 확정된 것을 반영하여 2011년 수치로 추정함.

4. 조세정책과 지출정책 간의 선택

한정된 재원을 출산을 제고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우선지원 대상의 선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제공할 것인가 혹은 이전지출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물론 양자 모두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양자 모두 명시적 혹은 암묵적 지출이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가. 해외사례

먼저 가족지원에 있어 조세정책과 현금지출의 활용 측면, 그리고 제도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외국의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의 가족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호주의 9개 국가의 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족지원에 있어 조세정책과 현금지출의 활용 측면에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조세제도보다는 가족수당 등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자녀수당 및 출산수당은 출산 순위에 따라 금액이 차등화되어 있으며,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혜택의 제공을 부분적으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에 조세제도와 자녀수당 제도를 통합한 영국과 호주의 제도에서는 이러한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 기존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방식을 가족단위로 하여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공제 혜택을 확대하였다.

검토한 9개 국가 중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국가는 일본, 독일, 프랑스의 3개 국가였다. 일본은 자녀를 포함한 피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소득공제와 더불어 세액공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는 허용하지 않지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세액공제와 자녀수당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V-12〉 국가별 조세정책의 활용 여부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수당 비과세
스웨덴	×	×	○
덴마크	×	×	○
핀란드	×	△ (둘째 자녀)	○
일본	○	×	○
독일	○ (인적공제, 교육비)	○ (보모 비용)	
프랑스	○	○	
이탈리아	×	○ (3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영국	조세와 보조금의 통합 운영		
호주	조세와 보조금의 통합 운영		

가족지원과 관련된 조세제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녀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스웨덴 및 덴마크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가족정책을 행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은 없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세액공제(Quotient Familial)를 통해 가족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를 달리 적용한다. 독립된 가정을 가진 자녀일지라도 부모의 소득신고에 가족으로 함께 신고하는 경우 피부양가족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거세를 경감한다. 그 밖에 자녀의 교육비나 보육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이탈리아는 자녀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없지만, 부양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소득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준다. 3세 이하의 자녀와 장애아동에 대해 추가공제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핀란드는 일정한 자녀양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자녀수당은 비과세한다. 독일은 자녀공제와 교육비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며, 자녀 교육비는 자녀 연령과 교육 장소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된다. 또한 부모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호주의 가족수당제도의 근간은 가족세액공제제도(FTB)이다. FTB Part A는 자녀 수와 연령을 기초로 한 2구간의 수당이며 지본지급액은 최상위소득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 대한 자녀의 양육비를 반영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한다. FTB Part B는 편부모 가구를 포함하는 단일 소득원 가구를 지원하는 추가수당이다. 지급액은 대상가구에서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자녀보육수당(CCB)을 통해 자녀 보육비에 대해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자녀보육비환급은 허가된 보육서비스에 지출한 경비의 30%에서 기존에 수령한 CCB를 차감하여 지급된다⁷⁷⁾. 일본은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적용하며,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나. 가구형태별 조세부담에 대한 국제비교

각 국가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조세 및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OECD taxing wages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각국에서 중산층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 사회보장부담금, 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나눈 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세나, 사회보장부담금, 정부 보조금의

77) Matthew Gray · Lixia Qu · Ruth Weston, 「호주의 출산율과 출산장려정책 : 경향 및 과제」, 『노령화 사회의 미래정책과제에 대한 대처 방안』 정책포럼 발표문, 2006. 9. 13~14, pp. 13~16.

액수는 가족 구성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ECD(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을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중 개인기여분”⁷⁸⁾ 부담은 독신자의 경우에는 11.8%, 2자녀 부부(소득은 부부 중 한 명만 있는 것으로 가정)의 경우에는 9.1%로 보고되어 있다. 두 집단 간의 부담의 격차는 2.7%p로 그리 크지 않다. 각각에 해당되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25.6%와 19.6%이며, 두 집단 간의 부담의 격차는 6.0%p로, 우리나라에서 두 집단 간의 격차보다 크다(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그림 참고-1] 및 [그림 참고-2]를 참조).

그러나 2자녀 부부의 부담과 독신자의 부담 격차의 상대적인 비율은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치 모두에서 약 30% 정도로 나타난다. 이처럼 두 집단 간의 부담의 격차의 상대적인 비율이 우리나라와 OECD 평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인 격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는 중산층에서의 국민부담 자체가 OECD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두 집단 간의 부담의 격차가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독일, 미국,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독신자와 2자녀 부부의 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지만,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등에서는 양자간에 차이가 전혀 없다. 따라서 평균치라는 것을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조세 부담을 별도로 고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장부담금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가구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그림 참고-5]를 참조). 그런데 우리나라 중산층의 근로소득에 대한 광의의 부담 중 많은 부분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금 등 공적인

78) 사회보장부담금 중 고용주기여분은 제외할 수치다.

부담금이다. 우리나라에서 tax wedges(세전 인건비와 세후 근로자 실
질수령액과의 차이)는 11.8%로 나타나는데, 이 중 조세부담은 4.2%에
불과하고, 7.6%는 사회보장부담금이다(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그
림 참고-4]를 참조).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조세부담만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독신의
부담은 4.2%이지만, 2자녀 부부의 경우에는 1.5%다. 양자간의 차이는
절대적인 크기로는 2.7%p로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대적인 비율로 보면 거의 3배에 달한다(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그림 참고-3]을 참조). 반면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15.4%와
9.5%로, 격차의 절대치는 우리나라보다 크지만, 격차의 상대적인 비율
은 우리나라보다 더 낮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격차의 상대적인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격차의 절대치가 작은 것은 우리나라는 중산층에
서의 소득세 부담 자체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워낙 낮은 수준이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족형태에 따라 국민부담(세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
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전반적인 부담,
특히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부담 자체가 낮아,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있
더라도 세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따라서 비록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가구 형태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
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정책논의

해외사례와 국제비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족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혹은 그러한 재원을 다른 형태로 지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부담이 큰 구조는 아

니라는 점 정도만은 비교적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는 다자녀에 대한 추가공제가 확대된다. 공제액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는데, 이는 기존에 비해 2배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독신가구와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의 격차는 기존의 제도를 기준으로 검토된 위의 OECD taxing wages 모형에서의 결과보다 더 확대된다.

조세와 이전지출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두 수단의 재분배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소득공제의 확대는 중간 이하의 소득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다. 반면 지출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혹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⁷⁹⁾. 따라서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좀 더 강한 재분배라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더라도, 소득공제의 확대보다는 저출산 대책 지출의 확대가 더 효과적이다. 소득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주요 경로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다⁸⁰⁾.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광범위한 집단에 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면서 이미 기존에 출산이 이루어져 다자녀인 가구에 대해 세

79)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서 그러함은 물론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그러하다. 외국제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참고자료 1>에 정리하였다.

80)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언급한 바 있다. 소득이 일정액 증가할 때마다 출산 확률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출산율 제고 효과는 없다. 소득이 일정액 증가할 때 추가적인 출산을 할 확률이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경우에는 자원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새로운 출산을 유도하는 동기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등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최근의 변화처럼 그것을 확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도 출산 제고를 위한 일정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일 수 있다. 둘째, 출산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된 상황에서, 조세정책에서도 출산을 제고에 우호적인 제도를 도입하려 한 결과일 수 있다. 셋째,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성은 낮더라도, 세부담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중 어떠한 동기가 정책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특히 현행 제도와 같이 새로운 출산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에 출산된 다자녀 등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저출산 대응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은 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첫번째 혹은 두번째 동기에 의해 정책이 형성된 것이라면, 정책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의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정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출정책보다도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출생아에 대해서만 대폭적인 소득공제를 하고 기존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조세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물론 경제적 동기가 과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 오히려 조세제도에서의 어떠한 소득공제 제도의 타당성은 단순히 저출산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무엇보다도 조세 본연의 기능에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합

리적인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심지어는 다자녀 추가공제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소득공제조차도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 제고 정책으로서의 조세정책 활용의 효과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출 관련 정책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조세제도와 통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면, 저출산 대책으로서 조세정책을 무리하게 활용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재분배 효과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정책논의와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책의 영향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거나, 정책의 형성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재분배 효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경로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분배가 출산율 제고 효과를 초래하는 경로로 작용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소득불평등이 존재하며, 추가적인 소득이 출산율 제고하는 효과가 소득계층별로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도인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제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공제를 통한 지원은 그 혜택이 주로 중산층 이상에 귀속되는 성격을 갖는다. 소득 대비 비율로 본 혜택이 가장 큰 집단은 중상위 정도의 소득계층이며, 정확하게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기타 저출산 대응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그 혜택이 중간 이하의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강하게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어떠한 제도로 인한 실제 재분배 효과의 정도는 그러한 제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은 물론이고, 제도의 실제 활용도 및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전체적인 혜택도 대체적으로 역진적, 즉 저소득층에서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면, 우선지원 대상의 선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제공할 것인가 혹은 이전지출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해외사례와 국제비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족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혹은 그러한 재원을 다른 형태로 지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조세와 이전지출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두 수단의 재분배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소득공제의 확대는 중간 이하의 소득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다. 반면 지출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혹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좀 더 강한 재분배라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더라도, 소득공제의 확대보다는 저출산 대책 지출의 확대가 더 효과적이다. 소득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주요 경로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제도에서의 어떠한 소득공제 제도의 타당성은 단순히 저출산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무엇보다도 조세 본연의 기능에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

나 결국 그러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 제고 정책으로서의 조세정책 활용의 효과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출 관련 정책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조세 제도와 통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면, 저출산 대책으로서 소득공제를 무리하게 활용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VI. 요약 및 정책시사점

최근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 및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초연구는 취약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 등에 대해 이해하여 저출산 대응에서의 재정 정책수단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수단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소득재분배 효과 등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영향 및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산 대응정책도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와 영향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출산력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동안 출산관련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던 출산력 자료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변수들이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가구를 추적조사하지 않고 매년 조사 대상자가 달라지는 횡단면자료(repeated cross-section data)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가구 고유의 특성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취지와 관련하여 특히 소득이 출산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다양한 재정 정책수단이 가지는 1차적인 효과는 출산가구의 소득을 변화(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재정 정책의 효과를 직접 분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간접적인 시

사점을 줄 수 있다. 본장의 실증분석에서는 가구 소득 및 자산이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러한 결과는 자녀 순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소득이 첫째아의 출산에 미치는 확률에 대해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며, 두 자료에서 추정된 추정계수의 부호 자체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는 경우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가구 소득이 둘째아 이상의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이 둘째아 이상의 출산에 미치는 확률과 관련하여, 추정계수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인 자녀수당 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동패널자료의 분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구 소득의 증가가 둘째아 이상의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출산율을 의미 있는 정도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출산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의 규모는 실현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대규모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조세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지원액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작아지게 되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 등에 대해 이해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변화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자료의 해석에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실제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향후 완결출산율이 적어도 최근의 합계출산율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다행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 행태를 살펴보면 세대별로 출산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1970년생을 전후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추세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출생연도별 결혼 및 출산 행태의 변화에서 불연속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혼 연령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기는 하지만, 결혼을 늦게 하지 않는 여성들의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71~1975년생의 경우 30~34세 기혼인 여성들의 평균 자녀 수는 최종적으로는 약 1.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하락의 큰 부분은 미혼의 증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혼의 증가 혹은 늦게 결혼하는 여성들의 출산 감소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에서 경제적 요인보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크다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소득을 보전하는 등의 재정적인 정책수단보다는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담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접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수단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물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도

입된 정책들이 아직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도입된 후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응정책인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출산장려금 사업은 출산을 저하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지급수준이 지자체별로 차별화되어 있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산장려금과 출산에 대한 결정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가임여성의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 계획(의향)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첫째,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의 출산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가 출산장려금과는 상관없이 출산의 선호에 대한 해당 지역의 고유의 효과(local fixed effect)를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포함된 모든 설명변수 간에 내생성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출산장려금의 추정결과에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앞으로의 자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실제로 출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금이 출산을 제고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분석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가구 소득과 가구 순자산은 자녀 계획 단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왜 소득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

생적으로 주어지는 추가적인 소득지원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한 몇 가지 가능성으로 인해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과다하게 추정된 것이 아니라면, 출산장려금이 단순한 소득지원 외의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제 V 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재분배 효과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정책논의와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책의 영향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거나, 정책의 형성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재분배 효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경로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분배가 출산율 제고 효과를 초래하는 경로로 작용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소득불평등이 존재하며, 추가적인 소득이 출산을 제고하는 효과가 소득계층별로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도인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제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공제를 통한 지원은 그 혜택이 주로 중산층 이상에 귀속되는 성격을 갖는다. 소득 대비 비율로 본 혜택이 가장 큰 집단은 중상위 정도의 소득계층이며, 정확하게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기타 저출산 대응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그 혜택이 중간 이하의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강하게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전체적인 혜택도 대체적으로 역진적, 즉 저소득층에서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를 높이하고자 한다면, 우선지원 대

상의 선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제공할 것인가 혹은 이전지출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해외사례와 국제비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족지원을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혹은 그러한 재원을 다른 형태로 지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조세와 이전지출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두 수단의 재분배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좀 더 강한 재분배라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출산을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 평가하더라도, 소득공제의 확대보다는 저출산 대책 지출의 확대가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조세제도에서의 어떠한 소득공제 제도의 타당성은 단순히 저출산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무엇보다도 조세 본연의 기능에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 제고 정책으로서의 조세정책 활용의 효과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출 관련 정책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조세제도와 통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면, 저출산 대책으로서 소득공제를 무리하게 활용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미래인력 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 보도자료, 2004. 6. 12.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권수정, 「기혼 취업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 김선자,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 김선자, 「서울의 저출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SDI정책리포트』 제55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03.
- 김정석, 「기혼여성의 출산아 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제30권 제2호, 2007. pp. 97~116.
- 김현숙·류덕현·민희철,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출산을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연구보고서 2006-03, 한국조세연구원, 2006.
- 김현숙·원종학,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2004, 한국조세연구원
- 남재량·이상호·최효미·신선옥·배기준, 「제10차(200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8.
- 류기철·박영화, 「한국여성의 출산을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제32권 제1호, 2009. pp. 1~23.

- 민희철, 「임금 및 소득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학 연구』, 한국재정학회, 2008. pp. 41~61.
- 박수미 외, 『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1차 기초분석 보고서』, 연구보고서 200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보건복지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사례집』, 2010.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 손숙미, 「전국의 출산장려금 1인당 지급액, 최대 200배 차이난다!」, 국회의원 손숙미 언론보도자료, 2010. 10. 8
- 송명희,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한국여성노동연구소, 2006.
- 신유정,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8권 제2호, 2008. pp. 103~134.
- 우석진·민희철, 『출산을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연구보고서 2007-03,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은기수,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5집 6호, 2001. pp. 105~139.
- 이명진, 「여성의 출산계획 결정요인과 그 사회적 함의」, 제2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2009.
-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정책보고서 2009-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_____,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8-2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_____,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연구보고서 2005-3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성용, 「남아선호와 출산력 간의 관계」,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제26권 제1호, 2003. pp. 31~57.
- 장지연, 『여성고용창출 정책의 방향』, 2004.
- 조병구·조운영·김정호,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07-02, 한국개발연구원, 2007.
- 차경욱,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3권 제2호, 2005. pp. 137~148.
- 최경수, 「인구구조 고령화의 전망과 분석」,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최경수 외(편),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최숙희,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최숙희,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6.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 통계청,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보도자료, 2010. 8. 19.
- 한국인구학회, 저출산 시대의 신인구정책 특별심포지움, 2004.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사업팀,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9.
- Adema, W., "Revisiting real social spending across countries: A brief note," *OECD Economic Studies*, No. 30, 2000.
- Becker, G. and G. Lewi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1973.
- Becker, G.,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A. J. Coale, (ed),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 Juhani, Kesti, (Eds.) *European Tax Handbook*,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2004.

Lam, D. and S. Duryea, "Effects of schooling on fertility, labor supply, and investments in children, with evidence from Brazil,"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84, No. 1, 1973, pp. 160~192.

OECD, "Financial Resources and Retirement in Nine OECD Countries : The Role of the Tax System," Gordon Keeney and Edward Whitehous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8., DeLASA/ELSA/WD?SEM(2003)8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9.

OECD, Taxing wages, 2010.

Sleeboos, Joelle, E., "Low fertility in OECD countries :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 2003,

〈참고자료 1〉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현황

〈표 참고-1〉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현황('10년 6월말 기준)

(단위:천원)

광역명	기초명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예산액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서울시	종로구		500	1,000	1,000	1,000	250,000
	중구		200	1,000	3,000	5,000~30,000	182,000
	용산구	50	100	500	1,000	1,000	210,000
	성동구		200	500	1,000	1,000	368,184
	광진구		100	300	300	300	144,800
	동대문구		300	500	500	500	400,000
	중랑구		500	1,000	2,000	2,000	1,000,000
	성북구		200	200	200	200	444,000
	강북구	200	300	500	500	500	782,000
	도봉구	200	300	500	1,000	1,000	540,000
	노원구		100	300	500	500	315,000
	은평구		200	300	500	1,000	300,000
	서대문구	100	200	500	500	500	324,000
	양천구		100	500	1,000	2,000	255,000
	강서구			200	300	300	87,600
	구로구		200	500	1,500	1,500	660,200
	금천구		200	500	1,000	1,000	218,600
	영등포구		200	500	1,000	1,000	128,000
	동작구		100	500	1,000	1,000	284,000
	관악구		100	500	1,000	3,000	351,600
서초구	100	500	1,000	5,000	5,000	1,185,000	
강남구		1,000	5,000	10,000	10,000	2,280,000	
송파구		300	500	1,000	1,000	800,000	
강동구		200	300	500	500	405,000	

〈표 참고-1〉의 계속

광역명	기초명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예산액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부산시 둘째: 200	서구			100			5,000
	동구		300	500			81,000
	영도구		100	100			52,000
	동래구		200	400			140,000
	금정구			500			23,500
	연제구			300			33,000
	수영구		200	-	500		67,500
	사상구	쌍둥이 300 세쌍둥이500					3,300
대구시 둘째: 200 셋째: 500	중구		300	1,000			94,200
인천시	중구			1,000			100,000
	동구			1,000			50,000
	남구			500			150,000
	연수구			1,000			92,000
	남동구			1,000			400,000
	부평구			500			250,000
	서구			1,000			470,000
	강화군	100	100	500			62,000
옹진군	500	1,000	3,000	5,000	10,000	154,000	
광주시 셋째: 500 쌍둥이: 500 세쌍둥이: 1,000	동 구	1,000	2,000	10,000	-		444,600
	서 구			50			10,000
	남 구						
	북 구			50			15,500
광산구				1,000	3,000	52,000	
대전시 셋째: 500							

〈표 참고-1〉의 계속

광역명	기초명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예산액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울산시 셋째: 500	중구		100	200			104,000
	남구		100	300			190,000
	동구		100	200			108,800
	북구		100	200			146,000
	울주군	100	100	100			286,000
경기도	수원시			500			600,000
	성남시		300	1,000			1,101,000
	고양시			500			330,000
	부천시			500			284,000
	용인시			1,000			860,000
	안산시			200			158,000
	안양시			500			210,000
	남양주시		300	1,000			854,200
	의정부시			300			90,000
	평택시		300	500			917,000
	시흥시		100	200			277,000
	화성시		500	1,000			1,975,000
	광명시		300	500	1,000		350,000
	파주시			300			75,000
	군포시		500	1,500			1,110,000
	광주시			1,000			300,000
	김포시			1,000			200,000
	이천시			1,000	2,000	3,000	300,000
	구리시		200	500			201,600
	양주시		200	200			488,000
안성시			500			90,000	
포천시		300	1,000	3,000		280,000	

〈표 참고-1〉의 계속

광역명	기초명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예산액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오산시			500	1,000		149,000
	하남시			500	1,000		80,000
	의왕시			500	1,000		65,000
	여주군			1,000			120,000
	동두천시		200	350			102,000
	양평군		500	1,000			226,000
	과천시		500	1,000			205,000
	가평군		500	1,000			150,000
강원도	연천군			300			18,000
	춘천시			300			70,000
	원주시	100	200	500			665,000
	강릉시	100	300	500	1,000		355,000
	동해시		500	900			307,000
	태백시	200	500	-			175,000
	속초시	200	200	200	—		94,050
	삼척시	-	500	1,000	-		135,000
	홍천군						
	횡성군	200	200	500			191,000
	영월군	300	500	1,000	3,000		152,000
	평창군						
	정선군	100	200	300			45,000
	철원군		500	1,000			116,000
	양구군			500	800	1,100 (300증가)	16,000
인제군	500	500	1,000			180,000	
고성군	200					80,000	

〈표 참고-1〉의 계속

광역명	기초명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예산액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양양군	200					226,000
충청북도	청주시	300	500	1,000			875,000
	충주시	300					240,000
	제천시	300		300			165,000
	청원군	300					259,200
	보은군	1,000	1,000	1,000			15,200
	옥천군	100	200	500			77,000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300					75,000
	괴산군	500					44,000
	음성군	300					105,000
	단양군	200					16,000
	충청남도	천안시			1,000		
공주시			500	800			320,000
보령시			500	800			270,000
아산시			400	1,000			840,000
서산시		100	200	300			650,000
논산시		300	300	1,000			300,000
계룡시			500	1,000			150,000
금산군		300	500	1,000			200,000
연기군		500	500	1,000			300,000
부여군			500	1,000			150,000
서천군		300	300	800			193,800
청양군		300	500	1,000			45,700
홍성군			500	1,000			230,000

〈표 참고-1〉의 계속

광역명	기초명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예산액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예산군	300	500	3,000			200,000
	태안군	500	500	1,000			205,000
	당진군	200	300	1,000			422,031
전라북도 셋째: 500	익산시		200	400	1,000	5,000	400,000
	정읍시		1,000				400,000
	남원시		1,000	2,000	4,000		510,000
	김제시	300	500	1,000			322,700
	완주군	300	300	1,200			336,000
	장수군	500	1,000	3,000	5,000	10,000	120,120
	무주군	500	1,200				192,000
	임실군	500					208,980
	순창군	500	500				384,500
	고창군		500	1,000			177,450
부안군		1,000	3,000			195,000	
전라남도 첫째 이상: 300	목포시	100	500	1,000	1,500	2,000	1,030,000
	여수시	300	300	3,300			1,050,000
	순천시	300	300	1,800	1,700	2,000	786,300
	나주시	300	300	2,300			324,500
	광양시	300	300	300			228,000
	담양군	300	300	300			
	곡성군	300	600	1,800			174,100
	구례군	300	300	300			62,700
	고흥군	300	300	300			131,700
	보성군	300	300	300			128,700
	화순군	300	300	300			211,500
	장흥군	300	300	300			85,500
강진군	500	500	500			180,500	

〈표 참고-1〉의 계속

광역명	기초명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예산액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해남군	300	300	300			
	영암군	500	500	1,000			
	무안군	300	300	300			
	함평군	500	500	1,000	(10년 적금) 10,000		377,800
	영광군	300	300	300	2,000		
	장성군	300	300	300			105,000
	완도군	1,300	1,300	1,300	2,000		821,500
	진도군	300	300	300			79,200
	신안군	300	300	300			88,800
경상북도	포항시			1,000			300,000
	경주시	100	100	100			200,000
	구미시			1,000	2,000	3,000	250,000
	영주시	500	500	500			400,000
	문경시	1,000	2,000	3,000	5,000		597,000
	경산시	300	300	500			540,000
	군위군	500	500	500			468,200
	의성군	1,000	100	500			300,000
	영덕군	300	300	300			151,000
	청도군	300					
	성주군	300	300	300			69,000
	칠곡군		400	400			432,800
	봉화군	500	500	500			116,000
울릉군	500	500	500			35,000	
경상남도 셋째: 200	구)창원시		300	500			744,000
	구)마산시			2,000			1,644,600

〈표 참고-1〉의 계속

광역명	기초명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예산액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구)진해시		300	1,000			520,750
	진주시			100			300,000
	통영시			3,000			510,000
	김해시			800			432,000
	밀양시		200	1,000			157,500
	거제시			1,150			248,000
	양산시		200	500			300,000
	의령군	500	1,000	2,800			130,000
	함안군		500	2,000			400,000
	창녕군	100	700	300			56,000
	고성군	50	50	50			20,000
	남해군	300	1,000	3,000			202,000
	하동군	300	1,000	1,000			267,500
	함양군	300	500	300			115,000
	거창군	50	500				137,400
	합천군	500	800				215,000
제주도			100	500	1,000		803,400
							57,904,865

자료 : 손숙미 의원실 보도자료 2010-68, 2010년 10월

〈참고자료 2〉 가족지원제도의 해외사례

스웨덴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자녀수당(Child Allowance)을 지급하는데, 지급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또한 출산과 입양과 관련하여 현금급여(Parents' Cash Benefit due to Child-birth)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그 밖에 자녀가 아파 부모가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적 부모현금급여(Temporary Parents' Cash Benefit)를 제공하며, 임신부현금급여나 자녀간호수당 등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은 세제보다는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제, 출산 이후 직장 복귀를 법으로 보호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세제지원보다는 보조금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모든 자녀에 대해 자녀수당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조액에 차등을 둔다.

핀란드는 출산수당과 자녀수당, 보육수당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 출산수당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며 자녀수당은 17세 미만의 모든 자녀에 대해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보육수당의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영국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및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같이 세제와 보조금이 통합된 성격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세액공제와 아동세액공제는 부부의 경우 합산된 연간소득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근로세액공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지만, 보육비용에 대한 공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근로세액공제나 아동세액공제 제도가 부모의 소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과 달리 아동수당(Child Benefit)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의무교육 종료 이전의 자녀에 대해 제공된다.

독일도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 제도인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 밖에 가족형태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양육비를 차등지급한다.

프랑스는 분산된 출산장려 지원체계를 유아환영정책(PAFE: 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PAJE에 따라 출산 전에 출산보너스를 정액지급하며, 가구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급여를 통해 자녀를 한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수당은 부양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재산의 유무와 무관하게 자녀 나이에 따라 할증 적용하여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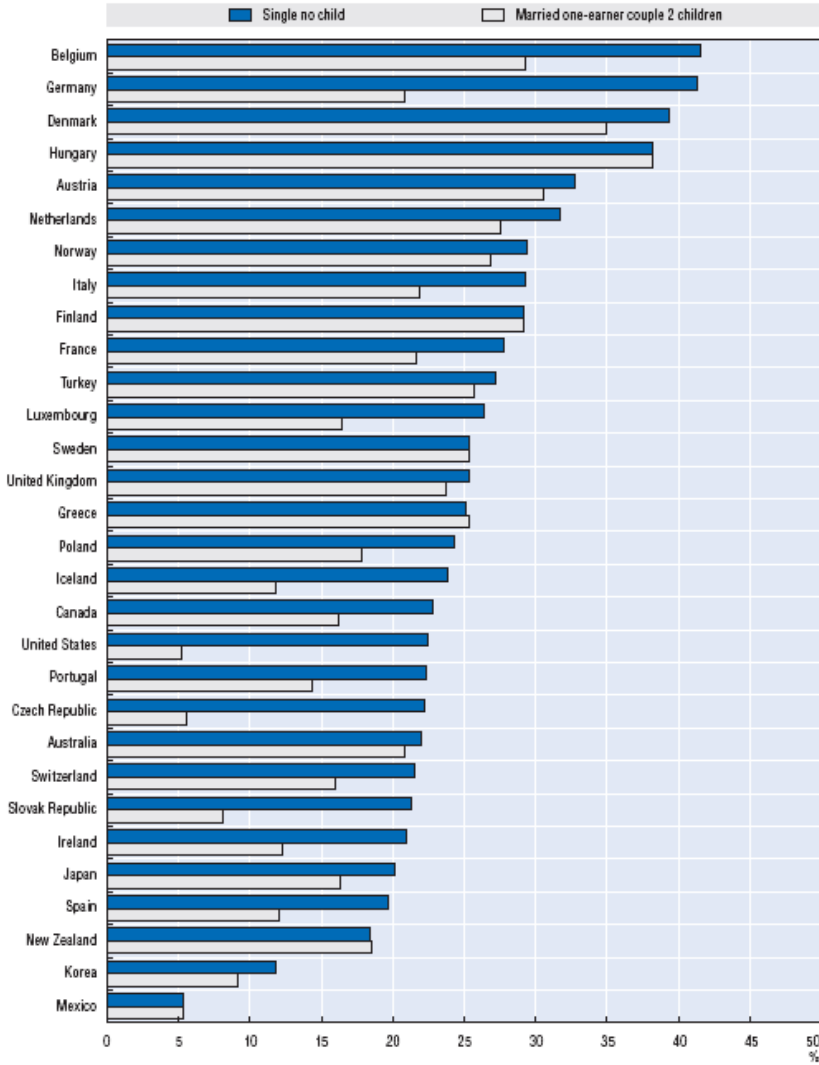
이탈리아에서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지급 대상은 취업자 또는 사회보험, 복지급여 및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배우자는 생계수단이 없는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음)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 수와 가족수입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편부모 가족이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더 높은 한도를 적용한다.

호주의 출산수당은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데, 자녀 한명 출생시 2~3일 내에 5,000호주달러가 일회성 출산보너스로 지급된다. 이때 별도의 소득평가나 자산평가는 요구되지 않는다. 양육수당과 자녀보육수당(CCB)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임신과 출산시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아동이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정소득 미만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한 명당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대상 자녀연령은 2004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2006년 4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2010년 3월 중학생까지 점차 확대해 왔다.

〈참고자료 3〉 조세와 혜택의 국제비교 관련 자료

[그림 참고-1] OECD 국가 중산층의 국민부담 개인기여분

Figure I.2. Income tax plus employee contributions, by family-type
As % of gross wage earning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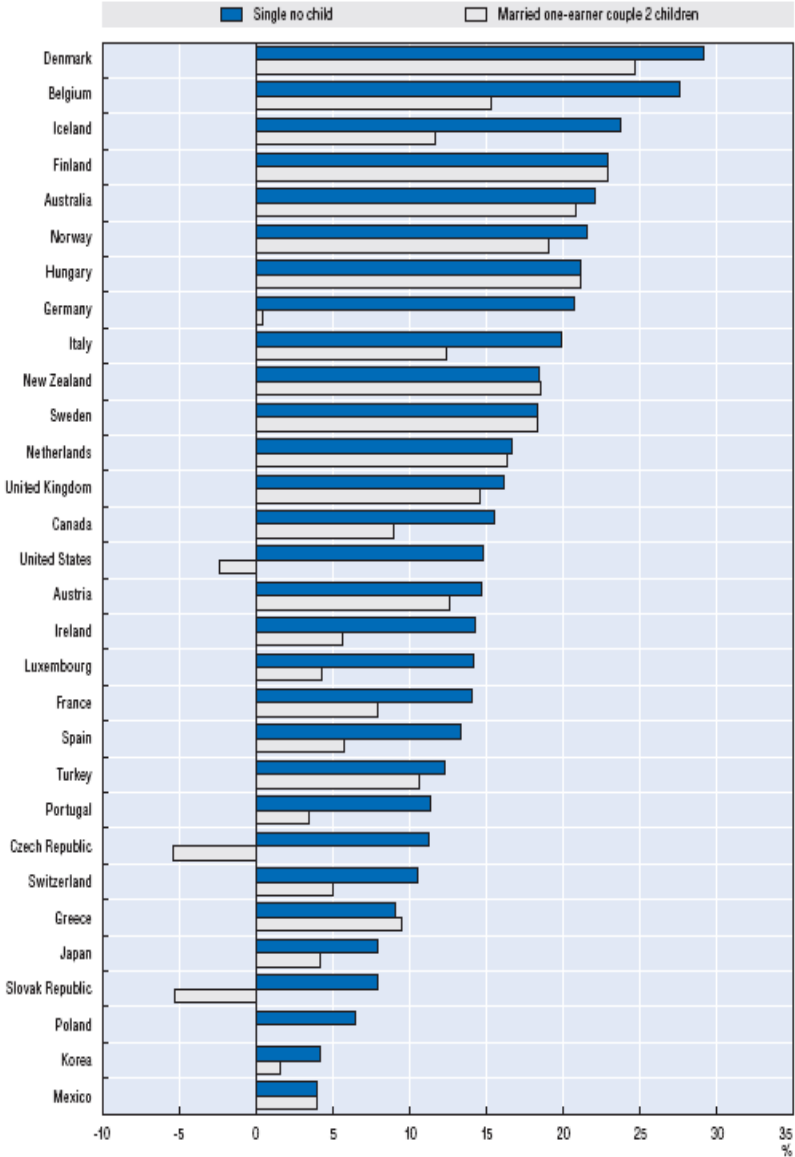
[그림 참고-2] OECD 국가 중산층의 국민부담 개인기여분

Family-type:	single	single	single	single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no ch	no ch	no ch	2 ch	2 ch	2 ch	2 ch	no ch
Wage level (% of AW):	67	100	167	67	100-0	100-33 ¹	100-67 ¹	100-33 ¹
	(1)	(2)	(3)	(4)	(5)	(6)	(7)	(8)
Australia	15.6	22.0	28.3	-14.4	8.6	12.7	17.2	18.2
Austria	26.8	32.7	37.2	5.0	18.1	18.4	22.6	28.1
Belgium	34.4	41.5	48.5	14.9	20.2	25.2	31.8	34.0
Canada	17.9	22.8	26.8	-20.0	8.8	14.8	18.5	19.4
Czech Republic	17.7	22.2	25.8	-13.9	-6.5	6.2	11.5	19.4
Denmark	37.7	39.4	48.6	13.2	28.8	33.2	35.0	37.9
Finland	22.5	29.2	36.3	8.2	22.6	20.2	22.5	25.1
France	25.7	27.7	33.1	14.4	17.1	16.7	21.9	23.9
Germany	35.5	41.3	45.5	17.9	20.8	27.3	32.1	35.5
Greece ²	19.1	25.1	31.1	18.0	25.4	23.1	24.1	23.6
Hungary	28.9	38.2	44.7	7.4	25.3	23.6	26.7	33.2
Iceland	17.9	23.9	28.6	-1.0	3.0	12.5	18.1	17.9
Ireland	14.2	20.9	32.5	-21.3	2.2	4.9	11.1	12.4
Italy	24.7	29.3	36.0	1.0	15.1	18.1	22.5	24.4
Japan	18.5	20.1	24.0	11.4	13.8	15.3	16.3	19.1
Korea	8.9	11.8	15.2	8.2	9.1	9.2	9.3	10.8
Luxembourg	19.1	26.4	34.6	-11.2	0.9	5.8	11.7	17.5
Mexico	-0.4	5.3	12.8	-0.4	5.3	1.2	3.0	1.2
Netherlands	27.0	31.8	37.8	3.0	22.6	22.5	24.9	27.6
New Zealand	15.6	18.4	24.9	-16.5	0.6	8.8	15.3	17.2
Norway	25.6	29.3	35.7	10.4	21.8	22.7	24.8	26.6
Poland	23.0	24.3	25.2	17.8	17.8	18.3	20.0	23.0
Portugal	16.2	22.3	29.5	1.7	8.7	11.4	16.4	16.2
Slovak Republic	17.0	21.3	24.5	0.6	2.4	7.3	13.0	15.5
Spain	14.6	19.7	25.0	6.9	12.0	14.9	15.3	16.3
Sweden	22.7	25.3	35.5	11.6	17.9	17.4	19.8	23.0
Switzerland	18.2	21.5	26.4	1.6	8.1	11.1	14.5	18.9
Turkey ³	24.5	27.2	30.5	23.1	25.7	26.8	27.4	27.5
United Kingdom	22.4	25.3	29.8	0.2	18.5	17.4	20.8	22.4
United States	18.9	22.4	28.7	-6.3	5.2	13.1	16.4	19.7
<i>Unweighted average:</i>								
OECD	21.0	25.6	31.4	3.1	13.3	16.0	19.5	21.8
EU-15	24.2	29.2	36.1	5.6	16.7	18.4	22.2	24.5
EU-19	23.7	28.6	34.8	5.0	15.3	17.5	21.3	24.2

[그림 참고-3] OECD 국가 중산층의 조세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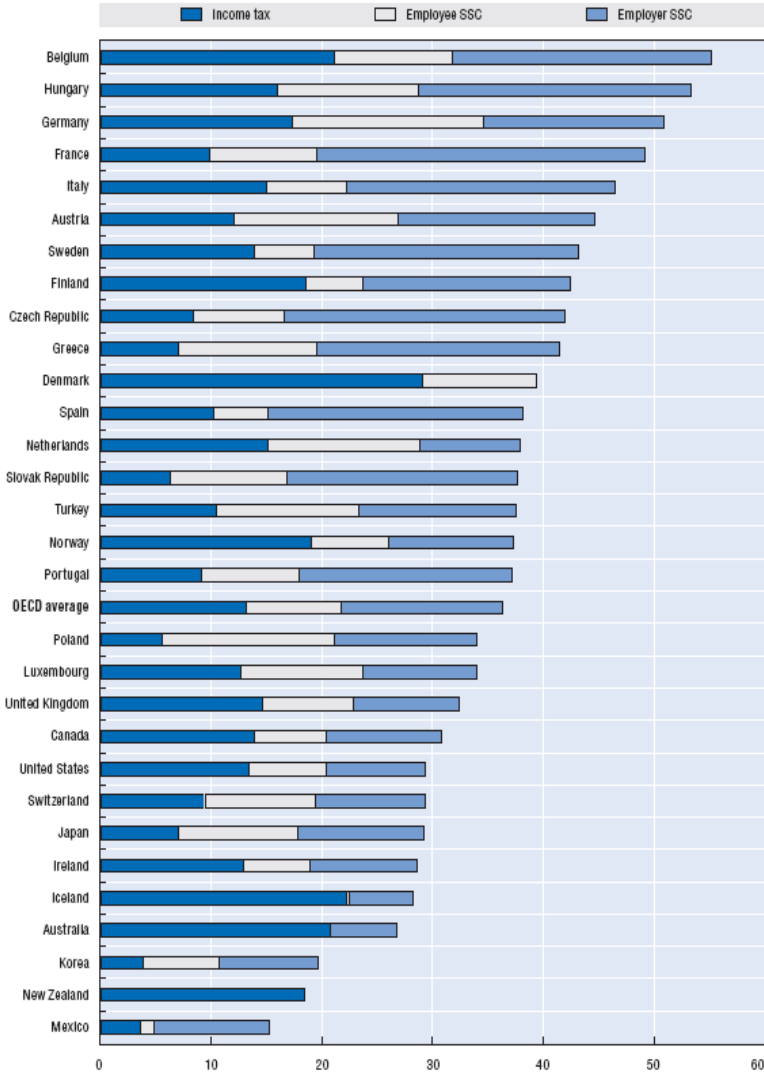
Figure 14. Income tax, by family-type

As % of gross wage earnings, 2009




[그림 참고-4] OECD 국가 중산층의 순국민부담률 (고용주 기여분 포함)

Figure 0.1. Income tax plus employee and employe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s % of labour costs, 2009¹

1. Single individual without children at the income level of the average wor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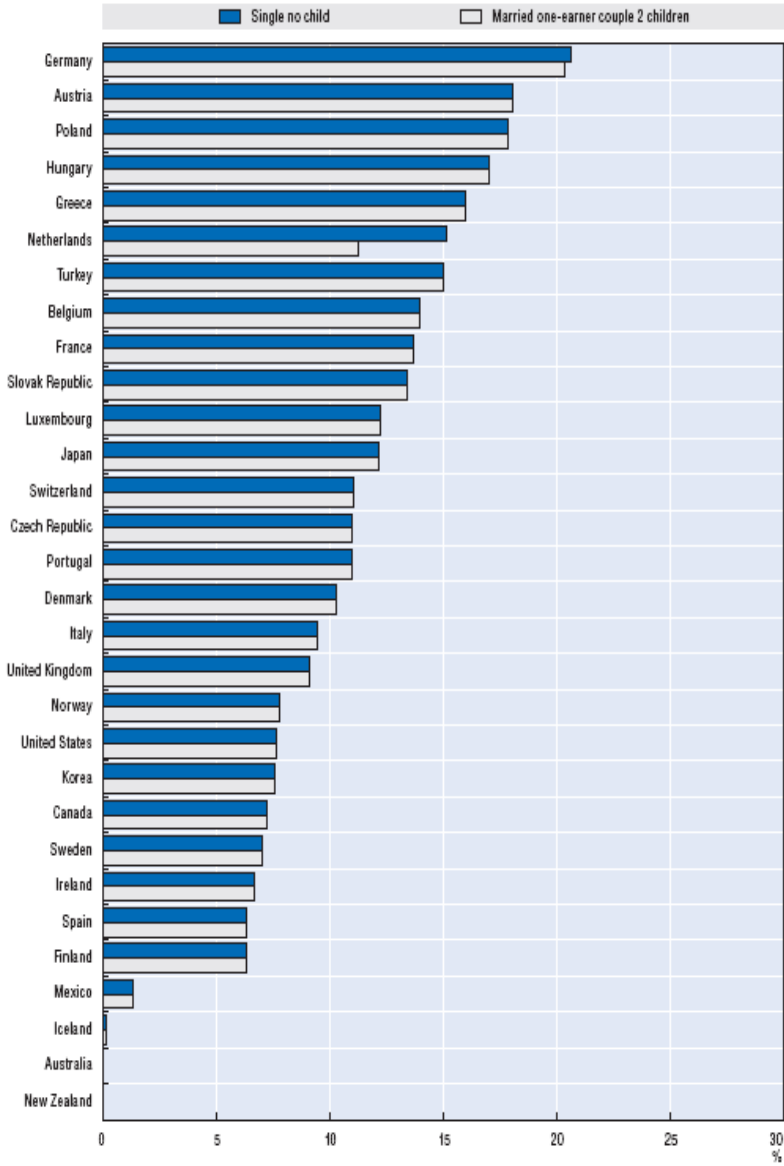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28837434752>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8-2009

[그림 참고-5] OECD 국가 중산층의 사회보장기여금

Figure I.5. **Employee contributions, by family-type**

As % of gross wage earnings, 2009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최준욱 · 송헌재

최근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 및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초연구는 취약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저출산 대응 관련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한다. 이에 있어, 기존의 출산력 자료 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변화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자료의 해석에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와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출산율 하락 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대상으로 출산과 관련된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다.

저출산 대응정책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재분배 효과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응정책이 어떠한 재분배 효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저출산 대응정책도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재정 정책수단 효과의 영향에 중점을 두어 논의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저출산 대응에서의 재정 정책수단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수단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 등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영향, 그리고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Abstract>

Effectiveness and Redistributive Effects of Policies to Raise Fertility in Korea

Joonook Choi · Heonjae Song

Although policies aimed at encouraging birth rate of Korea has been widely discussed in recent years, only few studies have been presented on the cause of low birth rat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Hence, the fundamental issue still could be what factors determine fertility in Korea.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ause of fall in birth rate of Korea. Nevertheless, the data could be improperly interpreted. This study first aims to analyze change in birth rate in Korea more precisely and to investigate the cause of sharp decrease. Next, we try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to raise fertility based on our empirical analysis.

The lack of public awareness of the issue is a matter of concern because policies responsive to low birth rate may have a economic and social effect on our society. Among many considerations of that issue, the effectiveness of redistribution of fiscal policies responsive to low birth rate will be examined, as there have been few domestic studies.

Section II presents the model of determinants of birth rate in Korea using panel data. We find that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in household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fertility decision. Section III examines the change and causes of a decrease in birth

rate of Korea, and seeks for practical uses of fiscal policies which can be responsive to low birth rate. Section IV illustrates the effectiveness of childbirth grant policy. According to our empirical analysis the child birth grant affects potential mothers' new birth planning. Section V draws several implications relevant to policies responsive to low birth rate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ies such as income redistribution.

〈著者略歷〉

최준욱

미국 Wisconsin-Madison University 경제학과 졸업
미국 Pennsylvani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헌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류인경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研究報告書 10-15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2010년 12월 23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최준욱·송헌재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501-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